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54-01



영 업 비 밀 핵 심 판 례

2014 ~ 2019



I.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판례

01

프로그램의 각 소스코드 중 웹에 공개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소스코드의 유사도가 16%~17%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13

02

문제된 정보의 일부가 특허로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성을 갖고 있다면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15

03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가 회사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며 피해 회사가 다년간의 상담을 통해 축적한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18

04

특정 프로그램이 저작권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특정 프로그램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21

05

특허등록으로 특허공보에 게재된 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비공지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3

06

인터넷으로 쉽게 입수가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결합되어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례 25

07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도 경제적 유용성 인정한 사례 28

판례

08

영업비밀의 공지여부 판단에 있어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 일체로서 공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제14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사례 31

09

비공지성의 입증정도와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해 판단한 사례 33

10

역설계를 통해 취득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36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판례

11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상 정보(실패한 기술)에 대하여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한 사례 38

12

역설계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도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하고, 영업비밀의 침해금지기간은 비교적 단기간만 인정한 사례..... 41

13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변환, 업데이트한 프로그램(기존의 프로그램과 정량적으로 보면 약 12% 차이)에 대하여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한 사례..... 44

3.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

판례

14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판시한 사례 46

15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49

16	비밀관리성 관련 개정법상의 ‘합리적인 노력’을 언급한 사례 52
17	영업비밀 보호 요건으로서 ‘합리적 노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55
18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58
19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1
20	‘합리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비밀 관리성을 판단하도록 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시점을 판시한 사례..... 64
21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을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사례 67
22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70
23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밀관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74
24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79
25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 및 IT회사에서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을 판시한 사례 81
26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84
27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사례 87
28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의 상대성’을 판시하여 적용한 사례 .90
29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94

II.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 침해행위의 주체

판례

30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99

2. 부정취득행위

판례

31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영업비밀 누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103

32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107

3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되 그 금지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제14조의2 제5항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110

3. 부정사용행위

판례

34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비밀 이용한 제조, 판매, 수출 등 행위의 금지 및 피고 보관의 도안, 설명서의 폐기를 명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113

35

영업비밀인 배합비율의 구성성분 중 일부를 대체가능한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거나 이 사건 배합비율에 다른 성분을 소량 첨가하였다고 하더라도(개량행위)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116

4. 영업비밀 보호기간

판례

36

민사상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형사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9

37

영업비밀이 추후 특허로 등록된 경우 비공지성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해 판단한 사례 122

II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 침해행위의 금지

가. 금지의 대상: 영업비밀의 특정

판례

38

기술정보 중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127

나. 금지기간

판례

39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의 기산점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로 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피신청인들이 적법하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한 사례.. 131

40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기산점을 판결확정일부터로 판시한 사례 134

41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137

42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은 정하지 않은 사례 142

43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한 사례 145

2. 경업·전직 금지

가. 경업·전직금지의무의 발생

판례

44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전직금지기간을 일부 제한하여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유지한 사례 . 148

45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 적용되는 법리가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152

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례

46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여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155

47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특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158

48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한 사례 161

49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의 특정,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1년 2개월로 제한한 사례 164

50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명령을 모두 부정한 사례 168

5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171

52

전직금지약정상 전직이 금지되는 지역적 제한, 전직금지의무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없었음에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174

판례

- 53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용하였으나, 경업금지 가처분은 기각한 사례 177
- 54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을 판단하여 전직금지기간이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181
- 55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전직금지기간이 장기이고, 전직금지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184
- 5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187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판례

- 57 경업금지의무 부여만으로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한하여, 그 공개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별개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한 사례 189
- 58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 192
- 59 영업비밀성은 부정하였으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196
- 60 고용계약상 영업비밀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성을 모두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례 199
- 61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집행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례

62

피고들이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는 전부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5

63

특허출원과 구별되는 기술적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고, 침해자의 순이익률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해당 제품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보다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부경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208

64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된 사례210

65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도 인용한 사례213

66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217

4. 국제재판관할권

판례

67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 실시한 사례 220

5. 구법 부정경쟁행위 (차)목과의 관계

판례

68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경법 (차)목(현행 (카)목)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 223

IV.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공소사실의 특징

판례

6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동 조항으로 의율한 사례 229

70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목적에 이용하였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233

71

영업비밀 침해 공소 사실의 특징 및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 237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판례

72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중 1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두고 나머지 공동정범들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239

73

영업비밀누설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서 1인이 퇴사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 내지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누설행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243

7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판시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246

3. 부정한 목적

판례

75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53

4.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판례

76

보안서약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 시 문서의 반환 내지는 폐기할 의무 여부가 업무상배임의 고의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56

77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259

78

비밀관리성과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OLED 관련 기술 정보 유출 사건) 262

79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제3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65

5. 양벌규정

판례

80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 제1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68

6. 외국사용

판례

8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의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71

부 록 275

I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3.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



CHAPTER I .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I.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판례 01

프로그램의 각 소스코드 중 웹에 공개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소스코드의 유사도가 16%~17%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II.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2가합60058 판결
사 건 명	손해배상(지)
당 사 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 은행창구업무를 PC 등의 단말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A 개발자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 은행창구업무를 PC 등 단말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B 개발자
판 결 결 과	원고청구 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원고가 개발한 은행 창구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 등

II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IV.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사건개요

갑은 2004년 말경 은행 창구 업무를 PC 등의 단말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A를 개발하였다. 한편 을도 2007년경 은행 창구 업무를 PC 등의 단말기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B를 출시하였다. 갑의 A 프로그램은 고객(은행)이 필요한 화면을 개발할 수 있는 툴과 개발된 화면이 실행, 구현되는 단말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을의 B 프로그램 역시 화면 개발 툴과 단말 엔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갑은 을이 갑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 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단요지

법원은, ① 원고의 프로그램 A의 각 소스코드 중 웹에 공개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제외한 나머지의 유사도는 약 17.72%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의 프로그램 중 단말 엔진 부분의 갑 프로그램과의 소스코드 유사도는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319개 중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80%이상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 35개를 제외할 경우 16.3%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중 일부 상당히 유사성이 높은 코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웹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K가 피고에게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B를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동종업계의 경쟁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본 판례는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스코드 유사도 수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 02

문제된 정보의 일부가 특허로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성을 갖고 있다면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 23. 선고 2014노5270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사자	피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피해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개발 담당하던 자 · 을 : 세라믹 코팅제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해자
판결결과	유죄
영업비밀의 내용	피해회사가 개발한 세라믹 코팅제 관련 정보 등

사건개요

피해회사는 세라믹 코팅제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코팅제는 국내의 20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990. 3.부터 2012. 9. 29.까지 피해회사에서 세라믹 코팅제 개발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기술개발부 부장 및 사내 인트라넷, 이메일, 기술연구소 서버 등 회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공소 외 을, 병과 중국에 피해 회사와 유사한 업체 A를 설립한 다음 피해회사의 세라믹 코팅제 관련 자료들을 유출, 이를 이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경 부터 2012. 4.경 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첨부파일이 저장된 데이터 파일 등을 백업받았으며, 이를 피고인 등이 중국에 설립한 A 회사의 세라믹 코팅제 개발, 생산,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항소)

피고인은 문제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은 피해회사가 특허로 공개한 내용이거나 역분석을 통해 구조를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판단요지

- 1) 법원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출원 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 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2) 한편 역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된 생산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3)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① 영업비밀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의 배합비 정보에는 특허의 내용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허 실시례에 기재된 원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영업비밀인지 문제되고 있는 제품의 배합비 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점, ② 일반적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원료의 구체적인 배합비율 전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허를 보고 코팅액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외에도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추가물질을 알아내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점, ③ 피해 회사에서 출원한 특허의 내용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원료와 배합비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서 실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유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는 특허에 공지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영업비밀로 문제된 정보 중 일부가 특허로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4) 또한 역분석이 가능한 점과 관련해서는 ④ 해당 정보가 역분석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⑤ 역분석이 가능하다 해도 피해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이상 역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특히로 공개된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이 존재하며 그 부분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여전히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고, 역분석이 가능한 사정은 피해회사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는 이상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판례 03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가 회사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며 피해 회사가 다년간의 상담을 통해 축적한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3고단7246 판결
사 건 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 사 자	피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 피해회사에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고객정보 저장서버에 접근하여 고객정보를 누설한 자 을 :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갑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가공하여 누설한 자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 컨설팅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판 결 결 과	유죄
영업비밀의 내용	피해회사의 고객정보

 사건개요

피고인 갑은 2007. 7. 1.부터 2011. 7. 31.까지 유학 컨설팅 사업을 하는 피해회사의 경영기획부 IT팀장과 정보통신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을은 2005. 5. 2.부터 2012. 5. 31.까지 피해자 회사의 학습기획관리부 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갑은 피해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로서 피해회사의 고객정보 저장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퇴직하기 하루 전인 2011. 7. 30.경 피해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여 고객정보 저장 서버에 접근한 후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 DB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갑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회사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근무를 했던 공소 외 병이 2012. 5. 1.경 피해회사를 퇴직하고 피해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유학 컨설팅 업체를 설립·운영하자, 피고인들은 병과 병이 설립한 유학 컨설팅 업체가 주최하는 유학설명회 등 업무에 피해회사의 고객정보를 활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갑은 2012. 5. 8.경 병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고객정보를 송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고객정보 DB자료 중 10,687명의 학생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부 모전화번호, 학부모이메일주소가 포함된 파일을 피고인 을과 병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 갑, 피고인 을의 각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자료를 누설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고객정보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판단요지

법원은, ① 피해자의 고객정보 파일은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병이 다른 입수경로를 마다하고 굳이 1년 전에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피고인 갑을 통해서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를 취득하고자 한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피해 회사의 고객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② 피해회사와 같은 유학컨설팅업체는 회원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데 이러한 회원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상담과정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정보는 이와 같은 다년간 노력의 결과물인 점, ③ 피해회사는 운영서버와 분리하여 별도의 DB 서버를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정보는 위 DB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접근암호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고, 정보통신 관리책임자였던 피고인(갑) 이외에는 하드웨어 관리자 정도만이 접근암호를 알고 있었던 점, ④ 피해회사는 직원이 입사할 경우 비밀준수의무가 기재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누설 또는 가공한 정보는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회사의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종종 문제되는데, 본 판례는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해당 고객정보가 다른 공개된 경로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인지, 피해회사가 해당 고객정보를 어떻게 취득·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판례 04

특정 프로그램이 저작권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특정 프로그램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카합481 결정
사건명	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
당사자	<p>신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 <p>피신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병, 정 :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 자한 자 · 무 : 을이 신청인 회사를 퇴사 한 뒤 설립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
판결결과	신청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신청인 회사가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등

사건개요

신청인 갑 회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신청인 을은 2007. 10. 25.경부터 2008. 2. 1.경까지 갑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신청인 병은 2007. 10. 25. 경부터 2011. 7. 30.경까지, 피신청인 정은 2007. 10. 25.경부터 2011. 8. 5.경까지 갑 회사에 근무하면서 문제된 자동화 공장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병, 정은 근무기간 중 갑 회사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고, 본인이 알거나 소지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2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및 고객사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을 각 작성 및 제출하였다.

그런데 병, 정은 갑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갑 회사의 문제된 자동화 공장시스템 제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각자의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복사 및 저장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하다가 퇴사하면서 위 소스코드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그대로 반출하여 소지하였다.

한편 을은 갑 회사를 퇴사한 후 갑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무 회사가 자동화 장비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을 수주하자 병, 정에게 위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였다. 이에 병, 정이 갑 회사의 문제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 회사에 제공하자, 갑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들의 항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갑 회사의 문제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이미 외부에 공개되어 있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으므로, 갑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판단요지

법원은, ① 피신청인들(병, 정)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신청인 회사의 문제된 프로그램은 10년 경력의 프로그래머가 새롭게 개발할 경우 제품으로 납품되기까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프로젝트 당 평균적으로 2명 정도의 인력이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약 6,000만 원 가량을 투입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는 점, ③ 문제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위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언론, 잡지 또는 학술지 등에 보고되거나 소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 회사는 문제된 프로그램 6종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을 마쳤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문제된 프로그램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신청인 회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보안 관련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전달하였으며, 문제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저장된 디스크를 금고에 보관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 회사의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을 마친 사정만을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해당 정보의 가치,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신청인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해 영업비밀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례 05

특허등록으로 특허공보에 게재된 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비공지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카합10084 결정
사건명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
당사자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설계도면 등을 제작하는 회사 피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 갑 회사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에 관한 OEM계약을 체결한 자 · 병 : 을의 부인
판결결과	신청인 신청 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갑 회사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도면 및 그 도면으로 만들어진 금형

사건개요

갑 회사는 '을'과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에 관한 OEM 계약(이하 이 사건 OEM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의 실질적인 개발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을'에게 이 사건 제품의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는데, '을'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OEM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후 '을'은 갑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및 그 도면으로 만들어진 금형 등을 이용하여 갑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하여 '을'의 부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을'이 이 사건 OEM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품을 '병'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납품하여 갑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갑 회사는 이러한 '을', '병'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OEM 계약 소정의 비밀유지의무약정을 위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들의 항변

갑 회사 주장의 설계도면 및 그 도면으로 만들어진 금형은 이미 공개되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요지

법원은, ① 피신청인의 행위가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 또는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② 이 사건 제품의 실질적인 개발자인 소외인이 특허등록을 신청하여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이미 공개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이나 신청인이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을)에게 제공한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신청인들이 침해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아무런 소명이 없고, ④ 이 사건 OEM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거의 계약내용 공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을’을 상대로 계약상의 약정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것이 장래에 향하여 가처분을 명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이 사건과 같은 제품생산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본안 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고, 본안 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 2) 이 사건 제품의 실질적인 개발자인 소외인이 특허등록을 하여 이 사건 도면 등 영업비밀이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되었던 점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판례 06

인터넷으로 쉽게 입수가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와 결합되어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카합20025 결정
사건명	전직금지등가처분신청
판결결과	채권자 신청 일부 인용
당사자	채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 식자재 유통 회사 채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 갑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영업비밀의 내용	영업업무와 관련된 “영업방법과 영업전략”에 대한 정보



사건개요

갑 회사는 식자재 유통회사이고, 을은 갑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다음 다른 식자재 유통회사인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을은 갑 회사로부터 퇴사하기 전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사일로부터 3년간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유지서약을 하였다. 그런데 갑 회사의 영업 관련 문서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 을이 퇴사하기 직전 을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하여 보안 해제된 다음 을의 개인 웹하드로 전송되었다.

이에 갑 회사는 을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이 사건 영업비밀서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로의 취업 및 동업계약, 고문계약, 자문계약 체결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식자재 영업업무의 종사금지 및 이 사건 파일들의 공개·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채무자의 항변

갑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파일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입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안수준이 낮고 동종업계에서 비밀문서로 취급되지 않는 단순 사무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을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파일들 전부가 포함된 폴더가 업로드된 것이고, 그 중 극히 일부 문서만 다운로드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요지

- 1) 법원은, 채권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파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식자재 수요업체의 주소와 연락처와 식자재 영업에 관한 상식 등을 포함하지만, 위 파일들에는 위와 같은 단순정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영업대상이 되는 ‘고객명단’, ‘거래처별 거래가격’, ‘매출액’, ‘영업이율’, ‘결제조건’, ‘채권자의 장래판매계획’, ‘제품개발계획 등’ “영업방법과 영업전략”에 대한 정보가 결합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채권자에 의해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던 점, 위 정보들은 그 취득과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파일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2)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들만 보안 해제되어 채무자의 개인 웹하드로 전송된 사실, 채권자의 보안시스템에는 채무자의 주장과 달리 폴더 전체에 대한 일괄 해제가 아닌 파일별로 또는 파일을 묶어 보안해제하는 기능이 소명되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실수로 전송한 것이 아니라 영업에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3)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파일들을 전송한 다음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식자재 유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파일들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의 취업을 금지하고 이 사건의 영업비밀의 공개·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 중 자연스럽게 지득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파일들은 영업 사원이 영업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득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입수 할 수 있는 단순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채권자에 의해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던 정보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법원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혼재된 채권자에 의해 유지 관리된 위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 정보 중 인터넷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단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 기간을 정하였다. 다만, “동업계약, 고문계약, 자문계약 체결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채무자의 식자재 영업업무 종사”부분은 그 개념의 범위가 특정되기 어렵고 과다하게 넓으므로 금지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채무자가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웹하드로 전송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 07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도 경제적 유용성 인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43866
사 건 명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 • A, B, C사 피고 • D사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사건개요

원고 : 방송사들 (KBS, MBC, SBS)

피고D : 방송사 JTBC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무려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고 개표방송 시점으로부터 불과 30여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고 원고들의 사전 동의나 허락없이 원고들과 거의 같은 시각 또는 일부 원고들보다는 더 일찍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는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부경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피고 측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이를 입수한 2014. 6. 4. 17:32경 위 메시지를 함께 이용하는 나머지 8명의 기자들 및 그들 언론사에 공지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에 의해 공개되기 이전에 원고 MBC를 통하여 대중에게 먼저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다.

당시 언론계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에 쉽게 입수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언론계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하여 입수되었고, 적법한 인용보도 절차를 거쳐 보도되었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서의 '부정한 수단'


판단요지

영업비밀은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의무로써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공지성이 있는 것이다.

피고는, 피고측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할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입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점에서 이미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들 역시 그 시점에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주된 공개대상인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비공지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MBC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공개 이후에 이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간격이 3초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근접하여 실질적으로 동시에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원고 KBS, SBS 보다 그 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비공지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등도 그 유용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의 거액을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공개하여 대중들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를 포함한 경쟁사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장차 경쟁사에 비하여 이익 창출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경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창출 및 가치 유지 과정에 어떠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바 없는 피고가 위와 같은 경로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이 언론계 관행에 따른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입수 및 공개 행위는 부경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개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고 -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함



핵심어

영업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부정한 수단

판례 08

영업비밀의 공지여부 판단에 있어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유기적 일체로서 공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제14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2009569
사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당사자	원고 • A사 피고 • B사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단안형 야간투시경 및 그 부품에 관한 설계도면과 작업표준서

사건개요

원고 : 광학렌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관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 회사
 피고 :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추후 단안형 야간투시경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추가

원고의 주장 :

원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회사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넘겨주었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두 차례의 대한민국 입찰에 참가하여 모두 원고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는 1차 수리부속계약 및 2차 수리부속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납품을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입찰 참여 및 낙찰에 따른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판단 기준
- ◎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단요지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그 전체로서 기여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공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기적인 일체로서 공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술정보에 공지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의 이 사건 기술정보가 공지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거나 그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국방규격 작성 관리기관의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받을 수는 있으나, 이들 업체는 보안서약을 하고 국방규격의 회수 또는 파기 등의 제반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납품업체로 선정되었거나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이 기술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원고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1차 수리부속계약의 입찰에서 피고 다음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원고였고, 2차 수리부속계약의 입찰에는 원고와 피고만이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원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제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원고가 증가되는 원고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 즉 재료비, 외주가공비, 부가가치세, 노무비, 관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적용).

※ 비고 -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금지청구를 인용함.



핵심어

영업비밀, 비공지성,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례 09

비공지성의 입증정도와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해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518302
사 건 명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 • A사 피고 • B사
판결 결과	전부 인용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함)
영업비밀의 내용	화력발전소 설계자료



사건개요

원고 : 발전소 설계기술의 자립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된 회사로 다수의 화력발전소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함

피고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원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 영흥 3, 4호기의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는 내용의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자료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후 영흥 5, 6호기 설계기술용역수행계획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용역계약 체결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원고는 금액이 너무 낮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영흥 5, 6호기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에게 이 사건 설계자료 등을 전달하였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일부 수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흥 5, 6호기의 설계자료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0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주요쟁점

- ◎ 비공지성의 입증 정도
- ◎ 영업비밀의 보유주체



판단요지

(이 사건 설계자료의 핵심기술은 이미 공지되었고 원고는 단순 취합만 하였으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설계자료와 설계표준화 자료 또는 각종 규격 등의 공지된 자료가 대동소이하다거나 원고가 기기제작사가 작성한 것을 단순취합하여 운전지침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설계자료가 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증거(비공지성을 부정할 반증)가 없다.¹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당해 정보를 자신이 직접 생산, 개발한 경우나 매매 또는 실시권허여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설계자료를 원고로부터 납품받았으므로, 이 사건 설계자료의 소유권 및 이용권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기기 관련 도면 등 일부 자료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성, 수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설계자료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피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설계용역 업무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자료 일부의 작성, 수정을 지시하였다거나 피고가 3, 4호기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소유권 및 이용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3, 4호기 계약에 영업비밀 보유자로서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설계자료에 관한 영업비밀 보유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되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3, 4호기

1 비공지성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엄격하게 부과하면 원고는 자기 이외에 모든 제3자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당해 정보를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증하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은 추정되며, 피고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반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설계자료의 영업상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는 3, 4호기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적어도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비고 - 비공지성에 관한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각주를 통해, 원고가 당해 정보를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증하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은 추정되며, 피고는 당해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반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핵심어

비공지성, 영업비밀 보유자

 판례 10

역설계를 통해 취득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4337 판결
사 건 명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
당 사 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법인 극동일렉콤 주식회사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영에이치에스 주식회사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청구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선박조명등 제조를 위한 설계도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나목, 제10조, 제14조의2 제5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선박용 조명등기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피고 : 원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재정 악화로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일 무렵 원고를 퇴사하고 입사한 회사로, 이 무렵부터 선박조명등의 제조, 판매를 시작함

2)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A에 위탁 보관한 선박조명등 제조를 위한 금형을 불법 반출하여 입수하고, 원고를 퇴사한 기술 인력이 피고에 입사한 후 원고의 선박조명등 제조를 위한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원고의 선박조명등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으로 피고 제품의 생산 등 금지와 폐기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선박조명등을 납품할 경우의 영업이익인 총 매출의 3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영업이익 3,8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 역설계를 통해 취득한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요지

해당 자료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실제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역설계가 정당한 기술정보의 획득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정보를 부정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중 그 기술 자체가 단순하고, 이를 구현한 제품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 기술정보가 해당 기술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역설계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것(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이라면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원고의 설계도면은 이른바 ‘벤더도면’으로 제품 개개의 부품 도면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도면에 해당하고, 물품 제작을 발주하는 업체(선주사)에서 요구하는 조명등 기구의 규격과 형태가 상당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카탈로그에는 선박조명등이 설계도면 형태로 그려져 있고 규격 및 부품, 치수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바, 이 도면을 통해 선박조명등의 형상을 알 수 있고 각 구성부분의 수치도 확인할 수 있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카탈로그가 있으면 설계도면과 기술인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원고 법인의 선박조명등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인 바, 원고의 퇴사인력 중 설계도면 작성에 관여한 인력이 다수 피고에 입사한 점도 피고 제품 및 원고 제품의 유사성의 주된 요인인 점, 위와 같은 기술인력과 설계 프로그램, 카탈로그 및 제품 분해 등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선박조명등 형상 및 치수를 손쉽게 역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설계도면은 그 중 일부가 카탈로그의 형태로 관련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그 전체로서의 구체적인 기술정보의 내용이 공공히 알려져 있거나 공개된 자료에 의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비공지성, 역설계, 선박용 조명등기구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판례 11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상 정보(실패한 기술)에 대하여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을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1가합117339
사 건 명	제조 및 판매금지 등의 소
당 사 자	원고 • A사 피고 • B사, C사, D, E, F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절전기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경영상·기술상 정보



사건개요

원고 :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

피고B, C : 원고를 설립하고 등기이사로 근무했던 사람들

피고E사 : 원고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피고B, C 등이 2011. 8.경 설립한 회사

개인사업체 E : 피고C의 처인 피고D가 대표인 개인사업체

(피고E와 개인사업체 E를 피고E로 통칭)

피고F, G, H, I, J : 원고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사람들 (퇴사시기: 2010. 5. ~ 2011.11.)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절전기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경영상·기술상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 D, E는 이를 임의로 유출하여 피고 F와 함께 절전기를 개발하였고, 피고 회사들은 이를 제작하여 원고의 기존 독점거래업체에 판매하였으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그 밖에 업무상 배임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도 주장)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특징,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 보호기간

**판단요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자 2011마1624 결정),

특히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원고의 거래처, 영업망, 계약조건, 영업전략, 제품 원가 및 판매가격 등 경영상의 정보와 제품 규격, 원재료의 배합비율, 제조 공정 등 기술상의 정보로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취득하고 퇴직한 후 경쟁사를 설립하여 동종의 절전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피고 D, E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절전기의 제조와 관련된 공정 및 그 판매에 필요한 영업활동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다른 절전기의 제조·판매에 관한 정보와 구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정보는 영업비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술상 정보를 토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특허는 외부의 에너지 공급없이 지속적으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로 보이기는 하지만, 경쟁 업체로서는 독자적인 연구와 실험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나머지 기술상 정보를 알아낸다면 비록 실패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제조 공정 등과 비교·보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상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이 사건 기술상 정보는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경쟁업체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가치 내지 유용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 D, E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 후 2년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위 경업금지기간 이상의 장기간으로 정한다면 위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피고 D의 퇴직일인 2010. 5. 24.부터 2년을 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발각 경위, 피고들의 영업중단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2천만원으로 정함

※ 비고 - 영업비밀을 토대로 한 원고의 특허가 자연법칙 위배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특허법원 2014허1785)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서도, 경쟁업체로서는 실패한 기술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

핵심어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특징,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 보호기간

판례 12

역설계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도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하고, 영업비밀의 침해금지기간은 비교적 단기간만 인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1가합34076
사건명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 B, C, D, E, F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내비게이션의 회로도, 전원부 블록도, 검증을 위한 테스트 방법, 차량에 적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등에 관한 기술정보

사건개요

원고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회사

피고 A사 : 원고로부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납품받아 중국에 공급하는 회사

피고 B : 피고 A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 C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A사에 입사

피고 D, E, F : 피고 A사 직원들

원고의 주장 :

피고B는 피고 직원에게 원고와 같은 내비게이션 제품의 개발을 지시하였고, 피고 직원은 원고의 직원인 피고C를 포섭하고, 피고D, E, F를 영입한 뒤 피고C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피고A사는 이를 사용하여 침해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비밀의 사용금지, 공개 금지 등을 구하고, 손해배상으로 피고A의 영업이익 중 일부인 7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요쟁점

- ◎ 경제적 유용성 인정여부, 영업비밀 보호기간, 손해배상액 산정

판단요지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재규어 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테스트 및 재규어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수정해왔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노하우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와 재규어사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당사자외에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해 유출하지 않았고, 원고와 재규어사 외에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① 설령 역설계 등으로 이 사건 기술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차량의 출시 이후에나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독점적으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이 가능하고, 다른 경쟁 업체들로서는 재규어사가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의 개발 사양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기술 정보 중 일부를 재규어 사로부터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독점적으로 이를 제공 받아 다른 업체보다 앞서서 이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 정보는 원고의 영업 비밀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내비게이션 개발기간이 약 1년 6개월 가량 소요된 점, 피고C는 재규어사에 근무하다가 원고가 재규어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회사에 채용되어 2008. 7.부터 원고의 내비게이션 관련 영업을 담당해온 점, 이 사건 기술정보는 고도의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재규어사의 해당 모델 차량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양에 관한 것으로서, 내비게이션 개발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우 역설계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의 사양을 파악할 수 있다면 위 차량에 맞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데에는 원고의 위 개발기간(1년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정보에 대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 즉 이 사건 영업비밀의 침해금지기간은 피고C가 원고회사를 퇴직한 2010. 3.경부터 3년을 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이 사건 기술정보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당시까지 원고의 내비게이션은 아직 중국 판매를 위한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재규어사에 의하여 내비게이션 공급업체로 선정된 데에는 피고회사의 영업력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침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재규어사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협약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재규어사의 차량을 위한 내비게이션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55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

※ 비고 - 역설계 등으로 취득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금지청구는 기각.



핵심어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판례 13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변환, 업데이트한 프로그램(기존의 프로그램과 정량적으로 보면 약 12% 차이)에 대하여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2가합16110, 20317(병합)
사 건 명	손해배상
당 사 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 :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C : 원고를 설립하고 등기이사로 근무했던 사람들 • E사 : 원고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피고B, C 등이 2011. 8.경 설립한 회사 • 개인사업체 E : 피고C의 처인 피고D가 대표인 개인사업체 (피고E와 개인사업체 E를 피고E로 통칭) • F, G, H, I, J : 원고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사람들 (퇴사시기: 2010. 5. ~ 2011.11.)
판결 결과	항소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CIM 프로그램(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반도체나 LCD, LED 제조공정의 공장자동화를 위한 개별장비와 상위컴퓨터를 연결하는 정보관리 제어장치) 소스코드

 사건개요

원고 :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
 피고B, C : 원고를 설립하고 등기이사로 근무했던 사람들
 피고E사 : 원고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피고B, C 등이 2011. 8.경 설립한 회사
 개인사업체 E : 피고C의 처인 피고D가 대표인 개인사업체(피고E와 개인사업체 E를 피고E로 통칭)
 피고F, G, H, I, J : 원고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사람들 (퇴사시기: 2010. 5. ~ 2011.11.)
 원고의 주장 :
 피고B는 원고회사에서 퇴사 후 외장 하드디스크에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저장되어 있

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B, C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MS를 통하여 수주한 대만 Q사의 CIM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설치해줌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인정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판단요지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은 P가 대만 Q 사와 중국 R 사에 각 공급한 CIM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Visual Studio C#.NET을 사용하여 CIM 프로그램을 변환하고 대만 Q 사의 장비에 맞게 업데이트 한 것인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CIM 프로그램은 신규의 창작물로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통신규약 등에 차이가 있어 P가 대만 Q 사와 중국 R 사에 각 공급한 CIM 프로그램과 정량적으로 보면 약 12 % 정도 차이가 나는 점, P가 대만 Q 사와 중국 R 사에 각 공급한 CIM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도 원고의 대표 K가 P의 대표 S로부터 인수 한 것인 점, 대만 Q 사에 대한 CIM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IM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원고의 영업비밀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대만 Q사에 대한 것이나 DMS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DMS는 P와 원고의 주요 거래처이고 대만 Q사에 대한 CIM 프로그램 수수등은 DMS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각 구체적 CIM 프로그램은 장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 유사 소스코드의 존재로 제작과정과 비용 등에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 피고E사의 DMS에 대한 CIM 프로그램 관련 매출액은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실제 순이익은 매출액의 30% 정도일 것이라고 자인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손해액을 2,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 비교 -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변환, 업데이트한 프로그램(기존의 프로그램과 정량적으로 보면 약 12% 차이)에 대하여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함

핵심어

영업비밀, 경제적 유용성, 손해배상

3.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

판례 14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3가합15041 판결
사 건 명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당 사 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병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정의 부인과 을이 각 사내이사로, 정의 부인이 감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 · 병, 정, 무, 기, 경 : 갑 회사에서 국외업무 총괄업무를, 기술지원 총괄업무를, 전략사업 총괄업무를, 연구생산 부분 총괄업무를, 기술지원팀 과장으로 업무를 각 담당하며 근무하였던 자
판 결 결 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모델의 광다중화장치와 구별되는 새로운 제품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양 및 규격 등을 지정한 제품

사건개요

갑 회사는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병’은 갑 회사에서 수입, 국외업체와의 메일 송수신, 국외기술 번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정’은 갑 회사에서 생산자재, 장비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고, ‘무’는 갑 회사에서 영업, 대외활동 등 업무를 담당하고, ‘기’는 갑 회사에서 연구소, 제품 생산, 조립, 테스트, 사후 서비스, 제품 인증 등 업무를 담당하고, ‘경’은 갑 회사에서 시공, 사후 서비스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다가 각 퇴사하였다.

‘병, 정, 무, 기, 경’은 갑 회사 입사 당시 직무상 습득한 기술을 타에 공개하거나 허락 없이 갑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종업계 임직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기타 갑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제출하였다.

갑 회사에서 퇴사한 ‘병’은 자신의 부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갑 회사와 같은 목적의 을 회사를 설립하였고, 갑 회사에서 퇴사한 ‘정, 무, 기, 경’은 ‘을 회사’에 입사하여 과거 갑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이후 을 회사는 갑 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였다.

갑 회사는 ‘병’이 갑 회사에서 퇴사한 직후에 을 회사를 설립하고 ‘병’을 포함한 나머지 ‘정, 무, 기, 경’이 을 회사에 입사하면서 과거 갑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을, 병, 정, 무, 기, 경’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제품 관련 자료는 소외 회사에게 매수의사를 밝힌 업체라면 누구라도 얻을 수 있고, 더욱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판단요지

1) 법원은, ① 원고 회사가 취급한 광다중화장치는 그 내부 구성품을 어떤 사양, 규격으로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특정 모델이 되는 점, ② 원고는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았고,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 받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제품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을 개발한 점, ④ 피고(병)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제품 제작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⑤ 원고 회사는 보안관리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문서 및 열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원고 회사의 제품 및 관련 문서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⑥ 피고(병, 정, 무)는 피고 회사(을)를 설립하기로 합의 한 다음 자신들의 부인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한 점, ⑦ 피고 회사(을)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제품명만 변경한 채 그대로 사용하여 또 다른 업체에 납품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사양 및 규격에 대한 정보는 소외 회사와의 협의 업무

를 수행한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사양과 규격을 특정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의 제작과정에 참여한 당시 원고 회사 직원들(퇴사 후 을 회사로 이직)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문서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2) 따라서 법원은 피고 회사(을)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제품 관련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원고 회사 동종영업을 하는 피고 회사(을)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 회사(을)가 피고 회사(을) 직원들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또 다른 업체에게 납품한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1) 위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제품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함에 있어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기존의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하며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다.

- 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 판매 등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점
- ②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
- ③ 퇴직자가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했고, 퇴직 전 후 업무가 동일하다는 점
- ④ 보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던 점
- ⑤ 문서 및 열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였던 점
- ⑥ 이 사건 제품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

2) 위 판결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지만, 기존 상당한 노력이라는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비밀관리성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례 15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 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31847
사건 명	손해배상(기)
당사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 피고 • B사, C, D, E, F, G, H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ERP 프로그램의 공통 소스파일 및 각 업무 소스파일(기술상 정보) 주주명부 등 경영상 정보

사건개요

원고 : 건설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과 유지보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피고C, D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여 B사를 설립. B사의 공동대표이사

피고D 내지 H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B사에 입사한 직원들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기술상 영업비밀인 ERP 프로그램의 공통 소스파일 및 각 업무 소스파일을 외장하드 또는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부정취득하고, 피고 회사의 공용서버의 공용폴더에 저장하여 누설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경영상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료를 노트북이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유출하거나 그 자료를 이메일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 또는 배임의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판단요지

원고의 취업 규칙에서 직원들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 C 등이 각 체결한 연봉 계약서에 비밀 누설 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 F, G가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0.10. 경 원고 직원 L이 위 각 소스 파일에 대한 보안 관리를 책임지게 된 사실, L은 2010. 11. 2 경 각 팀장에게 솔루션 관련 원천 소스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솔루션 사업부에서는 소스 세이프 2005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스들을 관리해 왔는데, 솔루션 사업부 직원들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서만 소스 세이프 2005에 접속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통 소스 및 각 업무 소스 파일에 대하여 피고 C 등이 원고에 재직 할 당시 영업 비밀 표시 또는 비밀 등급 표시가 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설립된 2008. 12. 5. 이후 L이 솔루션 사업부의 부장으로서 보안 관리 책임을 담당하게 된 2010. 10. 경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위 각 소스 파일에 대한 보안 유지 업무가 특정 책임자의 관리 아래 수행되지 않은 점, ③ 피고 F가 소속되어 있던 ss 팀은 위 소스를 다른 자료들과 함께 ss 팀의 공용 서버에있는 공용 폴더에 저장해두고 팀원들이 필요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였는데, 그 팀원들은 소스 세이프 2005에 접속하는 방식과 달리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위 공용 서버에 접근해 저장된 자료를 사용해 왔던 점, ④ 실제로 피고 F도 퇴사 무렵 소스 세이프 2005가 아닌 위 공용 폴더에 있던 공통 소스와 업무 소스를 다른 자료와 함께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통소스 및 각 업무 소스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주 명부 등 경영상 정보들에 관하여 살피 건대, 원고의 주주 명부, 유지 보수 고객사 현황, 2009년 사업계획서, 반도 서비스 내역 등 경영상 정보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피고 F, G로부터 재직 중 비밀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은 사실, 원고의 부서별 공용 서버와 직원 개인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경영상 정보들에 영업 비밀 등급이 표시되지 않았고 관리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 없었던 점, 위 정보들은 피고 E, F, H가 원고에 재직하던 중 부서 공용 서버의 공용 폴더에 저장된 자료 또는 업

무를 하면서 생산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순차적으로 퇴사하면서 외장 하드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데, 팀원이면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공용 서버의 공용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점, 피고 H은 경영 지원실 M 실장 지시로 비상시에 대비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외장 하드에 백업해 두었고, 피고 E은 위 L의 허락을 얻고 노트북에 저장 하였던 자료를 외장 하드에 저장 한 것을 원고가 알고도 피고 H, E가 퇴사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영상 정보들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비고 - 영업비밀성을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도 부정.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



핵심어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판례 16

비밀관리성 관련 개정법상의 ‘합리적인 노력’을 언급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창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4가합31615
사 건 명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 • A사 피고 • B사, C, D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플라스틱 성형 가공법의 일종으로 진공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화기계의 제작 기술

 사건개요

원고 : 산업기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한 대형 기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함

피고C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여 B사를 설립(퇴사시기 : 2008. 12. 16.)

피고D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B사에 입사(퇴사시기 : 2010. 8. 17.)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국내에서 최초로 진공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화기계 제작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C, D는 원고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영업비밀을 외장형 저장장치 등에 저장하여 무단 반출하였고, 이후 피고 B사를 설립하여 위 영업비밀을 자동화기계의 제조·수리에 사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인정 여부
-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판단요지

개별 부품에 대한 회로도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기계를 제작할 수 없고, 기계 전체의 기능을 구동시키는 회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원고가 수없는 실패를 거쳐 완성한 것으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 할 수 없으며, 개별 부품에 대한 자료는 일반에 공개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부품에 대한 자료만으로 기계를 제작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일반에 공개된 자료로서 비공지성이 없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시스템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산의 보안을 관리하였고,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여 설계부의 자료를 저장하여 두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설계직원들만 그 권한범위 내에서 위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중략) … 원고가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이 사건 설계도면 등과 관련된 비밀유지 및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밀유지 및 관리 여부는 비밀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정, 종전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 요구되었으나,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 정도를 완화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비밀유지성 요건도 충족한다.

기계의 제작원리와 주요 부품, 매뉴얼 등이 공개되어 있고, 피고 C, D는 퇴사 당시 원고 설계팀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위 분야의 전문가들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이 없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설계도면을 만드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설계팀 직원들은 공유상태의 파일을 취득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고 피고 C, D도 설계도면을 손쉽게 취득한 점, 피고 B사는 직원이 5~8명의 신생업체로서 피고 B 스스로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피고 C, D가 원고를 퇴사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를 퇴직한 2008. 12. 16.부터 5년이 되는 2013. 12. 15.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원고를 퇴직한 2010. 8. 17.부터 5년이 되는 2015. 8. 16.까지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이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는 이유 없다.

※ 비고 - 비밀유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된 사실을 언급함.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일로부터 5년으로 보고 이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금지청구는 기각함.



핵심어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판례 17

영업비밀 보호 요건으로서 '합리적 노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9.27. 선고 2016노1670
사 건 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 사 자	피고인 • A
항 소 인	검사
판결 결과	원심(무죄) 판결 파기 (유죄/ 벌금 400만원)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353
영업비밀의 내용	여행사 고객 정보(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사건개요

피고인 : 여행전문업체인 피해자 회사에서 단체항공권 예약, 현지 호텔 예약 등 업무를 수행한 퇴사자

공소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인 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퇴사 후에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거래처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함

원심 판결 :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고객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직원들 모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였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

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상당한 노력 = 합리적인 노력),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

주요쟁점

- ◎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관리 조치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개정 법에 따른 “합리적 노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단요지

적용 법률 : 피고인이 이 사건 고객정보를 사용한 시점은 2015. 3. 26.경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2015. 1. 28.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

합리적 노력의 의미 :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해자 회사는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임
- ② 피해자 회사는 고객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등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 (합리적 구분)
- ③ 네이버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는 법인 계정으로 관리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작성된 정보는 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 (기술적 관리)
- ④ 네이버 계정과 구글 계정 모두 피해자 회사 대표가 관리 (조직적 관리)
- ⑤ 피해자 회사는 직원 4명, 연매출 2억원의 소규모 회사임
- ⑥ 피고인을 제외하면 피해자 회사 전원이 대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
- ⑦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의 중요성 및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
- ⑧ 피고인은 근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상당한 신뢰관계가 구축
- ⑨ 상시적인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고객정보가 다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했기 때문임
- ⑩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는 접근을 차단했음



핵심어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 합리적인 노력

 판례 18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자 2016카합81253 결정
사 건 명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 주식회사 A 채무자 • 주식회사 B, C, D, E, F, G, H
판결 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350,000,000원)
영업비밀의 내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소스코드, 설계서, 매뉴얼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및 마목, 제10조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

채무자 B사 : 채권자와 사이에 채권자의 제품인 PACS(I)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개발용역계약, J(K) 제품 유지보수 및 마이그레이션 용역계약, Gateway solution 제품 개발 업무위탁 계약 등(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하고, 채권자의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신규 제품 개발 업무 등을 수행

채무자 C : 채무자 B사의 대표이사

채무자 D, E, F : 채권자에서 근무하다 각 2015. 3.경, 2011. 5.경, 2007. 8.경 각 퇴사한 사람들

채무자 G, H : 채무자 B사에서 프로그래밍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

2) 채권자 주장

각 파일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채무자 실시제품들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하였으며,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채권자의 기존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채무자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 마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
- ◎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



판단요지

채권자는 이 사건 파일을 별도의 서버에 관리하고 채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접근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으로부터는 업무상 비밀준수 약정 의무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 B사로부터는 비밀유지약정 의무를 각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채무자 B사 소속 개발 직원들로부터도 비밀유지 서명을 받는 한편, 별도의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비밀유지 및 관리 여부는 비밀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 요구되었으나,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 정도가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파일을 비밀로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① 채권자는 J(K) 개발에 5년이 소요되었고, 그 중 뷰어 프로그램의 개발에만 2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무자들은 2013. 6.경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무렵부터 채무자 실시제품2를 개발하여 오다가 2014. 12.경 완성함으로써 채무자 실시제품2를 개발하는데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 실시제품2를 구성하는 대다수 소스코드들이 오픈소스코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유사 파일 개수는 채무자 실시제품2의 총 파일 개수 7,417개 중 3개(167줄)에 불과하므로 유사비율이 극히 낮은 편인 점
 ③ 채무자 B사는 이 사건 합의약정 이전인 2009.경 개발된 채무자 실시제품1(의

원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자 제품은 대형병원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이고, 채무자 실시제품2는 채권자 제품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병원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인 바, 채무자들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자 실시제품2를 개발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주장과 같은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6. 9. 30.에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시점인 2013. 6. 19.경으로부터 4년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 의료영상정보시스템

판례 19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자 2018라20665
사건명	전직금지 등 가처분
당사자	채권자, 항고인 • 유로라인글로벌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 A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항고기각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11.자 2018카합50127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	영업실적, 선사 제시 운임, 고객사에 대한 견적가격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국제물류 주선, 해운·항공운송의 대리·중개·주선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존의 영
국선사 브로인터메드의 국내대리점이었던 ‘유로라인’을 인수하여 2015. 1. 15.경 설립된 회사
채무자 : 채무자는 2012. 3.경 유로라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채권자의 설립과 함께 채권자 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2. 28.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의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의 영업실적을 채권자의 윈 서비스(Win-Sabis) 프
로그램에서 내려받아 복사한 후 반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의 영업실적과 그에 포

함되어 있는 선사 제시 운임 및 고객사에 대한 견적 가격(이 사건 정보)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채무자는 경쟁업체인 주성에 이직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주성에의 전직금지과 채권자 회사의 다른 임직원 에 대한 주성에의 전직 권유 등 금지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 금지를 구한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판단요지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는 정보의 보유자가 스스로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내·외부인에게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① 채권자의 운송주선업의 특성상 채권자의 영업직원 및 사무직원 모두 이 사건 정보의 주된 요소인 선사의 운임 등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채권자는 적어도 이 사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데 ②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할 목적으로 객관적·실질적·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③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시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영업비밀이라 보기는 어렵다.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해 비밀관리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보의 보유자에게는 비밀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당해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까지 보호하는 경우 정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하여금 무엇이 영업비밀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루거나 취득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도 비공시성과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내세워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하게 되면, 직원들이 동종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업체에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행위가 대

부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급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비밀관리성이 충족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운송주선업체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위 프로그램 공급자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채권자의 직원들은 누구나 그 직급이나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제한 없이 검색할 수 있었고,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에는 비밀성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없었으며, 그 내용을 따로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위와 같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한 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은, 채권자의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채권자의 영업비밀관리를 위한 용도로 기능하거나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및 정보보호서약서에 채권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 등 조항들은 비밀보호에 관한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롯하여 비밀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채무자가 퇴직 무렵 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에도 채권자의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추상적 내용이 비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비밀유지가 요구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특정할 기준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침해된 영업비밀로서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는 채무자가 퇴직하던 2017. 12.말경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정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를 구성하는 선사의 운임, 화주에 대한 계약가격 등 가격정보는 실제 운송주선을 시도하는 시기의 국내 및 국제적인 경제, 사회, 정치, 자연적 조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사건 정보가 일반적 가격정보가 아닌 채권자에게 특화된 정보라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언제나 위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여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고용한 경쟁업체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와의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전직금지, 금지청구

 판례 20

‘합리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도록 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시점을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부산고등법원 2019. 3. 14. 선고 2017나54008 판결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의 소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 B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항소기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가합44659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진공식품냉각기에 관한 전체적인 설비의 배치와 연결, 개별 구성품의 세부 형상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정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냉열응용기기 및 냉열기기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 : 1999. 6. 1. 원고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22. 퇴사하였고, 2009. 9. 1. 재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4. 26. 퇴사한 후, 2011. 12. 19. J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4. 7.경부터 진공냉각기를 제조·판매하고 있음

2) 원고 주장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진공식품냉각기 및 그 각 부품들의 제조방법과 도면(이하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을 기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본인의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피고가 사용 중인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의 사용 금지 및 그 폐기, 제3자에 대한 공개 금지를 구한다.

주요쟁점

- ◎ ‘합리적인 노력’을 기준으로 비밀관리성을 판단하도록 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시점
-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여부

판단요지

원고는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비밀관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공포한 날인 2015. 1. 28.부터 시행되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2014. 7. 30.경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일인 2015. 1. 28. 이후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회사 내부적으로 보안규정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정한 보안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을 사장실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별도의 비밀관리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사장실 문손잡이에 부착된 잠금장치(문손잡이 끝 부분 둥근 단추를 눌러 문을 잠그는 방식)만으로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을 사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해두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업무용 컴퓨터 및 사무실의 사진은 촬영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5년에 촬영되었다고 보이는 자료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취업규칙에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규정(제11조)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주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취업규칙의 시행일자가 1998. 2. 1.로 정해져 있음에도 당시 원고 회사의 상호(주식회사 N)가 아닌 현재의 상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취업규칙만으로는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도면에 존재하는 ‘대외비’ 표시는 사후적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영업비밀 침해기간 동안 이 사건 도면이 ‘대외

비'로 표시되어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⑥ 원고는 피고를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기장경찰서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금지청구, 폐기·제거청구, 진공식품냉각기

판례 21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을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사건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당사자	피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나. A : 피해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특히 퇴사 후 경쟁 업체를 설립하여 동종제품을 개발 가.나. B :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개발 피해업체 주식회사 F
항소인	쌍방
판결결과 (형량)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3고단7560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의료용 3D 스캐너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 구조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특히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동종제품을 개발

피고인 B :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개발

2) 항소이유

피고인들 : ① 이 사건 각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고, 특히 피고인 B는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없고 ② 양형(피고인 A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1 내지 13, 15 내지 34번 각 파일을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범행을 범하고,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주요쟁점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 여부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에 가담한 제3자의 범죄 성립 여부



판단요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영업비밀 누설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우선 그 재산상 이득액이 특정이 되어야 하고 재산상 이득액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영업비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취지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었다(개정 이유는 기업 외에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처벌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재산상 이득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분에 있어서 구 부정경쟁방지법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즉, 구법에 따르면 종래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개정법에 따르

면 모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의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거나 위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징역 형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구법보다 신법의 법정형이 가법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된 재산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 회사의 규모와 자금력이 그리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 회사와 같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비밀 유지·관리를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밀 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 B가 퇴사시에 이 사건 14번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퇴사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을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하여 외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는 회사와 직원사이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민사상의 의무로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 B가 퇴사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므로(대법원 1977. 5. 18. 선고 77도541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 14번 파일의 사용 행위에 제3자인 피고인 A가 공모 및 가담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14번 파일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 이 사건 14번 파일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하지만 이 판단은 대법원(2017도3808)에서 파기됨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제18조 제2항, 불가벌적 사후행위, 의료용 3D 스캐너

 판례 22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고단3315
사 건 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다. 절도
당 사 자	피고인 • 가. A • 가. B • 가. C • 가. 주식회사 D • 가. E • 나.다. F • 나.다. G • 나.다. H • 나.다. I • 가. J • 가. K • 가. L
피해업체	주식회사 S (Y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판결 결과 (형량)	피고인 F, G, H, I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 F, G, H, I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무죄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E, J, K, L는 각 무죄
영업비밀의 내용	Y의 기술문서, 작업표준서, 도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 :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13. 10. 9.경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설립
- 피고인 B :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다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D사의 품질 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C : 피해 회사의 인증팀장
- 피고인 D사 :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와 별개의 Y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 피고인 E : 피고인 D사의 품질·인증 책임 이사로 근무
- 피고인 F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
- 피고인 G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 역기 및 열처리 공정의 선임대리(팀장급)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 피고인 H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의 코딩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8. 퇴사하고 D로 이직하여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D의 제품사업부 대리로 근무
- 피고인 I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의 딜리버리시스템(T) 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퇴사하고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대리로 근무
- 피고인 J :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K :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
- 피고인 L :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주식회사 X에서 연구개발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연구개발부 차장으로 근무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 F, G, H, I는 공모하여 함께 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원재료를 절취하였다.
- ② 피고인 A, E, C, B, J, K, L는 동시에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D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와 그 종업원인 E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

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Y 제조기술이 기재된 기술문서 등을 사용하였다.

- ④ 피고인 F, G, H, I는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절취한 Y 원재료를 사용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습득한 Y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피고인 D사에서 피해 회사의 Y와 유사한 Y를 제작하여 의뢰기기 인허가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사에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판단요지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이나 직업적 숙련도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열람, 저장, 출력하는 것은 근로 현장에서 통상 허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개인이 자신의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이나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다른 직업 선택이나 자기 발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중 어떠한 정보가 임의 반출이 금지되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항을 분명히 고지받지 않는 한 직원 개개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이라는 점에 관한 표시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하는 등으로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하지 않은 정보는 비록 그 경제적 가치가 크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중 일부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자백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피해 회사는 동종 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연 매출이 400억 원, 직원이 200명 이상인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서, 연구개발 분야의 직원 수만 30여 명에 이르고 이 사건 문서 외에도 수많은 문서가 작업에 사용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위 정보들이 피해 회사에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퇴사 당시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

나 고지를 하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고, 그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 회사 나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문서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 회사의 정보 관리 방식, 문서 보안규정, 비밀준수의무 부과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Y 제조기술 등을 영업비밀로 볼 수 없음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특정 회사의 직원에게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권유하여 그 직원이 실제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결정이므로, 이직하는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직원이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그 회사에서 퇴직한 후 다른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담당 업무에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은 이미 종전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더 이상 종전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자신이 업무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기술을 다른 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원재료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315,000원 상당의 원재료에 불과하고, 피해 회사가 아니고서는 시장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희귀한 재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상의 많은 원재료를 임의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재료 공급처나 임의로 가지고 나온 소량의 원재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 원재료를 D를 위해 사용하고, 알고 있는 원재료 공급처를 D 업무에 활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시가 315,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만 절도죄 인정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판례 23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밀관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2162
사 건 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다. 절도
당 사 자	피고인 ·가. A ·가. B ·가. C ·가. 주식회사 D ·가. E ·나.다. F ·나.다. G ·나.다. H ·나.다. I ·가. J ·가. K ·가. L
항소인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피해업체	주식회사 S (Y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판결 결과 (형량)	항소기각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교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고단3315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Y의 기술문서, 작업표준서, 도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13. 10. 9.경 피고인 D사를 설립

피고인 B :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다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D사의 품질 팀원으로 근무

피고인 C : 피해 회사의 인증팀장

피고인 D사 :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와 별개의 Y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피고인 E : 피고인 D사의 품질·인증 책임 이사로 근무

피고인 F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

피고인 G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 역기 및 열처리 공정의 선임대리(팀장급)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피고인 H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의 코딩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8. 퇴사하고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대리으로 근무

피고인 I : 피해 회사의 제품사업부 Y의 딜리버리시스템(T) 공정의 선임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퇴사하고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제품사업부 대리으로 근무

피고인 J :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 회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인증팀원으로 근무

피고인 K :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인증팀원으로 근무

피고인 L :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 자회사인 주식회사 X에서 연구개발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사로 이직하여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D사의 연구개발부 차장으로 근무

2) 공소사실

① 피고인 F, G, H, I는 공모하여 합계 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원재료를 절취하였다.

② 피고인 A, E, C, B, J, K, L는 동시에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D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와 그 종업원인 E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문서 등을 유출하거나, 유출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Y 제조기술이 기재된 기술문서 등을 사용하였다.
- ④ 피고인 F, G, H, I는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절취한 Y 원재료를 사용하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습득한 Y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피고인 D사에서 피해 회사의 Y와 유사한 Y를 제작하여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D사에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원심판결

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원재료를 절취한 점에 대해서 절도죄 유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4) 항소이유

- ① 피해 회사가 중소기업의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 등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비밀관리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서 비밀유지·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오로지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며
- ② 피고인 D사는 피해 회사에서 유출된 영업비밀(특히 작업지침서)과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원재료 및 그 공급처에 관한 정보와 피고인들의 기술을 결합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스텐트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 ③ 피고인 F, G, H, I의 각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판단요지

이 사건과 같이 영업비밀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종업원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영업비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①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③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 그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종업원이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이 인정된다.

해당 영업비밀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사람을 제한하는 인적 통제와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통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바, 여기서의 접근통제는 종업원이 그러한 접근통제로 인하여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통제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한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서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문서는 전자파일로 생성, 보관되면서 별도의 암호나 방화벽 없이 열람할 수 있었고, 출력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문서 출력본에 별도의 대외비라는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부서의 팀장들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부서의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일반 직원들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 팀장의 구두 허락을 받기만 하면 다른 부서의 문서들을 자유롭게 열람, 저장, 출력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문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공지성 요건이 충족되거나 해당 영업비밀의 경제성이 강하게 인정된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요구되는데(2015. 1. 2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합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밀관리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과 독립된 경제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사가 피해 회사에서 유출된 작업지침서와 피고인들의 기술을 결합하여 단기간에 유사한 스텐트 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주장하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 D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

514997호 사건으로, 피고인 D사가 피해 회사의 스텐트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 전제로 침해행위의 금지, 조성물 등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피고인 D사가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 사용하여 스텐트를 제조,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스텐트 제조업계 내에서는 이직이 잦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이직 제한에 대한 고지를 받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판례 24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6. 선고 2017고정710
사 건 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 사 자	피고인 • A
피해업체	주식회사 E (플라스틱 자동성분 분석기 제조업)
판결 결과 (형량)	무죄
영업비밀의 내용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기술 관련 PLC 프로그램 소스코드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

2) 공소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와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를 위한 PLC 및 주변기기 제어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여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프로그램, 피해 회사의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제공받아 플라스틱 선별기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 계약 제15조에 따라 피해 회사의 기술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결과물에 대한 복사물을 보유해서는 아니되는 등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 회사의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관련 영업비밀이 포함된 위 PLC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피해 회사의 경업회사 H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에 납품하였던 PLC 프로그램과 유사한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피해 회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PLC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한 후 위 H 주식회사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이

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주요쟁점

-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판단요지

①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는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비밀등급, 비밀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였거나, 출입카드 등에 의하여 출입 및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정황은 찾기 어렵고, 단순히 피해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특별한 비밀표시 없이 저장, 보관되어 있었던 점 ② 피해 회사 내부에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사 내 관련 직원이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위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위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찾기 어렵고, 그 밖에 직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징구한 것으로 보이는 보안준수약정서, 기밀유지 서약서, 서약서, PC 사용 및 보안 서약서 등에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고, 단지 일체의 회사 내 업무상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④ 피해 회사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⑤ 용역계약서 제15조에 “본 계약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기술정보 및 결과물에 대한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복사본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조항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특정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내용에 가까운 점 ⑥ 피해 회사는 플라스틱 자동성분 분석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1. 8.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32억 원을 상회하고, 연매출이 25억 원 정도이며, 국내 폐기물 선별기 시장을 약 30% 정도 점유하고 있는 바, 그 규모나 능력이 미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 플라스틱 선별기 제어

 판례 25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 및 IT회사에서의 비밀관리성 판단기준을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8노79
사 건 명	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당 사 자	피고인 • A
항 소 인	쌍방
피해업체	C 주식회사
판결 결과 (형량)	원심(전부 유죄, 징역 1년 2월) 파기, 일부 무죄 (징역 10월)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고단3134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위폐 이미지 정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2009.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보안서약을 하여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업무용으로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총 6,085개 상당의 위폐 이미지정보를 1가 관리하는 서버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

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취득 및 유출하고,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기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원심판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4) 항소이유

피고인 : ① 피고인이 취득,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② 'C를 이용한 위폐검출방법'은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지폐계수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신기술적용제품'일 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신기술' 또는 '산업기술'이 아니어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③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의 의미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 및 중국 해외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업무를 목적으로 이미 저장한 상태였는 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그 자료에 접근하여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 역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이미 보유하고 있었

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저장한 상태였으므로 그 자료에 접근하여 인지·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점(비공지성), 그 자료를 보유한 자가 이를 사용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점(경제적 유용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비밀관리성'만이 문제된다.

피해 회사는 IT업체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문서'임을 전제로 비밀등급, 비밀보존기간 표시 여부나 특정한 장소의 보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이 '파일'로 되어 있는 이상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전산 보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밀을 관리해 왔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밀관리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피해 회사의 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① 피해 회사는 서버별·폴더별로 중요도에 따라 파일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차등화하였고(이는 문서의 비밀등급 표시 및 접근권한 부여와 비슷한데, 권한 없는 자는 아예 다른 폴더·서버에 접근을 할 수 없으므로 어떤 파일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서가 영업비밀인 경우에 비해 한층 강화된 시스템이다) ② 각종 보안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내부 직원에 한하여 등록된 PC에서 등록된 ID를 이용해서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점(이는 문서보관창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금지, 사진촬영금지 표시를 한 것과 유사한데, 접속권한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유출하려는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그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역시 한층 강화된 시스템이다) ③ 피해 회사의 직원은 약 200명이고, 그 중 연구소 직원은 약 80명이며, 연 매출은 약 500억 원인데, 보안 업무를 위해 장비 대여료·솔루션 구매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는 모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서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영업비밀 유출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

※ '위폐검출방법' 및 '지폐계수기'는 모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영업비밀 취득, 비밀관리성, 산업기술

 판례 26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인천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21
사 건 명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당 사 자	피고인 • 1. 가.나. A • 2. 가.나. B • 3. 다. 주식회사 C
항 소 인	검사
피해업체	주식회사 G (의료용 레이저 콘트롤러 등을 생산)
판결 결과 (형량)	항소기각 (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무죄)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7271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MicroSon Dual Hifu Controller 제작 관련 회로도면 및 기구도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제품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한 이후, 2015. 12. 14.경 피해 회사에 의료·미용기기에 실장되는 Controller(제어기)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피고인 C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 : 피해 회사에서 기술연구소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한 이후, 2016. 2. 1.경 피고인 C사에 입사하여 전자설계팀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사 : 의료·미용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4.경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피부 미용 기기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컨트롤러, 보드 등 의 개발 및 제조를 피해 회사에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왔음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의 정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을 반출·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회사에서 퇴사시 위 정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동의없이 외장형 저장장치에 MicroSon Dual(초음파 피부치료 미용기기) Hifu Controller의 생산에 필요한 피해 회사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 MicroSon Dual Hifu Controller 제작 관련 회로도면, 기구도면 파일 등(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C사에 입사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 등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②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동의없이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외장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C사에 입사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C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3) 원심판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파일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해서 (이유)무죄, 피고인 C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

4) 항소이유

- ① 이 사건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②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주요쟁점

-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단요지

법을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위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다.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가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는지 등을 여전히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다만 그 노력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각 파일에 관하여 '비밀'임이 표시되거나 고지된 바 없고, 개인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든 사정은 추상적인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인들이 작성, 관리하는 모든 파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인 A는 개인 노트북에 이 사건 각 파일을 보관하였고, 위 노트북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다른 직원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직접 노트북에 접속시켜 파일을 복사해 가기도 하였는 바, 이 사건 각 파일은 그 접근대상이나 접근방식도 제한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연구소는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었으나, 대표이사실이 연구소 내부에 있는 관계로 일단 손님이 사무소 내부에 들어오면 별다른 제한 없이 연구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대표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5. 9. 23. 문자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는데, 디지털번호키나 현판 부착 등의 추가조치는 피고인 A의 직위해제 통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미용기기

판례 27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2435
사건명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당사자	피고인 • 가.나. A • 다. 주식회사 B
항소인	검사
피해업체	주식회사 G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
판결결과 (형량)	항소기각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위반의 점은 (아유)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C : 무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고단479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휴대폰 LCD 패널 본딩기, FOG 본딩기, 수지도포기, 투입 컨베어, 압흔 검사기 등의 제작에 필요한 구매리스트 및 설계도면 파일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8.경 퇴사하였고, 2014. 3. 5.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B사에서 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사 :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피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FOG 본딩기 제작 관련 설계도면, 구매리스트(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등')를 퇴직 후에도 반환,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B사를 위해 사용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B사의 본딩기 제작에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B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판결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해서 (이유)무죄, 피고인 C사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

4) 항소이유

- ① 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이 2015. 1.경 법률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어 기준이 완화된 점,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영업비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술정보에 해당 하는 점, 피해 회사가 규모가 작고 인적 관계가 강한 중소기업인 점,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저장된 메인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의 설계팀 직원들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②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단요지

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바 없는 점 ② 비밀관리를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도 보안관리규정을 두거나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점 ③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없었고,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저장, 추적 기능도 없었으며, 피고인 A가 근무할 당시에는 설계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④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제공하고 부품 제작을 의뢰할 경우 여러 업체에 설계도면을 분산, 제공하여 한 업체에서 본딩기를 제작할 수 없도록 방지하였다고 하나,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1본딩기 부품을 한 개의 하청업체에서 모두 제작할 리는 없으므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에 그에 해당하는 설계도면만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점 ⑤ 피해 회사는 하청업체에 설계도면을 보내는 경우 파란색 스텐프를 찍어서 보낸 다음 납품과 동시에 설계도면을 회수하고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납품과 동시에 해당 설계도면을 폐기하도록 하였다 하거나, 스텐프를 찍는다고 하여 복사본 제작을 방지할 수 없고, 하청업체가 이메일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폐기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며, 피해 회사가 다른 업체와 비밀유지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바도 없고, 설계도면 등 문서에 대한 DRM 등 보호조치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지적한 2015. 1. 28. 법률개정의 취지(비밀관리성의 판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함)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구법의 '상당한 노력'과 개정된 법률의 '합리적인 노력'의 노력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는 등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LCD 패널 본딩기

 판례 28

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의 상대성'을 판시하여 적용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485
사 건 명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다.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당 사 자	피고인 • 가.나.다. A • 나. B • 나.다 주식회사 C
피해업체	주식회사 G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유지보수업 등)
판결 결과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사 : 벌금 50,000,000원
영업비밀의 내용	PC 시간 관리 솔루션 'H'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의 기술 정보와 'H' 관련 영업활동 자료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제75조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팀장, 서비스 지원팀장 및 프로젝트 매니저(PM)로 근무하면서 'H'의 개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6. 11. 1.경 피해 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C사로 이직하여 현재 차장으로 재직중인 사람
- 피고인 B : 피고인 C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사람
- 피고인 C사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 하드웨어 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이직할 다른 회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H 소스코드'가 기록된 파일 및 피해 회사의 영업자산인 'Sale Inventory(H의 영업활동 관련 내용)'가 기록된 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사 또는 J 계정(K)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보관해 놓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위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입수하게 될 경쟁 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② 피고인 A는 이직하여 근무할 피고인 C사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H 소스코드' 중 클라이언트, 웹, 데몬(서버)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소스.zip')을 이메일(K)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H 소스코드' 중 DB스크립트 문서 파일이 포함된 파일('Db.zip')을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전송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고인 C사에 정식 입사한 후 피고인 B, I와 함께 무단으로 반출된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H 소스코드'를 공유하며 사용하여 H 프로그램과 유사한 'O'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하고 이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B, I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 ③ 피고인 B는 피고인 C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누설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H 소스코드'가 포함된 파일 2개를 취득하여 같은 날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무단으로 반출된 피해자의 영업비밀 'H 소스코드'를 공유하며 사용하여 H 프로그램과 유사한 'O'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출시하고 이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A, I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 ④ 피고인 C사는 사용인 피고인 A, 피고인 B,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의 상대성

판단요지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조치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 비밀 관리성의 상대성

비밀 관리성으로서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 가능성(표시)는 침해 행위자와 목적물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같은 개발자의 경우 평소 프로그램의 핵심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할 것이므로 퇴근, 외부 업무, 퇴직 시 등에 외부 반출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물적 시설을 충분히 운영하더라도 의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므로(굴지의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침해와 경쟁사로의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상 접근 권한이 주어진 직원이 행위자인 경우 그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의 상대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모순이다. 마찬가지로 비밀로서의 표시도 영업비밀의 나머지 요건 즉,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가져오는 자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인식의 흠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① 피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사에게 설치하고 관리하여 주는 업무를 하므로 외부인이나 거래 업체 직원 등이 방문할 일이 거의 없어서 직원들의 인식이나 신뢰 수준에 맞추어서 비밀 관리 시설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관리 방법에 인력과 비용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점 ② 이에 비추어 피해 회사는 사무실 출입 시설, 보안 장비, 사무실 내 사무용 개인 컴퓨터나 회사 서버의 경우 로그인 계정 등을 통하여 외부인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접근을 차단하여 온 점 ③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개발자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근무하면서 H 소스코드는 경쟁사 등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피해 회사가 H를 개발, 판매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며 이것이 외부에 유출되어 경쟁제품이 개발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존립을 어렵게 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따라서 피고인과 관계에서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이라고 별도로 표시되어 고지될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를 표시할 방법도 없다) ④ 피고인 A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서버의 패치파일공유폴더에 접근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고 또 U 은행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임치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접근제한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⑤ 피고인 A가 임치작업을 기화로 별도의 복제 CD를 만들고 인터넷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으며 퇴사 후 타인의 계정으로 침입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충분히 강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천적인 봉쇄를 기대할 수 없는 점 ⑥ H는 출시된 지 8년 이상 지났으나 지금까지 직원에 의해서건, 거래 상대방에 의해서건 영업비밀 침해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⑦ 피고인 B는 전문 개발자로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소스코드를 제공받아 취득할 당시 그 내용이 피해 회사의 주력제품인 H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자료이므로 이로써 경쟁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는 피해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외부로 반출되거나 경쟁사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스코드는 영업비밀로서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비밀관리의 상대성, 소스코드

 판례 29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사 건 명	가. 업무방해 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 사 자	피고인 • A • B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업체	특정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들
판결 결과 (형량)	파기환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94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주류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313조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주류도매점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 소속 직원들

2) 상고이유

피고인들 : 원심의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주요쟁점

-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



판단요지

영업비밀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I는 특정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들과 1년 단위로 일정 지역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주는 대신, 도매점들도 I의 제품만을 취급해왔고, I의 매출액 중 도매점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약 60% 정도인 점 ② I은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I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 등을 입력하였던 점 ③ 도매점장들이 위와 같이 입력한 이 사건 정보는 I가 소유·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었고, I도 영업계획 수립 및 도매점의 소매점별 판매목표 설정 및 재고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정보를 영업에 활용해왔는데, 도매점장들도 I가 이 사건 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6~7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고,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도매점장들과 I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는 점 ④ 도매점장들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각자의 아이디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었으나, 영업상 편의를 위해 자신의 도매점을 관리하는 I의 영업직원들에게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물품 주문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정보는 도매점장들이 I로부터 관할지역에 대한 주류판매권을 부여받아 영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로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동안 도매점주들과 I가 공동으로 활용해 왔고, I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도매점장들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매점장들은 I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I와 그 직원들이 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가 도매점장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

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등누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함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비밀관리성, 상당한 이유, 주류도매

II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1. 침해행위의 주체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사용행위
4. 영업비밀 보호기간



CHAPTER II.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I.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II.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II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IV.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침해행위의 주체

판례 30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당사자	피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타 업체에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누설한 자 을 : 갑에게 이직을 제안함과 동시에 갑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병에게 전달한 자 병 : 을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한 자
판결결과	피고인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영업비밀의 내용	피해 회사가 개발한 반송용 진공로봇 설계도면 파일 등

사건개요

갑은 2008년 5월경부터 평택시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반송용 진공로봇(반도체 생산을 위해 진공상태에서 유리기판을 옮기는 로봇) 제조,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을은 2009년 10월경 구미시에서 반도체, LCD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인 진공밸브 수리를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병은 1999년 6월경부터 202년 5월경까지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면서 진공용 반송로봇 수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9.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진공용 반송로봇을 수리하는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근무기간 중에 습득한 제반기술 및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토록 하여 갑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수령하였고, 취업규칙과 법령준수가이드 등의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2012년 6월경 평택시 O빌딩 옆 노상에서 주식회사 A를 운영하는 을로부터 이직 제안과 함께 피해 회사의 반송용 진공로봇 수리업무 관련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반송용 진공로봇의 설계도면이 들어 있는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을에게 전달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을은 2012. 6. 25.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자료를 병에게 보여주었고, 병으로부터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료를 그대로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저장한 다음 2012. 6. 29. 충북 진천군 진천C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병에게 위 외장하드를 전달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위 파일 등을 전달하였고, 병은 을로부터 위 파일 등을 취득하였다.

판단요지

1) 법원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자료들과 같은 특정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해당 사업부에 속한 직원들의 경우, 해당 사업부에 관한 자료들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

로운 접근이 가능하였고, 직급에 따라 접근권한에 차이가 있지 아니하였던 점.

- ② 직원들은 개인 USB 등 외장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고,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자료를 반출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 ③ 피해 회사는 회사 내무 자료들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한다는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자료들을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두지 않았고,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해당 자료에 대외비 내지 기밀자료라는 표시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결과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과 그렇지 않은 자료들이 혼재되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 ④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정도의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갑, 을, 병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2) 다만 법원은, 갑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① 피해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규 등에 영업비밀준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계약서에도 영업비밀준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 ② 피해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점.
- ③ 피해 회사가 정문, 사무실 출입구, 서버실 내 등 회사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두고 있었고, 일부 구역의 경우 출입통제를 하였던 점.
- ④ 피해 회사는 관리부, 반도체사업부, 용접부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있고, 이 사건 자료들이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P드라이브는 사업부별로 저장공간이 구별되어 있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락되었고,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의 접근이 곤란했던 점.

따라서 법원은 갑, 을, 병의 행위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갑의 행위만큼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법원은 피고인 갑의 업무상 배임의 점을 인정한 반면,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정보의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맞는 적절한 보관책임을 두어야 하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예컨대,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직원들에게 각자 그 접근권한에 따라 고유의 식별번호(ID)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이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로그(log) 기록을 남겨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도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안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그 담당자의 사전 허락에 의한 접근만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2) 실무상 회사 소속 임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타 업체나 경쟁회사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바,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은 회사의 영업비밀 유지·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부정취득행위

판례 31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영업비밀 누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37 판결
사건명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당사자	피고인(항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을 : 기 회사의 PVD 그룹 그룹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 을 : 기 회사의 PVD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 병 : N 회사의 대표이사 · 정 : N 회사 부사장 · 무 : 기 회사의 PVD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자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 LC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전문 회사
판결결과	원심판결 파기
영업비밀의 내용	결정질 태양전지 장비 자동화에 관한 기술자료

사건개요

‘갑’은 반도체 등 제조장비 생산업체인 기 회사(이하 ‘M회사’)에서 PVD 그룹 그룹장으로, ‘을’은 M회사 PVD팀 팀장으로, ‘무’는 M회사 PVD팀 대리로 각 근무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M회사에서 퇴사한 자들이다. ‘병’은 스퍼터 또는 세정기 제조과정에서 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N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정’은 N회사의 부사장이다.

M회사의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어 N회사를 통해서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갑'은 M회사의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고 '병'은 사무실 경비 등을 제공하고, '정, 을, 무'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갑'이 M회사 직원 4-5명을 확보하여 기술지원을, N회사는 중국에서 생산 장비 제작지원을, O그룹은 중국내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에 '갑'은 M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107개(이하 '이 사건 파일들')를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정 취득 하였고, '정'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들 중 96개를 교부받아 중국사업 연결책들에게 5회에 걸쳐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O그룹 측의 사업거절 및 '갑'과 '병'의 불화로 이 사건 파일들 중 105개 파일을 누설하려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갑'에 대해 징역 1년 6월, 몰수, '을, 정'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의 형을 각 선고하였으나 '갑, 을, 병, 무'가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갑)은 M회사의 OEM 장비 개발 및 중국현지화를 위하여 피고인(정)과 협력하였을 뿐 M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중국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정) 역시 자신의 사업 제인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파일들을 송부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갑)이 지득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하고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요지

1) 법원은, ① 외장하드에 파일이 저장된 날짜가 밝혀졌을 뿐 피고인이 M회사의 이 사건 파일들을 외장하드에 입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인은 임원으로 M회사 메일을 볼 수 있는 권한과 대량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암호화 되어 있는 M회사의 파일들을 해제하여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보안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 ④ 피고인이 허가 받지 않는 외장하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지만 당시 외장하드에 도면자료 등의 백업 자료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업무를 망라하는 내용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던 사실, ⑤ 피고인의 불법외장 하드가 발각된 후 외장하드 저장의 데이터를 회사 내부의 데이터 저장장치로 옮겨서 피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⑥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성에 따라 등

급을 부여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서야 1등급으로 분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 (a)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했을 당시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중국 사업에 관한 공모를 하지 않았을 때이고, (b)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취득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므로 피고인의 취득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이 금지한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또한 피고인(을, 무)은 피고인(갑)에게 일상적인 개발과 관련하여 M회사의 외주업체로부터 취득한 설계도면이나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점으로 보인다고 하며, (a)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파일들과 제공시기의 내용이 없고, (b) 그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중국 사업에 관한 공모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c) 나아가 피고인(을, 무)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피고인(갑)에게 파일들을 제공하였고 피고인(갑)이 M 회사의 임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파일들을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나아가 피고인(정)은 이 사건 파일들 중 자동화 장비에 대한 소개 정도에 불과한 2개의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는데, ① 위 파일들의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략적인 도면들이고 배치도 역시 개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M회사와 고객사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알 수 있거나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가사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파일들을 중국에 송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4) 피고인(정)이 중국 측에 보낸 2개의 파일이 개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자동화 장비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파일들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이를 송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파일들의 수취인들이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누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 2) 피고인들 사이에 M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 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는 공모가 순차적으로 있었고, 이에 따라 M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누설하였거나 누설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된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3. 부정사용행위

판례 32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 상황과 규모, 경제력에 부합하는 상당한 노력을 다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2019. 10. 30.자 2019카합10295 결정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 주식회사 A 채무자 • B
판결 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50,000,000원)
영업비밀의 내용	업소용 튀김기 'H'와 'I'에 대한 각 설계도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제10조 제1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냉열기기 제조업,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17. 퇴사하고, 그 후 C라는 명칭으로 주방기기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 퇴사시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채권자 설계도면을 불법으로 반출하여, 위 설계

도면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이에 기하여 채무자 실시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는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바, 채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판단요지

① 채권자 설계도면은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팀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팀 이외의 PC에는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직원의 컴퓨터도 비밀번호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온 점 ② 채권자는 개발 도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직원에게 업무상 비밀준수 약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한편, 비밀유지 및 관리 여부는 비밀관리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 바, 종전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 요구되었으나,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지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 정도가 완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채권자 설계도면을 비밀로 유지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 채권자의 설계도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를 정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

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한 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 채권자 설계도면과 채무자 설계도면은 제품명·모델명, 도면의 배열(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구성 및 치수선 배치 방식, 도면 제작일, 재질, 규격, 처리방식, 수량, NOTE 내용, 도면 검토자(L), 도면의 수정을 기록하는 날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는, 채무자 실시제품을 채권자 설계도면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채무자 설계도면은 채무자 실시제품에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자는 채무자 실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연구나 투자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 실시제품에 대한 설계도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영업팀에서 근무했을 뿐 튀김기 제작 경험은 없었고, 채무자 실시제품과 같은 영업용 튀김기를 새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채무자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2018. 7.경 업소용 튀김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곧바로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위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인 바, 채무자가 채권자 설계도면의 기술상 정보를 참고하지 아니하고는 위와 같은 짧은 기간 안에 채무자 실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자 설계도면을 취득하였고, 채무자 실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위 설계도면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연구·개발 과정에서 위 설계도면을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성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가 영업비밀인 채권자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채무자 실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합리적인 노력,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비밀 사용, 업소용 튀김기

 판례 3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되 그 금지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제14조의2 제5항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7가합556769 판결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당 사 자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주식회사 B, C, D, E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 인용 (50,000,000원)
영업비밀의 내용	복미향 콘덴싱 온수기 프로그램 및 회로사양 승인원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14조의2 제5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 원고 : 국내외에서 보일러·온수기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회사
- 피고 B사 : 보일러·온수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
- 피고 C : 원고의 온수기 및 보일러 개발팀장으로 근무한 후 2012. 5. 18. 퇴사하고 2013. 4.경부터 피고 B사의 보일러 및 온수기 개발팀장으로 근무
- 피고 D : 원고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다 2014. 1. 31. 원고를 퇴사한 후 2014. 2. 3.부터 피고 B사의 보일러 및 온수기의 기구설계 업무를 담당
- 피고 E : 피고 B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보일러 및 온수기 프로그램과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제어기술 개발을 담당

2)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피고 B사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관련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영업비밀파일들이 포함된 저장장치는 모두 피고들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여전히 이를 이용할 위험성이 있는 바, 피고들 전체에 대하여 각 파일들의 사용, 제3자에 제공 또는 공개금지 및 폐기를 구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약 7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들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위 자료들의 개발에 들인 비용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나아가 피고 B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보일러 등 제품개발에 이용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어려우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일부청구로서 우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
-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
-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판단요지

피고 C : 피고가 [별지 2] 순번 1, 2, 3 자료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관리 범위 내로 옮김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그 중 순번 1, 2 자료를 피고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공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미국 법인장을 역임했던 Q에게 요청하여 [별지 2] 순번 4 내지 7 자료들을 '취득'한 후 이를 피고 D, 피고 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여 '공개'한 행위는 Q가 전달하는 위 자료들에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전달받아 피고 E, 피고 D에게 재차 전달하여 공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피고 E : 피고 C로부터 [별지 2] 순번 1, 2 자료를 전달받은 것은 당시 피고 C가 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로부터 [별지 2] 순번 5, 6, 7 파일을 전달받은 것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

고 이를 취득한 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피고 D : 피고 C로부터 [별지 2] 순번 4 내지 7 자료들을 취득한 행위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

피고 B사 : 피고 C, 피고 D, 피고 E가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피고 B사가 피고 C, 피고 D를 영입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피고 B사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위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 B에 대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 영업비밀침해가 인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245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한적 금지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침해자들인 피고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영업비밀이 그 요건이 상실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을 확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별도로 금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별지 2] 기재 이 사건 각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사가 나머지 피고들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위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하였는지, 그러한 행위를 통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한 물건의 수량이나 그러한 물건에 대한 한계이익 또는 위 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이익액을 산정하기가 사안의 성질 상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0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금지청구, 폐기청구, 침해행위 금지기간, 콘덴싱 온수기

판례 34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비밀 이용한 제조, 판매, 수출 등 행위의 금지 및 피고 보관의 도안, 설명서의 폐기를 명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4582 판결
사건명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당사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광학렌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의 설립 이후, 단안형 야간투시경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
판결결과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각종 부품 및 완제품



사건개요

갑은 1979. 3.경 광학렌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4.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에 관한 업체자체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4. 12.경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물렌즈 조립체'와 '회로카드 조립체'에 대하여 각 특허를 취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2004. 12. 21. 단안형 야간투시경을 방산물자로 지정하면서 군수품 품명 및 모델번호 부여지침에 근거하여 위 장비를 'P'라고 명명하였다. 대한민국은 2004. 12. 31. 갑 제품의 규격을 국방규격으로 제정 하였는데, 갑이 특허를 취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부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른바 '성능형 규격'으로 제정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대체가 불가능한 이른바 '상세형 규격'으로 제정하였으며, 2005. 1. 20. 갑을 위 'P'에 대한 방위산업체로 지정하였다.

을은 2000. 5. 22. 경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0.경부터 단안형 야간투시경 제조·판매사업을 구상하고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2. 8. 20. 경 단안형 야간투시경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다. 그러던 중 을은 2012. 8. 경 갑의 퇴사 직원으로부터 갑 제품의 설계도면과 각종 부품 및 완제품을 교부받았고, 2012. 10. 경에는 위 퇴사 직원으로부터 을의 직원 컴퓨터에 갑 제품의 전체 설계도면 파일과 작업표준서 파일을 복사하여 넘겨받았다. 을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갑 제품의 설계도면과 작업표준서 등을 이용하여 을 제품을 제작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이 실시한 'P' 수리부속에 관한 두 차례의 입찰(2012. 8. 20.경 및 2013. 10.경)에서 갑 보다 낮은 가격으로 참가하여 낙찰 받았다. 이에 갑은 을이 갑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갑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피고의 항변

을은, ① 2012. 8. 경 대한민국과 체결한 수리부속 계약은 단순한 부품의 구매계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을이 위 각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납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갑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수리부속 계약과 관련한 갑의 손해액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②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외주가공비, 관세, 부가가치세 등 변동비용 뿐만 아니라 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고정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요지

1) 법원은, ① 피고가 원고 제품의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각종 부품 및 완제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대한민국으로부터 'P'에 대한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기에 이른 점, ② 피고가 원고의 퇴직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설계도면은 원고 제품에 대한 원천도면으로서, 제작 이후 여러 차례 위 도면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경 내용은 작업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거나 일부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 등으로서 기존의 도면에 어떠한 본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P'의 도면을 모두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데,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P'는 원고가 특허를 취득한 부품을 제외하고는 원고 제품의 규격이 그대로 '상세형 규격'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원고 제품과 동일하여야 하고 대체가 불가능하며, 원고 제품의 설계도면과 작업표준서 없이는 이를 제작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P'에 대한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후 대한민국이 소지하고 있는 도면을 열람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가 열람한 도면은 원고가 제작한 원천도

면에 변경내용이 반영된 도면이고, 이를 열람한 피고의 직원은 위 변경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점, ⑤ 피고 제품은 원고가 특허를 취득한 ‘대물렌즈 조립체’와 ‘회로카드 조립체’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피고는 원고 제품에 관한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작업표준서, 각종 부품 및 완제품을 이용하여 을 제품을 제작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품 제작 업체 등에게 도면 등을 교부하는 행위, 수요자인 대한민국에 제품 및 그 수리, 부속 또는 부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모두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2) 또한 법원은, 원고의 금지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완제품, 반제품, 및 부품을 판매, 수출, 양도의 청약 또는 양도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영업비밀 등을 폐기할 것을 명하였다.

3) 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경법 제 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을이 두 차례의 수리부속 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에게 양도한 물건의 수량에,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대한민국과 위 각 수리부속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갑의 손해액으로 보았다. 한편, 법원은 여기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피고의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갑이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공급대금 단가에서 갑이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인 재료비 합계액, 외주가공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인용하였고, 특히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부경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판례 35

영업비밀인 배합비율의 구성성분 중 일부를 대체가능한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거나 이 사건 배합비율에 다른 성분을 소량 첨가하였다고 하더라도(개량행위) 실질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2가합23005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당 사 자	원고 • A사 피고 • B, C, D사, C, E, F, G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의 배합비율

 사건개요

원고 : 반도체 금형 세정제 및 코팅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D사 : 피고 B, F, E가 설립한 회사로 2010. 8.경부터 고무형 반도체 금형 세정제와 코팅제를 제조, 판매

B : 원고회사에 근무하다가 2010. 12.말 퇴사한 뒤 피고 회사 설립

C : 원고회사에 근무하다가 2011. 10.말 퇴사한 뒤 피고회사에 근무

F, E :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술/투자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

G : 원고 제품을 독점 공급받아 국외에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독립하여 2012. 2.까지 원고 제품을 독점 공급받아 국외에 판매

원고의 주장 :

피고 C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배합비율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전달하였고, 피고 B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F와 피고회사측에 전달하였으며, 피고회사와 피고 F, E

는 피고 C, B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배합비율을 공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의 침해금지기간

판단요지

개량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의 사용행위는 원래의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정보가 원래의 영업비밀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원래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회사와 피고 F, E는 피고 C, B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배합비율을 공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그대로 사용하여 피고회사 주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 사건 배합비율의 구성성분 중 일부를 대체가능한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거나 이 사건 배합비율에 다른 성분을 소량 첨가하는 등 이 사건 배합비율을 기초로 피고회사 주요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실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배합비율과 피고회사 주요 제품의 배합비율이 서로 다른 부분도 그 차이가 극히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합비율 자체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다.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구성성분별 배합비율이 이 사건 배합비율과 유사하지 않을뿐더러 공개된 정보에 따라 가능한 조합의 수도 많아 공개특허공보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배합비율을 쉽게 개발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고무소재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초기 제품을 만드는 데만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원고가 설립된 2000. 11. 22. 이후에도 2005년경까지 매년 수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상당한 기간의 계속된 연구 및 현장 테스트를 거쳐 이 사건 배합비율을 개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배합비율을 개발한 시점에 비하여 피고회사가 배합비율을 연구·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의 관련 분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원고가 직원들에게 받은 비밀준수약정서에는 퇴직 후 5년 동안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피고 B, C가 원고를 퇴직한 시점부터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비교 -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를 퇴직한 2010. 12. 31.부터 5년이 되는 2015. 12. 30.까지,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를 퇴직한 2011. 10. 31.부터 5년이 되는 2016. 10. 30.까지, 피고 F, E, 피고회사에 대해서는 위 각 기간 중 종기가 더 빨리 도래하는 2015. 12. 30.까지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봄.

결국 판결 선고가 2016. 1. 19.이므로 피고 C에 대해서만 2016. 10. 30.까지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됨.



핵심어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4. 영업비밀 보호기간

판례 36

민사상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형사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초사항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4노1033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사자	피고인 • A
항소인	쌍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3. 13. 선고 2012고단4043
판결결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 검사의 항소는 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설계도면 / 경영정보(기초관리, 자재관리, 구성관리 등, 제품단가)

사건개요

피고인 : (주)의 연구개발팀 대리 및 연구개발팀장

공소사실 : 피고인은 근무 중 취득한 에어를 관련 설계도면을 USB에 저장하여 유출한 후 노트북 하드 디스크에 보관하다가,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회사 K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노트북에 보관하던 설계도면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도용함

원심 판결 : 피고인이 퇴사한 2005. 3.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09년 하반기 무렵에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부)무죄를 선고

항소 이유 : (검사)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에 관한 민사상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의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기간을 3년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

(피고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기초관리 등의 항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제

품 단가는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결여했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으며,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함

주요쟁점

- ◎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에서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
- ◎ 영업비밀의 개념, 범위, 보호기간이 민·형사 사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단요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을 위해 민·형사상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개념·범위 등에 관해서는 민사상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되 그 보호기간에 관해서만 형사상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따라서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

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그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때인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5. 3. 31. (주)를 퇴사하여 2009. 11.경 K를 설립하여 2010년 중반부터 에어틀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에어틀 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년 내외이고 시장에 판매되기까지는 약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에 근무할 무렵 에어틀 설계도면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관계로 이 부분 기술이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에어틀 설계도면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기간은 3년 미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사한 2005년 이후 3년이 경과한 2009년 하반기 무렵에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정당



핵심어

영업비밀, 보호 기간

 판례 37

영업비밀이 추후 특허로 등록된 경우 비공지성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해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558549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당 사 자	원고 • 회사 피고 • A사, B사 C, D, E, F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수소가 과포화상태로 용해된 수소수를 제조하는 방법

 사건개요

원고 : 환경대응형기기의 수입 및 구매,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 회사

피고 A사 : 폐기물처리용 탄화, 소각용융로 시스템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

피고 B사 : 하이 일렉트로닉 워터시스템 등에 관련된 생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

피고 C : 피고 A, B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 F : G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 A사로부터 고농도 수소 서버 키트를 구입하여 일본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는 계약(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상호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였고, 피고 A사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에게 위 장치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 A사는 위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여 2015. 2. 26.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원고 이외의 업체에도 위 장치와 동일한 키트 등을 제작,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수소가 과포화상태로 용해된 수소수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 한편 원고는 수소가 과포화상태로 용해된 수소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는 2016. 1. 8. 특허로 등록되었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과 영업비밀 보호기간

판단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일본 특허권자인바, 이 사건 일본 특허가 적법하게 등록된 이상, 그 등록 이전까지는 별지 1기재 각 사항 중 ‘수소가 포화상태로 용해된 수소수를 가압하고 순환시켜 수소버블을 수소나노버블로 만들어 수소가 과포화상태로 용해된 수소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별지 3 기재 사항(이 사건 일본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특징적 구성이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정보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다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거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로 인정된 별지 3 기재 사항은 원고의 이 사건 일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일본 특허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2016. 1. 8. 이후에는 그 정보가 공지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영업비밀로서는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별지 3 기재 사항에 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위 일본 특허 등록일 전인 2016. 1. 7.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 비고 - 영업비밀이 나중에 특허출원되어 등록된 경우, 그 등록 이전까지는 비공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영업비밀 보호기간도 특허 등록일 전날까지라고 봄. 손해배상 역시 침해한 날로부터 특허 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함.

핵심어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보호기간

II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 침해행위의 금지
2. 경업·전직 금지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4. 국제재판관할권
5. 구법 부정경쟁행위 (차)목과의 관계



CHAPTER II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 침해행위의 금지

가. 금지의 대상: 영업비밀의 특정

 판례 38

기술정보 중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4. 3. 18. 고지 2013카합721 결정
사건명	제조장비제작 및 판매금지가처분
당사자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리튬폴리머 2차 전지 장비 제조업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장비 제조업, 제2차 전지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리튬폴리머 2차 전지 장비 제조업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장비 제조업, 제2차 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의 경쟁 업체
판결결과	신청인의 신청 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소형 및 중대형 리튬폴리머 2차 전지 제조설비의 설계도면



사건개요

갑은 리튬폴리머 2차 전지 장비 제조업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장비 제조업, 제2차 전지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을은 공장자동화 시설 제작 및 설치업, 전기 자동제어장치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갑은 소형 및 중대형 2차 전지 패키징 및 디개싱 각 제조공정에 속하는 설비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L, S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다.

A는 2006. 9. 25. 갑 회사에 입사하여 2차 전지 제조설비 설계업무를 하다가 2011. 6. 30. 퇴사하였고, 2011. 9.경 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오고 있다. A는 갑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8. 12. 10. '영업비밀유지 및 경쟁사 취업제한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2011. 5. 27. 갑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A는 갑 회사를 퇴사하면서 소형 및 중대형 2차 전지 제조설비의 설계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형 하드를 반출하여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주거지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을 회사의 B도 업무용 노트북에 갑 회사의 소형 2차 전지 디개싱 제조공정 설비 중 가스추출 설비와 접기 설비의 설계도면을 저장하였다.

을 회사는 L사의 2차 전지 제조설비 제작 업체 선정과정에서 L로부터 갑 회사의 소형 2차 전지 제조설비 설계도면 중 일부를 받았고, G사의 수주를 받아 소형 2차 전지 제조설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G사의 설계도면을 받았다. A는 을 회사의 소형 2차 전지 제조설비인 가스추출 설비와 접기 설비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L사로부터 받은 갑 회사의 설계도면과 G사의 설계도면, 자기가 갑 회사 퇴사시 유출한 설계도면을 이용하였다.

이에 검사는 을 회사가 갑 회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피신청인들의 항변

갑 회사는 이 사건 신청의 범위를 소형·중대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 제조공정의 설비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갑 회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는 이미 L사를 통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유포되는 등 이 사건 기술정보는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정보에 불과하고, 특별히 비밀로 관리되어진 기술정보에 해당하지 않

으며, 이미 거래처에 아무런 제한 없이 배포가 완료되어 경제적 유용성 또한 없으므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요지

1)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에 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특정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갑 회사 이외의 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거나, 장차 피신청인 회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신청인은 이 사건 기술정보가 피신청인 주장하는 공지된 정보, G사가 판매하고 있는 설비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술정보 중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 없이 추상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 전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을 회사도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이 사건 기술정보가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갖는 자료를 담고 있다거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소형 2차 전지 제조관련 설비가 C사의 설비보다 속도 등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거나 신청인이 그 취득·개발을 위해 별도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기술정보는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다. 따라서 갑 회사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으로서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설계기술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술정보까지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2)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에 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권, 예방청구권 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설 및 참고사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이 사건에서는 기술정보 중 어떤 자료가 어떤 이유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조장비제작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나. 금지기간

판례 39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의 기산점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로 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피신청인들이 적법하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 24. 선고 2013카합1058 판결
사건명	영업비밀침해등금지가처분
당사자	<p>신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 외국 자동차 모델에 장착될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p>피신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 신청인 회사로부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모듈을 공급받아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회사 병 : 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정 : 신청인 회사의 내비게이션 관련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 무, 기 : 을 회사의 내비게이션 개발 담당자로 근무하는 자
판결결과	원고 신청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신청인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개발 관련 정보 등

사건개요

갑 회사는 2008. 6.경 외국 자동차 회사의 모델 차량에 장착될 아시아 내비게이션 제품의 개발업체로 선정되었고, 2008. 9. 8. 그 외국 자동차 회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실험과 협의를 거쳐 수정된 기술정보를 작성하는 등으로 2010. 3. 경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국 회사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 그 외국 회사의 특정 모델 차량에 장착되는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병은 갑 회사가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직접 판매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 회사와 별도로 동종의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당시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정을 포섭하여 갑 회사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기로 하고 무, 기가 을 회사의 내비게이션 개발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에 정은 2009. 3.경부터 2010. 3. 경까지 무, 기에게 갑 회사의 내비게이션 개발과 관련한 기술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하였고, 다른 피신청인(을, 병, 무, 기)은 위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을 회사의 자체 내비게이션을 개발 및 판매하였다.

한편 갑은 피신청인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신청인들에게 갑 회사의 기술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문제된 내비게이션의 생산,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개발하였는데, 갑 회사는 피신청인들이 새롭게 개발한 내비게이션도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내비게이션에 일부 기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갑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다시 영업비밀침해등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



판단요지

- 1)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2)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법원은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을 근로자의 퇴직한 시점뿐만 아니라 가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이를 기존 금지가처분 대상이 된 내비게이션 개발은 물론 그 이후에 추가로 개발한 내비게이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 모델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을 공정한 경쟁자보다 먼저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피신청인(정)이 퇴직한 시점 등을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게 되면 그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침해금지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을 정한다고 하였다.

- 3) 법원은 침해금지기간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특정 모델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을 공정한 경쟁자보다 먼저 생산하게 된 기간은 ① 피신청인들이 역설계 등 적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②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모델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합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ㄱ) 역설계를 통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ㄴ) 신청인이 2008. 9.경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하여 2010. 3.경 그 개발을 완료한 바 있고, ㄷ) 피신청인들은 영업비밀침해가 문제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데 약 100일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침해금지기간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일로부터 4개월간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은 근로자의 퇴직한 시점뿐만 아니라 가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으며, 2) 침해금지기간은 ① 피신청인들이 역설계 등 적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②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모델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합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실시한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판례 40

영업비밀 침해금지의 기산점을 판결확정일부터로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부산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3가합49520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당 사 자	원고 • A사 피고 • B사, C, D, E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LNG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를 만드는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 제조에 필요한 금형 관련 도면 등

 사건개요

원고 :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가스저장탱크를 만드는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 제작 회사

피고 B사 :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2012. 6.경 멤브레인 제작공장을 신축하고 이후 관련 영업을 시작

C :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퇴사 후 현재 B사의 대표이사

D, E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B사에 입사한 직원들(퇴직 시기 : 2009. 9.말)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생산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 금지, 피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기술정보, 도면의 폐기, 생산설비의 사용, 공개 등 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영업비밀의 사용, 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



판단요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다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24528 판결,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그에 관한 정보라면 이는 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이 사건에서 관련 특허들이 등록되었고, 해당 특허에 생산자동화설비의 기술정보 내용 일부가 공개되어 있어 생산자동화설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은 이미 공연히 알려진 것이어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자료에는 생산자동화설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배치, 치수 등 이 사건 기술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정보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생산자동화설비의 외관을 관찰, 측정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생산자동화설비에 관한 기술정보가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도면과 동일한 부품이 있는 경우 시뮬레이션이나 수정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덮어쓰기 형식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파일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역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고, 피고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도면이 이 사건 기술정보와 그 형상 및 주요 치수가 동일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회사가 템플레이트 스캐닝을 통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와 완전히 동일한 수치의 곡률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참고하여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기간은 피고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원고는 퇴직 직원들에 대한 경업 및 전직금지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드반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얻는 때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점, 피고 회사 역시 멤브레인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는 갖추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 및 공개 등 금지기간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비고 -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으로 판시(기산점을 왜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핵심어

영업비밀, 비공지성, 영업비밀의 사용, 침해금지기간

판례 41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그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자 2018라20045 결정
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당사자	채권자, 항고인 • A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 B, C, 주식회사 D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항고기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80132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품개발 자료, 제조 및 생산 관련 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 콜라겐 제조기술(바이오콜라겐 제조기술) 관련 자료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제10조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세포치료제 및 콜라겐을 이용한 재생의료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
 채무자 B : 채권자 회사의 재생의학 사업부의 중앙연구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각종 콜라겐 제품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9. 8. 31.경 퇴사한 사람
 채무자 C : 바이오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바이오 분야의 국내 영업 및 거래처·유관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31.경 퇴사한 사람
 채무자 D사 : 의료기기 제조, 세포치료제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채무자 C가 설립된 회사

2) 채권자 주장

채권자의 이 사건 기술파일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부정 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된 영업비밀은 채권자의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공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공법이 최적화되기 위한 방법, 즉 최적화 조건으로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부정사용하여 채무자 제품을 제조하고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는 바, 채권자는 이 사건 기술파일과 채무자 제품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해당 여부
- 영업비밀 부정사용 여부
-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판단요지

①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채권자만의 제조방법으로 보이는 이 사건 기술정보 및 그와 관련한 세부 실험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제품의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제조기록서 등 기술 및 품질에 관한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 실험과 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보유자인 채권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채권자는 이 사건 기술파일을 얻기 위해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인적·물적 시설과 비용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의 경쟁업체나 후발업체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파일의 경제적인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채권자는 보안규정 및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고, 임직원들에게 퇴직 후 2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퇴사하는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 채권자는 출입 통제를 위하여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하였고, 통제 장소에는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산상으로 출입 시간을 체크하였고, 임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채권자 그룹웨어에 접속할 때는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영업비밀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 채무자 제품의 제조 공정은 채권자 제품과 달리 콜라겐 정제 과정에서 접선유동여과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중성화 염침전 및 원심분리가 아닌 무균염침전 및 압착과정을 거치고 있어 채권자 제품의 제조 공정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그 제조 공정 중 (a) 산처리 과정에서 ‘인산’을 사용하고 (b) 염침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초기 5몰(Mole)을 적용한 후 0.7몰을 적용하며 (c) 망을 통하여 침전물을 회수하는 등 채권자의 특징적인 제조 기술을 일부 채용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 B는 채무자 D사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여 ‘공정관리 규정집’, ‘제품요약서’, ‘AH 시험방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문서들은 채권자의 것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AH 시험방법서’는 채권자의 ‘F 시험방법서’ 파일을 수정한 후 새 이름으로 저장함으로써 파일 속성의 ‘만든이’가 채권자의 대표이사 영문 성명인 ‘J’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F 시험방법서’ 중 ‘하이드록시프롤린 분석’에 관한 자료(시약의 종류, 구입처, 보관조건 등)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들은 채무자 B에 의하여 유출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 24528 판결 등 참조).

① 채권자가 2003. 10.경부터 채무자 B가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2009. 8. 31.경까지 채권자 제품을 개발하였다면 이 사건 기술파일에 담긴 정보가 축적된 기간은 6년을 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② 채무자 B는 채권자에서 채권자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콜라겐 제품에 관한 제조 기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비해 인적·물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자 제품을 개발한 기간 정도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참조하지 않고도 충분히 채무자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③ 채권자 특허의 특허명세서에는 위 (b), (c)를 제외한 (a), (d), (e), (f), (g)와 같은 일련의 기술정보가 모두 개시되어 있고, 위 (b), (c)는 이미 공개된 한국특허번호 AM(AN 출원), 유럽특허번호 EP AO(AP 공개), 미국특허번호 US AQ(AR 등록)의 특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바, 이 사건 기술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공지된 상태에서 선행 특허명세서에 이미 개시된 위 (b), (c)를 부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이므로, 채권자 특허가 모두 등록공고된 시점인 2015. 6. 26.경 이후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의 대부분은 영업 비밀로서의 보호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술파일 중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들, 특히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된 기술심사문서(시험 검사자료, 독성 시험, 안정성 시험, 성능 시험 등) 및 품질심사문서(품질경영계획서, 품질경영매뉴얼, 제

조기록서, 시험기록서 등) 등은 2009. 8.경까지의 자료로서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현재에는 그 활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점

⑤ 이 사건 기술파일이 유출된 이후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16. 8.경까지 채무자 D사를 제외하고도 약 9개 회사가 채권자 제품과 같은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현재 다수의 회사가 아텔로콜라겐 및 이를 이용한 콜라겐 제품의 제조에 성공하고 있는 실정인 바, 위 회사별 제품의 품질 차이나 시장에서의 평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보면, 경쟁자들이 콜라겐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9년을 넘는 기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채권자는 채무자 B, C에 대하여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각 2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을 위 전직금지기간을 훨씬 넘어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 상태가 초래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파일은 채무자 B가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2009. 8. 31.경부터 9년이 지난 현재는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기술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만족적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영업비밀 부정사용, 영업비밀 보호기간, 콜라겐

 판례 42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은 정하지 않은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4나2011824
사 건 명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등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B, C, D, E, F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 인용 (50,000,000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18. 선고 2012가합1413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RIA 솔루션과 관련한 데이터 구조, 서버 소스코드, 레포트 툴 소스코드, 레포트 컴포넌트 소스코드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및 마목,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 2 제5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기업의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방식에 기반한 저작도구[솔루션(solution)] 프로그램을 주로 판매

피고 B사 :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C : 원고의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30. 퇴사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 설립

피고 D :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31.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

피고 E : 원고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9. 11. 17.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
 피고 F : 원고의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

2) 원고 주장

피고 퇴사자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피고 B사는 이와 같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O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금지 및 폐기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이 사건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정보들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들의 사용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 퇴사자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제품 판매금지의 각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판단요지

원고는 문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사내에서 시행하였고, 문서의 종류를 기밀문서, 중요문서, 일반문서로 나누어 관리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한 점, 피고 퇴사자들은 퇴사 직전 원고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고 제품의 제조기술, 설계, 기획개발, 실험데이터들에 관한 정보 등 원고의 영업이나 기술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2009년 중소기업 보안시스템구축지원 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사업에의 참여를 신청한 당시 원고는 보안규정이나 보안담당자는 두고 있지 않았으나, 회사의 주요 정보는 직원들이 볼 수 없었으며, 임직원의 업무에 기밀사항의 보호 등 보안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편 문서나 파일 등의 정보자산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분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보안감사도 정기적이지는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지원사업이 시정조치를 거쳐 완료됨에 따라 원고는 각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소스코드나 기타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여 서버 내에서 작업을 행하도록 하고, 특히 소스코드의 경우 수정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SVN 서버를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만 해당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자료의 외부 반출시에는 본부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파일공

유 및 보안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들은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문에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비밀 요건의 상실이 확실시되는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2009. 3. 16.자 2008마1087결정,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 판결 등 참조), 금지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사자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영업비밀은 현재도 여전히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피고 퇴사자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7년~8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제품 판매금지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은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비밀 요건의 상실이 확실시 된다는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별도로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비밀관리성, 침해행위 금지기간, RIA 솔루션

 판례 43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산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부산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7나54442 판결
사 건 명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C, 주식회사 D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 인용 (100,000,000원)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4가합19086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기술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4조의2 제1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자동차용 E 코팅제를 포함한 화학제품 제조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B, 피고 C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퇴사시기 : 2008. 9. 30.)

피고 D사 : 피고 B와 피고 C가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여 기존에 원고로부터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납품받아 오던 F 주식회사에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납품하는 회사

2) 원고 주장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인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기술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피고 D사를 설립하고 원고의 제품과

동일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설령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술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무단 반출한 원고의 기술을 활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손해액의 한도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기술자료를 도용한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를 생산하여 F에 판매하기 이전까지 원고가 F에 위 제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이 F에 공급한 제품의 수량만큼 위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F에 동일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원고 제품의 판매수량이 그만큼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는 바,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피고 회사가 F에 납품한 제품의 총량에 원고의 납품단가 및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508,382,809원이다.

☞ 제1심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로 101,000,000원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508,382,809원으로 청구를 확장함

주요쟁점

- ◎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기간
- ◎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판단요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등 참조)는 법리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침해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제조기술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로서, 원고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든 것이고, 그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원고를 포함하여 3개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점 ② 피고 B와 피고 C 스스로도 자신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레시피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위 레시피를 분석하여 시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제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기술정보에 편승하였음을 시인하였던 점 ③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의 제조기술은 역설계의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인적·물적 시설을 고려할 때 원고의 기존 레시피 없이 독자적으로 역설계에 의하여 동종 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상당한 장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비록 피고 B와 피고 C가 2004. 8. 16.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서약서'에는 위 피고들의 전업금지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피고들이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고를 설립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정보가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를 반드시 퇴직 종업원의 전업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술정보에 대한 피고들의 침해금지기간은 피고 B와 피고 C가 퇴직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가 2012. 10. 17.경 설립된 지 5년 가량이 지난 2017. 10.말 무렵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고,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부정취득한 원고의 기술자료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침해행위 금지기간 동안 피고들이 F에 동종제품을 납품하면서 얻은 최소 순이익의 30% 가량(F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의 3% 가량)에 해당하는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영업상 주요 자산, 침해행위 금지기간, 자동차용 웨더 스트립 코팅제

2. 경업·전직금지

가. 경업·전직금지의무의 발생

판례 44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전직금지기간을 일부 제한하여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유지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108097 판결
사 건 명	전직금지 등 청구의 소
당 사 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해충방제에 관한 연구 용역업무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 갑 회사에서 방제기술직인 서비스컨설턴트로 근무하였던 자 · 병 : 갑 회사에서 전문영업직(방제서비스디자이너)로 근무하였던 자
판 결 결 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충방제기술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

사건개요

갑 회사는 쥐 및 해충방제에 관한 연구 용역업무, 시스템방제 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을’은 2009. 3.경 갑 회사에 입사하여 방제기술직인 서비스컨설턴트로 근무하다 2013. 9.경 퇴사하였고, 같은 해 10. 갑 회사와 같은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병’ 역시 갑 회사에 입사하여 전문영업직인 방제서비스 디자이너로 약 3년간 근무하다 비슷한 시기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을’과 ‘병’은 재직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 유출 행위 및 동종 혹은 유사업계에 재취업하거나 창업, 컨설팅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5억 원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① ‘영업비밀보호 각서’, ② ‘전직금지 보충각서’, ③ ‘영업비밀 보유확인서’, ④ ‘영업비밀보호장려금 지급동의서’(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를 갑 회사에 각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을’과 ‘병’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직금지약정에 따르면, 영업비밀별로 1년에서 5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갑 회사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5년간 소외회사를 포함하여 해충방제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 각 회사를 위해 해충방제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예도, ‘을’과 ‘병’이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전직금지 의무의 이행과 5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전직금지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을’과 ‘병’이 갑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서명하여야 하는 즉,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공박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민법 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단요지

- 1) 법원은, ① 원고 회사가 해충방제 분야의 국내 최대 기업이며, 소외 회사 역시 세계적인 해충방제회사로 국내에서 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② 원고 회사가 자체 개발한 해충방제기술들에 관하여 각각의 영업비밀 코드를 부여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점, ③ 소외회사가 국내에서 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여전히 국내 최대의 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④ 해충방제사업의 특수성과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현장경험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해충방제 서비스에 원고 회사 고유의 정보 또는 노하우가 담겨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서에서 영업비밀로 정한 사항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또한, 그 외 경업금지의 유효성 판단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퇴직 전 지위, 전직 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에 대해서 ⑤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영업비밀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하는 형태로 지급한 점, ⑥ 피고들이 서비스 컨설턴트와 방제서비스 디자이너

로 각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 보유의 정보 내지는 노하우를 습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⑦ 피고들의 퇴사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⑧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들의 직책, 근무 경력,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업무과정에서 접근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기술의 수준 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 회사가 지급한 영업비밀보호장려금 등의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영업비밀의 보호 대가로 충분한 액수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보면 5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퇴사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한 범위 내에서 전직금지기간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 3)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피고들이 전직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 회사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각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 전직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과다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직금지로 인하여 받게 될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즉,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전직 제한의 기간은 과도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하였는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효성 판단에 따라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의 전직금지는 제한 될 수 있다. 비록 근로자가 장기간의 전직금지 기간에 동의하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적으로 유효 내지는 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 2) 사용자인 원고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에 동의하지 않을 수 밖에 없거나 혹은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는 업무를 다루다가 퇴사한 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로써 원고 회사가 다년간의 노력으로

보유하게 된 다수의 해충방제기술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의 유출이 상당히 의심 되는 상황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 3) 이 사건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5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일부 제한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피고들 간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판례 45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 적용되는 법리가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559836 판결
사 건 명	경업금지 등 청구
당 사 자	원고 • A 피고 • B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청구기각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C'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을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단기간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고 명품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 : 원고와 친구 사이

2)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중고 명품을 조달해오면 원고가 섭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피고가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에서 판매에 소요된 경비, 수수료 및 순수익의 3.3%를 공제한 정산금의 50%를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1조(경업금지)에 따라 2020. 2. 15.까지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중고 명품 판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2. 21. I를 설립하여 L 주식회사와 중고 명품 거래를 함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고, 2017. 12. 11. I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를 사

임한 이후에도 여자친구를 통하여 여전히 중고 명품 거래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경업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192,205,342원(=2016년 원고 매출액의 10%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주요쟁점

- ◎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판단요지

위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에 적용되는 법리이기는 하나,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사인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온라인 카페나 쇼핑몰, 오프라인 중고 명품 매장을 통하여 중고 명품을 공수하고, 온라인 명품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공개 포털에 공개된 진품 감정방법으로 중고 명품의 진품 여부를 판정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일반인에게 알려진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기술이나 정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기술이나 노하우,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실상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섭외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고 명품을 판매하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가 공급한 중고 명품의 판매대금에서 50%의 수익을 배분받는 것인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중고 명품 공급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그 판매 또한 피고가 직접 하고 있으며, 중고 명품 공급상 지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기술이나 정보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피고의 지위는 매우 열세한 점, 이 사건 계약기간은 1년임에 반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기간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3년으로 지나치게 장기이고, 경업금지의무 부담에 따른 별도의 보상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사건 계약은 약 3개월 정도만 유지되었다)이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공급한 중고 명품의 상표나 품목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중고 명품 판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주장하는 대형 유통업

체의 범위와 상표, 중고 상품 품목이 매우 광범위하여, 피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에 비하여 열세적 지위에 있는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고는 명품 감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고정적인 매장 임대료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고명품을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단기간 입점하여 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중고 명품업계에서 최초로 고안한 점 등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분안, 손해배상, 경업금지, 간접강제, 중고 명품

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례 46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여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7. 고지 2014카합311 결정
사건명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당사자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전력용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피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 갑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에서 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자
판결결과	신청인 신청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모델의 광다중화장치와 구별되는 새로운 제품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양 및 규격 등을 지정한 제품

사건개요

을은 1988년 갑 회사에 입사하여 2001. 9. 1.부터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에서 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2. 31. 상무로 퇴직하였다. 을은 퇴직하면서 갑의 비밀정보를 퇴직 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 내·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의 갑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적인 창업을 하거나 재직 중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동의서를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을은 퇴직 후 갑과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를 위촉기간으로 한 자문역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을이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기업에 취업하거나 갑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운영할 경우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위촉계약은 자동 해지되도록 약정하였다.

을은 2014. 3.경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고압차단기 및 전력용 변압기를 제조하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한편 을은 갑 회사에 재직하던 중 갑 회사의 노트북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퇴직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14. 9. 22.에야 이를 반환하였다.

이에 갑은 을이 갑의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북을 갑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경쟁업체인 을 회사로 전직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을의 전직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의 항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단요지

1) 법원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① 신청인 회사는 전력용 변압기, 고압차단기의 해외 입찰, 판매 등 업무를 오랫동안 영위하면서 그에 관한 고도의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까지 이르지 않는더라도 단기간 내에 다른 회사가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신청인에게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
-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10년 이상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부터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갑 회사의 해외영업 영역에 관하여 포괄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신청인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전직금지대상인 지역을 한정하거나 직종을 더 제한할 경우 신청인이 갖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전직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

기는 어렵다.

- ④ 피신청인은 퇴직 직후 신청인과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위 위촉계약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유사하게 '피신청인은 위촉 계약기간 중 피신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촉계약상의 보수는 경업금지약정과도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위와 같이 법원은 신청인의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하되, 피신청인의 전직금지기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하여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고, 장기간 신청인 회사에 근무해 온 피신청인으로서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회사로의 전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3년의 경업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이 전직금지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 2)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갑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을이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뒤까지 C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을은 C에서도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갑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3)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여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례 47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특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5. 11. 선고 2015카합10009 판결
사 건 명	전직금지 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자동차 개발 및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사업 수주를 준비 중인 회사 채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 갑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온 자
판 결 결 과	채권자 신청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개발 관련 정보 등

 사건개요

갑 회사는 말레이시아 국영자동차 회사인 G 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개발, 설계 및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을은 2013. 7. 1. 갑 회사로 합병된 말레이시아 법인의 법인장으로 발령받은 후 2014. 12. 19.경 까지 갑 회사의 말레이시아 법인장으로 갑 회사의 말레이시아 현지 자동차 사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병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갑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로서 자동차 부품 등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을은 2013. 6. 27. 갑 회사와 사이에 재직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 유출 행위 및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혹은 유사한 형태의 제3자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하였다.

을은 2014. 12. 12. 병 회사 대표이사과 함께 G 회사와의 회의에 참석하였고 병 회사로부터 특정 차량 개발 제안을 송부받아 G 회사에 이를 송부하기도 하였으며, 을과 함께 갑 회사에 근무했던 정, 무는 갑 회사에서 퇴사 후 병 회사에 입사하였다.

갑 회사는 G 회사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았는데 을은 2014. 12. 19.을 퇴직일자로 하여 채권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갑 회사는 2015. 1. 16. 을에 대해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5. 1. 26.자로 을을 퇴사처리하였다.

갑 회사는, 을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갑 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갑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병 회사에 취업하려 하고 있으므로, 을이 병 회사에 근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채무자의 항변

을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단요지

1) 법원은,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a) 갑 회사는 장기간에 걸친 G 회사 대상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 수주 준비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영업비밀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b) 이 사건 영업비밀이 경쟁 회사에 제공될 경우 경쟁회사는 G 회사를 상대로 하는 영업전략 수립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점, c) 이 사건 영업비밀이 G 회사에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가 대중에 공지되어 있다거나 전기자동차 개발과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여 보호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회사는 전기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②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G 회사를 직접 상대하는 채권자 회사 마레이시아 법인에서 관리책임자인 법인장으로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해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전기자동차 개발 정보, 수주 전략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 ③ 전직 제한 지역 및 대상 직종 관련해서는 비록 대상 지역, 직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분야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경우 그 특정

된 부분을 회피하는 시도 등이 수월하게 가능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④ 채무자의 퇴직경위 및 공공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비록 을이 징계하고 형식으로 퇴사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 및 검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퇴사처리된 과정에 채권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⑤ 대가 제공의 유무와 관련하여 비록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를 특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 2) 그러나 전직금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자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을 무조건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례 48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1년 6개월로 제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2016. 3. 28.자 2016카합10026 결정
사 건 명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 채권자 회사 채무자 • 채무자 회사, 채무자2, 채무자3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자동차 열관리시스템의 부품으로 전자식 멀티밸브 시스템에 관한 기술 등

사건개요

채권자 :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전자식 멀티밸브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채무자 회사 : 채권자의 경쟁업체

채무자 2, 3 :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채무자 회사에 입사한 직원들

* 채무자들의 각 퇴사 시기는 2015. 4. 18(채무자2), 2015. 2. 17(채무자3)

채권자의 주장 :

채무자 2, 3은 주위적으로 채무자 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비적으로 채무자 회사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연구, 개발, 생산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채무자 회사 기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2, 3을 채용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2, 3을 영업비밀에 관한 연구, 개발,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 2, 3으로부터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채무자들에게 대한 간접강제 포함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의 제한

판단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전직금지기간의 범위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과 합리적인 전직금지기간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등), 다른 제반사정이 우월하다면 전직금지의 직접적인 대가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 16605 판결 등 참조).

채무자들이 작성한 ‘영업비밀 및 영업정보 유지 계약서’에는 전직금지기간이 ‘최소한 1년간’으로 되어 있고 그 중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전직금지기간은 채무자 2, 3이 지득한 정보를 얻게 되는 데에 소요되거나 채무자 회사에서 다시 이러한 정보를 지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채무자 2, 3은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자 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채무자 2, 3이 ‘영업비밀 및 영업정보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채무자 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며, 위 채무자들이 채무자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사 등에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제공하거나 공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2, 3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호약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경쟁업체에서 이러한 영업비밀을 지득한 채무자 2, 3을 스카우트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채권자 정보의 취득, 사용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의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유한 고유의 분석기법이나 기술에 관한 성공·실패의 데이터 정보 및 관련 영업상 정보는 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할지라도 아직 특정한 독자적 기술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점, 이들 영업비밀은 채권자가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된 데에 소요되거나 채무자 회사 등에서 다시 이러한 정보를 지득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 정도만 침해금지를 명하여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명하는 기간은 채무자들의 전직금지 의무가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정함이 상당하다.

핵심어

전직금지,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판례 49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의 특징,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1년 2개월로 제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2016카합10144 결정
사 건 명	경업금지가처분
당 사 자	원고 • A사 피고 • B, C, 주식회사 D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무동력 트레이드밀 제품의 핵심 부품에 관한 기술정보, 제조 및 판매사업 관련 파트너와의 제휴계약의 구체적 내용, 로열티 지급내역, 제품 공급지역 기타 영업상 정보

 사건개요

채권자 : 스포츠기기 제조, 도소매 및 무역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무동력 트레이드밀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채무자 B, C :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채무자 회사에 입사한 직원들

* 채무자들의 각 퇴사 시기는 2015. 11. 10(채무자 B), 2016. 4. 30(채무자 C)

채무자 주식회사 D : 웨이트기구 제조 및 판매업, 웨이트기구 가공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무동력 트레이드밀을 개발하고 있는 채권자의 경쟁업체

채권자의 주장 :

채무자 B, C는 각 퇴사일로부터 2년까지 채권자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창업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D 기타 채권자와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와 동업, 협업, 자문, 취업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하여 채권자와 경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B, C로부터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회사의 가이드 벨트 제품 및 무동력 트레드밀 제품의 기존 완성품 및 반제품, 금형 등 제조 설비에 대하여 그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고, 채무자 회사의 무동력 트레드밀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조·판매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포함).

위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 포함



주요쟁점

-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 ◎ 영업비밀의 특정, 비공지성 인정 여부
- ◎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의 제한



판단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전직금지기간의 범위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과 합리적인 전직금지기간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등), 다른 제반사정이 우월하다면 전직금지의 직접적인 대가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 6223 판결 등 참조). 다만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역설계가 허용되고 역설계에 의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면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거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다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개량기술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영업상 정보는 E, G와의 독점적인 납품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채권자의 영업정보로서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 기타 다른 업체가 위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정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머지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전직금지기간은 채무자 B가 지득한 정보를 얻게 된 데에 소요되거나 채무자 회사에서 다시 이러한 정보를 지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채무자 B가 채권자를 퇴사한 후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채권자는 2013. 말경부터 2015. 2.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제품을 연구개발한 사실, 채무자 B는 채권자에서 퇴사한 후 약 6개월 동안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무동력 곡선형 트레드밀에 관한 개발·영업 업무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채무자 B는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날인 2015. 11. 10.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2017. 1. 9까지 채무자 회사 기타 채권자와 동종영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채무자 C가 지득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당한 보호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게다가 채무자 C는 채권자의 일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 B와 달리 채무자 C에게는 제품판매수수료 등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다.

채무자 B가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채무자 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며, 설령 채무자 B가 현재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 등에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제공하거나 공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B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호약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경쟁업체에서 이러한 영업비밀을 지득한 채무자 B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의 취득, 사용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의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정보는 제외).

채권자가 보유한 이 사건 정보가 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할지라도, 이들 영업비밀은 채권자가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된 데에 소요되거나 채무자 회사 등에서 다시 이러한 정보를 지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정도만 침해금지를 명하여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B,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명하는 기간은 채무자 B의 전직금지 의무가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2017. 1. 9.로 정함이 상당하다(전직금지 기간과 동일).

핵심어

전직금지,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특징, 비공지성,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판례 50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직금지명령을 모두 부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자 2018카합5004 결정
사 건 명	전직금지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 주식회사 A 채무자 • B
판결 결과 (담보제공액)	신청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개발·제조·판매하는 기계 제품들에 대한 기술, 정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타발기, 합지기, 인쇄기 등의 기계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에 과장 직책으로 사후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11. 1. 퇴사한 후 2017. 12. 11. 채권자와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C(‘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2) 채권자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를 퇴사하고 곧바로 경쟁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였고,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 바,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금지청구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직금지명령 인정여부



판단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① 채권자가 보호가치 있는 기술이나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채무자가 재직 중 신규 개발 제품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정보와 기술은 독립성과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채무자가 근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여 채무자 개인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및 경력에 해당할 여지가 더 커 보이는 점 ②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전직금지약정 체결에 대하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경제적 이익 이외에 별도의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은 없고,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자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채무자의 전직이 배신적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및 소명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장이전의 자유)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주로 사용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인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체결에 관하여 근로자인 채무자의 자발적이고도 진정한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엮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 금지약정은 그로써 보호되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하여 근로자인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전직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전직금지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한다.

① 채권자의 주장 자체로도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의 기술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염려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쟁업체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일반적 지식 활용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의 직업경력상 채무자는 인쇄기 관련 사후서비스 업무에 취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분야에는 채권자 회사와 이 사건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이므로 전직 자체를 금지할 경우 채무자의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③ 채권자 회사가 이 사건 회사보다 기술 수준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권자도 이 점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전직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어 채권자의 시장점유율에 의미 있는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채무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써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만큼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영업상 주요 자산,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

판례 5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전직금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2018. 7. 3.자 2018카합10106 결정
사 건 명	전직금지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 A 주식회사 채무자 • B
판결 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D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 회사에서 플렉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D 기판 개발 업무를 포함한 E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3. 16.부터 OLED F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8. 15.자로 퇴사한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였고,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 바,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판단요지

채권자는 2017년 4분기 기준으로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러한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었을 경우 경쟁업체는 채권자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어 채권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중 채권자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플렉서블 OLED의 경우, 유기물 형광체의 산화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밀폐도 및 얇은 두께를 유지하는 무색·투명한 D 기판을 낮은 불량률로 양산하는 기술이 핵심기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D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채권자의 E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채권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는 2010. 5.경부터 2015. 9.경까지 D 기판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자 회사의 H 개발그룹에 소속되어 CL3(Senior Engineer) 지위에서 ① D 기판 두께 저감공정개발 ② D Curing(D 분말을 용매에 용해시켜 용액상태로 제조한 후 이를 유리 기판 위에 얇은 두께로 도포하여 수시간 동안 가열함으로써 D 막을 형성하는 공정) 시간 단축공정개발 ③ 고내열 D 공정 개발 ④ D 공정 셋업 및 표준화 진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 바, 채무자가 D 기판과 관련된 기술 개발팀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D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는 2017. 8. 21.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75,280,000원(채무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전직금지의무는 손해배상이나 위반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퇴직 전 약 5년 동안 D 기판 양산기술의 개발업무를 직접 경험한 근로자로서 채권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D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직금지의무의 대가로 제공한 점,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남

은 전직금지기간은 1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한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운 바,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퇴직일인 2017. 8. 15.부터 2년간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전직금지약정, 보호가치 있는 이익, 전직금지대가, 전직금지기간, OLED 디스플레이

 판례 52

전직금지약정상 전직이 금지되는 지역적 제한, 전직금지의무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없었음에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대전고등법원 2018. 7. 19.자 2018라126 결정
사 건 명	전직금지 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항고인 • 주식회사 엘지화학 채무자, 상대방 • B, C, D, E, F
판결 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500,000,000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2. 13.자 2017카합50474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	고용량 및 급속 충전 음극재, 시스템 디자인 컨셉, AMP 모듈의 설계 및 개선 방안, AMP 내 CMC를 최적화하여 배치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주요 사업영역으로 기초 소재 사업, 전지 사업, 정보전자소재 사업, 재료 사업, 생명과학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지 사업의 경우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 산업 현장 및 가정 등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해 주는 ESS전지, 자동차전지 사업을 영위

채무자 B, C, D, E, F : 채권자의 자동차 전지개발 사업부문 및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21.부터 2017. 8. 26. 사이에 퇴사한 후 SK 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경쟁회사인 SK 이노베이션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경쟁업체로 유출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판단요지

채권자 회사의 자동차전지 사업 관련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와 점유율, 채권자 회사가 연구개발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점, 채권자 회사는 원재료인 셀 공급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배터리 팩 분야에 대하여도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하여 SK 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자동차전지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 SK 이노베이션은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 연구개발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 채권자 회사보다 자동차전지 사업에 있어서 후발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서야 자동차전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 회사는 자동차전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전직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대상 직종을 '경쟁업종'으로만 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전지 시장의 특성이나 지역적 범위, 소수의 기업만이 자동차전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이 지득한 영업비밀 등은 자동차전지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규정이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들은 직접적·명시적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채권자 회사로부터 채무자 B, C, D, F는 OSI(On-Spot Incentive)라는 인센티브를, 채무자들은 모두 상당액의 성과급을 각 지급받았고, 채무자 C, D는 채권자 회사의 지원하에 ISO26262 전문 업체인 독일 TUV사에서 Functional Safety Assessor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 Functional Safety 매니저 인증을 취득한 사정들과 지속적인 고용의 보장, 승진·승급, 특별한 지식 및 기술의 교육·훈련 등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과 포괄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사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채무자들의 퇴직 경위에 비추어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지급이 없다는 점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사정은 아니다.

채무자들이 퇴직 시 수차례의 면담과정에서 채권자 회사에게 밝힌 퇴직사유를 보면, 채무자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의 퇴직에 특별히 채권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그 전직금지의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들에 대한 전직금지의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 위 기간에 한정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전직금지의무는 손해배상이나 위반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 회사에게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불가능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서 자동차전지의 연구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지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지득한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향후 출시될 제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이 있는 시점까지는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채권자 회사의 자동차전지 사업 관련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와 점유율, 연구개발비용의 투자 정도, 기술적인 강점 등과 이에 대비되는 SK 이노베이션의 자동차전지 사업 관련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의 지위, 연구개발비용의 액수, 기술력의 정도,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채무자들에게 남은 전직금지기간은 1년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전직금지약정,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 전직금지의 지역적 제한, 전직금지대가, 자동차 전지

 판례 53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은 인용하였으나, 경업금지 가처분은 기각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6.자 2018카합50314 결정
사건명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당사자	채권자 • 주식회사 A 채무자 • B
판결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내부자료, 개발계획, 비용 계산방법 및 분석자료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의 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2.경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경쟁업체인 C의 'Vice President' 직위에 있고, 2018. 8. 1.부터는 경쟁업체 H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약정,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충실의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을 갖고, 한편 부

경쟁방지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서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권을 갖는데, 채무자가 위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C 등 회사들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C 등 회사들에게 채권자의 영업비밀인 각 정보를 제공하면서 채권자의 영업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근로계약에 따른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판단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채무자의 성명이 계약내용 등과 함께 부동산자로 인쇄되어 있을 뿐이다),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그 계약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의 소명자료가 될 수 없고, 채무자가 그 무렵부터 채권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액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약정까지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구두에 의한 약정 체결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개정전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를 완화한 것인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되, 비밀 관리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요건이 완화된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작성자 및 보유자인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

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②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할 경우 거래제시, 가격협상, 특정업체를 상대로 한 마케팅이나 거래조건 협상, 고객의 수요 내지 성향 파악 등에 관하여 경쟁업체에 비해 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채권자의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한다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임과 동시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③ 채권자의 조직은 사업부, 개발팀, 디자인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채무자는 사업부의 차상위 직책인 본부장(채무자의 상급자는 대표이사 1명 뿐이다)인데, 이 사건 정보에 채권자의 직원들 중 사업부의 4명(대표이사, 본부장, 실장, 차장)만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고, 사업부의 팀장이나 개발팀, 디자인팀 소속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었고, 채권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업부의 실장, 차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채권자는 이 사건 정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가 현재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C, H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C, D, E, F, G의 임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정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콘텐츠개발에 관한 제안서, 계약서, 기획안, 견적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채권자와 C 등 회사들의 영업 내용 및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업금지에 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가상현실 콘텐츠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C 등 회사들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침해금지, 경업금지, 가상현실 콘텐츠

판례 54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을 판단하여 전직금지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7.자 2018카합50378 결정
사 건 명	전직금지 등 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 A 주식회사 채무자 • B
판결 결과 (담보제공액)	신청기각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채무자 :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SRAM1팀, Flash PA팀, Flash TD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7. Flash PA팀 연구임원(상무)이 되었고, 이후 협력사경영자문단 자문역으로 위촉되었다가, 퇴사한 후 반도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2년 동안 채권자의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퇴직일인 2017. 4. 5.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자의 주요 경쟁업체에 해당하는 C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점

판단요지

채권자는 '채무자는 2014. 12. 채권자의 임원 직위에서 물러나 자문역의 지위로 보직 및 부서가 변경된 것일 뿐 퇴직한 것이 아니고 2017. 4. 5. 비로소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채무자의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은 2017. 4. 5.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2017. 4. 5. 비로소 퇴직하여 채무자의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이 2017. 4. 5.임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의무의 기산일은 2014. 12. 3.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채무자의 전직금지기간은 2014. 12.경부터 2년이 경과한 2016. 12.경 이미 만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가 2019. 4. 5.까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① 2014. 12. 작성된 이 사건 서약서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퇴직하면서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본 서약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해석상 위 서약서의 작성시점에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로부터 퇴직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로부터 2년간 전직금지의무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채무자가 2014. 12. 7.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의 내역서에도 '퇴임일 : 2014. 12. 3.'로 기재되어 있다.
- ③ i) 1차 자문역 위촉 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자문역은 비상근인 점 ii) 실제로 채무자는 2차 자문역 위촉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사무실로 출근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채권자가 채무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하면서 교부한 안내문(이 사건 서약서 역시 위 안내문과 함께 제공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에는 재임기념품 지급, 'D모임' 회원가입 안내, 'E센터' 및 F센터 안내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 'D모임'은 채무자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친목모임이며, 'E센터'는 취업, 창업 등 경력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 점 iv) 채무자가 자문역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받은 보수의 규모, 처우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 대한 자문역 위촉은 실질적으로 이른바 퇴직 후 프로그램 또는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연속적으로 재직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④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의 자문역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채권자의 기술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채권자의 기술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설령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처럼 경쟁업체로 전직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술정보를 열람·복사하는 등 채권자에 대해 배임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기간 기산일, 자문역 위촉

 판례 55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전직금지기간이 장기이고, 전직금지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19. 4. 16.자 2019라20165 결정
사 건 명	가처분이의
당 사 자	채권자, 상대방 • A 주식회사 채무자, 항고인 • B
판결 결과 (담보제공액)	항고 인용 (가처분을 인가한 제1심 결정 및 가처분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7.자 2018카합10436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	C 메모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기술, 향후 개발 계획 정보들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 회사

채무자 : DS(Device Solution)부문 메모리사업부의 C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수석 연구원, D개발팀의 수석엔지니어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1.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8. 4. 2.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임원(상무)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채권자 주장

채무자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E 주식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금지기간의 적정성 여부
-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지급 여부



판단요지

① 채권자 회사는 2003년 C 제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이래 현재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시장 점유율 40% 내외)를 차지해 온 점 ② C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의 제품이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 내는 동작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이들 기술 중 일부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제품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후발업체인 E 주식회사는 C 제품에서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의 C 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기술과 향후 개발 계획 정보들을 전달 받을 경우 C 제품 분야에서 채권자 회사와 동등한 사업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기간 단축되는 반면, 채권자 회사는 그에 관한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업 제한의 기간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채무자의 전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①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이 양산되는 점 ② C 메모리 분야에서 채권자 회사와 후발업체인 E 주식회사와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채권자 주장과 같이 2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이라는 전업금지기간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인다.

전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① 특별 인센티브는 그 지급받은 때로부터 2년간 계속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반환이 면제되나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약정서에 기재된 것처럼 채무자가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돈에 불과할 뿐, 2년간 전직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전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그에 상응한 연봉을 지급받고,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제공한 노무의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거나 해외 파견되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들어 채무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여 전직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③ 나아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절차를 만류하면서 퇴직절차 이유 없이 지연하자 법에 따른 퇴직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퇴직하게 된 것이고, 채무자에게 반드시 채권자와 사이에 전직금지 대가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는 퇴사 후 바로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E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퇴사 후 개인사업을 준비하다 약 1년이 지난 2018. 4. 2. 경쟁업체인 E 주식회사에 취업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의 대가를 미지급하게 된 것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채무자가 경쟁회사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인 퇴직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채권자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전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반도체 기술 분야가 빠른 기술발전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업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업금지기간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는 바,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10개월 이상이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더 이상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전직금지약정, 전직금지기간, 전직금지대가, 메모리 반도체

 판례 5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4.자 2019카합5283 결정
사 건 명	경업금지가처분
당 사 자	채권자 • 주식회사 A 채무자 • B
판결 결과 (담보제공액)	일부 인용 (50,000,000원)
영업비밀의 내용	메뉴,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채권자 : 'E' 라는 상호로 돈가스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법인

채무자 : 채무자는 채권자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 오다가, 2019. 3. 12. 그 기간이 만료되자, 'F'로 상호를 변경함과 아울러, 인테리어, 메뉴 등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한 채 돈가스 전문점 영업을 계속 중인 사람

2) 채권자 주장

'E'의 메뉴, 원/부재료,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은 채권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및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 노하우로서, 채무자는 이 사건 가맹 계약에 따라 계약의 존속 중은 물론 계약해지 및 종료 후에도 채무자 및 채무자가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1년간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F'라는 상호로 채권

자와 동일 업종 및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주요쟁점

- ◎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판단요지

① 채권자는 2018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32개를 거느린 가맹업체로서, 현재 국내 3대 유통 업체에 모두 진출한 상태인 사실 ② 채권자의 전체 매출 중 4.36%가 판촉비로 사용되고 있고, 블로그 15,000개 이상에서 상호가 검색될 만큼 지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맹비 및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채무자의 영업지역도 보장해주는 등 채무자의 독점적 가맹점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실 ④ 채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위 소명사실과 같이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호실에서 인테리어, 메뉴 등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한 채 동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⑤ 일부 손님은 채무자의 현재 점포를 채권자의 가맹점으로 착각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사실 ⑥ 또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은 1년으로서, 채권자가 위와 같이 해당 상호의 지명도 유지와 판촉, 가맹점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쏟은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 및 채무자가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장소에서’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문언의 전후 맥락이나 경업금지를 통하여 보호될 채권자 및 가맹점들의 영업상 이익의 범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그대로 하는 경업도 당연히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사업장의 변경없이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동종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더욱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가처분, 가맹계약, 경업금지, 돈가스 전문점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판례 57

경업금지업무 부여만으로 보호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한하여, 그 공개금지위무를 위반하였을 때 경업금지업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별개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 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2156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당사자	원고(항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가맹사업 본부 피고(피항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 원고와 학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영위하였던 자
판결결과	항소기각(원고 일부 승소)
영업비밀의 내용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학습기자재, 상담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 경영상 정보인 상세 가격 일람표, 회원 명단 등

사건개요

갑은 학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을은 갑과 학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신내점 학원을 영위하였다. 갑과 을 간의 가맹계약서는 경업금지위무를 규정하고 있고,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습기자재, 상담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 경영상 정보인 상세 가격 일람표, 회원 명단 등을 누설 및 도용하는 등 갑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가맹점 운영 중 알게 된 갑의 자기주도학습 관련 노하우 등 영업비밀공개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을이 가맹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개별지도 프로그램(튜터링 매니저와 튜터의 개별지도 프로그램)은 갑으로부터 제공받는 영업상의 비밀인 노하우에 해당하고 이를 도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을은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8. 20. 원고에게 신내점 폐쇄를 통지하고 2012. 8. 22. F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갑은 을이 갑의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항변

갑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을은 비밀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요지

1) 법원은, 피고가 신내점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8. 20. 원고에게 신내점 폐쇄를 통지하고 2012. 8. 22. F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은 '가맹계약의 존속 중에 다른 학원을 개설, 경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맹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다른 학원의 개설, 경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2) 나아가, 가맹계약서의 조항들을 보면, ① 원고가 정한 영업비밀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비밀공개금지기간도 제한이 없는 점, ② 가맹점사업자는 know-how 전수 등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를 예치하고 매월 로열티를 지급함에도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 대가를 주고 구입한 책상구획 칸막이 등도 사용을 중지하고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③ 가맹계약 제8조 제2항은 비밀의 내용이나 비밀공개금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또한 가맹계약 제32조는 영업비밀 공개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3) 비밀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모든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정한 영업비밀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 하더라도 오로지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해당하여 영업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만 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영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과 별개로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하는 취 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간의 영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후 다른 학원의 개설, 경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민법 제103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 2) 또한 위 판결은 '원고가 정한 영업비밀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취지 로 해석할 수는 없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 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오로지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해당하여 영업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외 부에 공개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에 대하여 영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과 별개로 위약 금을 배상하기로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제한한 사례.

 판례 58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부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3가합48800 판결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당 사 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기초지질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 토목건설용 장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병이 설립된 회사 · 병 : 갑 회사 기술연구소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 정, 무 : 갑 회사에서 각 근무하였던 자
판 결 결 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갑 회사가 제작하는 기초지질 장비의 구체적인 치수, 규격, 재질 등이 기재된 설계도면, 설계계산시트 등 기술정보와 사업계획서, 경영수주정보, 부품리스트 및 단가 정보 등 경영정보가 포함된 정보

 사건개요

갑은 기초지질 장비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병, 정, 무는 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며, 을 회사는 병이 갑 회사를 퇴사한 후 설립한 회사이다. 병은 갑 회사를 퇴사하고 약 1년여가 지난 2010. 4. 21. 토목건설용 장비제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을 회사를 설립하였고, 정, 무는 병의 제안을 받고 갑 회사를 퇴사한 후 을 회사에 입사하였다.

병, 정, 무는 위와 같이 갑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각 갑 회사에 이를 교부하였다. 병, 정, 무는 갑 회사를 퇴사하면서 갑 회사가 제작하는 기초지질 장비의 구체적인 치수, 규격, 재질 등이 기재된 설계도면, 설계계산시트 등 기술정보와 사업계획서, 경영수주정보, 부품리스트 및 단가 정보 등 경영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저장된 개인 노트북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그

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에 갑은 이 사건 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병, 정, 무는 퇴사 후 이 사건 각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갑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를 갑 회사 몰래 반출하였고, 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정보를 을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정보의 침해금지 및 폐기, 이 사건 각 정보의 반출 및 사용으로 인하여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판단요지

1) 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 대부분(특히 기술정보)은 기본적인 작동원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의 집적이라고 하며, 기초지질 장비 등의 기본적인 공법, 작동원리, 간단한 설계도면 등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달라진 치수, 규격, 재질 등이 기재된 설계도면이나 설계계산시트 등은 갑 회사의 고유한 자료로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정보 중 갑 회사의 경영정보 또한 전혀 공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공언히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병, 정, 무가 이 사건 각 정보를 반출할 당시 이 사건 각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각 정보는 내부 네트워크망으로 구축된 서버에 저장되어 원고 회사 내의 관련 협업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유상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 회사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저장매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정보가 저장된 기술연구소 내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통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병, 정, 무)도 그와 같이 공유된 상태의 파일을 개인 저장매체나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쉽게 저장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② 이 사건 각 정보는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설계도면 등 각 정보가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대외 비나 비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시도 별도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 회사의 네트워크 스토리지 내에는 앞서 본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의 설정 외에는 파일의 비밀을 유지함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가 없었고, 프로그램 파일의 중요도에 따라 파일을 분류하거나 파일 자체에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 ③ 피고들(병, 정, 무)의 재직 시 기밀 엄수 조항이 포함된 취업규칙과 퇴사 시 작성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위 각 서류에는 원고 회사의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채 단지 추상적으로 '영업비밀' 내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 회사가 자신의 자료 중 무엇을 영업비밀로 지정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로써 제3자의 입장에서도 원고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④ 원고 회사는 별다른 비용 없이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비밀관리방법, 즉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및 시행, 보안담당부서 내지 보안담당자의 지정, 정기적인 보안점검 내지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⑤ CCTV와 지문인식장치는 피고들(병, 정, 무)가 퇴사한 이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각 갖추고 있으나,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3)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비밀관리성을 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들(병, 정, 무)가 원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정보를 반출하여 사용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을)의 대표자인 피고(병)가 피고 회사(을)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이상 피고 회사(을) 역시 피고들(병, 정, 무)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4) 나아가 법원은 원고의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은 이 사건 각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닌 이 사건 각 정보의 유출 및 사용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민법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면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정보를 증업원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그 정보 보호가 필요한 시간적 범위를 상정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그 시간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갑 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시간적 범위는 피고들(병, 정, 무)의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5)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병, 정, 무)의 각 퇴직 시점부터 2년 동안 이루어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피고 회사(을)와 F 사이의 매출거래에 의한 매매대금액에 피고 회사(을)의 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고 있으나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2) 그러나 본 판결에서 법원은 유출된 자산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례 59

영업비밀성은 부정하였으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아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울산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4가합19086 판결
사 건 명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B, C, 주식회사 D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인용 (90,000,000원)
영업비밀의 내용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품의 레시피를 포함한 코팅제 등 제품들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연구 파일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자동차용 E 코팅제를 포함한 화학제품 제조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하는 회사
 피고 B, 피고 C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퇴사시기 : 2008. 9. 30.)
 피고 D사 : 피고 B와 피고 C가 설립한 회사로,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생산하여 기존에 원고로부터 자동차용 E 코팅제를 납품받아 오던 G 주식회사에 자동차용 E 코팅제를 납품하는 회사

2) 원고 주장

피고 B, 피고 C는 원고에서 퇴사하더라도 원고에 근무 중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 등 자료를 유출하거나 이를 통해 스스로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인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기술을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피고 D사를 설립하고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생산하였다. 설령,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기술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B와 피고 C가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무단 반출한 자동차용 E 코팅제 기술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G에 저가로 납품함으로써 원고가 G에 더 이상 자동차용 E 코팅제를 납품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909,484,015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10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여부
-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판단요지

원고는 피고 B, 피고 C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를 원고 회사 내부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컴퓨터에 보안 암호를 걸도록 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컴퓨터를 켜고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방치했던 점, 원고가 연구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 파일을 관리할 보안책임자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도 않았던 점, 원고가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연구자료 파일이나 연구노트 등에 대외비나 비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각 정보가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 자료는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B, 피고 C는 원고의 사규 규정 및 연구개발업무 지침, 서약서에 따라 재직 중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들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고, 퇴사 시에도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들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레시피를 포함한 기술자료들을 원고를 퇴사할 당시 향후 개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레시피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E 코팅제 샘플을 만들고, 피고들이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레시피를 분석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샘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레시피를 활용하여 피고 D사의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생산한 후 이를 원고의 거래처인 G에 저가로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 피고 C가 무단 반출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가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자동차용 E 코팅제 제조기술은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 피고 C가 원고의 주요한 자산인 자동차용 E 코팅제 기술 자료들을 무단 반출한 행위 및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단 반출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피고 회사의 자동차용 E 코팅제를 제작·판매한 업무상 배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700, 671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성질상 매우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2013. 2. 28.부터 2017. 1. 24.까지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G에 납품한 자동차용 E 코팅제 제품의 물품대금 합계 4,512,920,750원의 2% 상당액인 9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비밀관리성, 영업상 주요 자산, 업무상 배임, 불법행위

판례 60

고용계약상 영업비밀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성을 모두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10859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당사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A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인용 (285,647,935원)
영업비밀의 내용	C 호스의 생산 기술, 제품 사양과 원가 정보, 거래처 관련 정보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C 호스(유류 등 화학물질 이송에 사용되는 복합호스)를 비롯하여 선박·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용되는 특수호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피고 B : 2008. 10. 27.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뒤 2011. 4. 30. 퇴사할 때까지 원고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2) 원고 주장

원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C 호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춘 회사인데,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장이자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입사 및 퇴직 시 원고와 사이에 '향후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이용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5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

지 아니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원고의 동종업체인 F 등에 입사하여 C 호스의 생산 기술, 제품 사양과 원가 정보, 거래처 관련 정보 등 위 호스와 관련된 원고의 영업비밀을 F 등에 누설하고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F 등이 C 호스를 자체적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이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나아가 피고는 고의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누설·이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이를 예비적으로 구한다.

주요쟁점

- ◎ 고용계약상 영업비밀 인정여부
-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인정여부
- ◎ 손해배상액의 범위

판단요지

원고의 보안관리지침은 영업비밀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회사의 모든 정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직접 영업활동에 이용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규정한 점, 원고는 다년간의 영업과정에서 C 호스를 자체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과 정보는 물론 위 호스의 제품 단가 및 부품·자재단가, 거래처 및 영업망에 관한 정보를 수집·확보하고서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사건 파일 내 자료나 정보도 위와 같이 원고의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였던 점, C 호스는 그 제작·생산에 전문적인 설비와 기술, 경험 등이 필요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원고만이 이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파일에 포함된 거래처 관련 정보는 원고가 수년에 걸쳐 거래처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축적한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자료여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가진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보안관리지침상 영업비밀로 별도로 명시된 ‘원고와 거래하는 일체의 업체 정보 및 연락처’에도 해당되는 점, 위와 같은 정보·자료들은 모두 C 호스의 제작·생산수단과 영업망 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거나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에 든 각종 자료나 정보는 원·피고 간 고용계약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피고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의 동종업체인 F에 입사한 뒤,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파일을 이용하여 F로 하여금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손쉽게 I와의 협상을 진행하여 C 호스 부품 조립·판매에 필요한 설비와 영업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파일 중 C 호스

제품이나 부품 등의 단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C 호스 조립에 필요한 설비나 부품 등을 저가에 구입하여 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파일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장 이자 영업비밀 총괄담당이었던 자로서 퇴직 후에도 이 사건 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종업체인 F에 입사하여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 파일을 사용하거나 F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 원고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으며, 이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수액의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바, 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하여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예비적 청구원인에 기한 지연손해금 액수보다 소액이므로(손해배상액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D와의 거래가 단절되었고, 기존 거래처에 일정 기간 C 호스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으며, 거래관계가 유지된 업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유지되었을 금액보다 하락한 단가로 C 호스를 납품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감소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상당(일실영업이익)이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호스

 판례 61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집행한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521364 판결
사 건 명	손해배상 청구의 소
당 사 자	원고 · 주식회사 코세스 피고 ·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청구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레이저 드릴링 장비, 레이저 마킹 장비, 디캡 장비,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의 각 소스 코드 등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

피고 :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

※ 사건의 경과

- 피고의 E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던 A, B, C, D는 2009. 4. 1.경부터 2009. 7. 1.경까지 사이에 원고로 전직
- 그 과정에서 A 등은 ① 레이저 드릴링 장비 ② 레이저 마킹 장비, ③ 디캡 장비, ④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와 관련된 기술정보 문서파일, 그 정보를 구현한 소스 프로그램, 위 소스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로 구성된 프로그램 파일 등을 피고의 허락없이 복사하여 가져나옴
- 피고는 원고와 A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와 A 등을 상대로 그 손해 중 5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458호)

- 제1심 법원은 원고 및 A 등은 각자 피고에게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18,841,28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호),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기술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고 및 A 등이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손해액은 3,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원고 및 A 등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 한편, 피고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삼성전자에 대하여 반도체장비 등의 거래로 인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51억 2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757호)
- 삼성전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3806호로 최초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는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권 5,098,651,200원을 집행공탁함
- 원고는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명한 손해배상액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38,247,946원을 변제 공탁하여 이를 완제한 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카합32호), 민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위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됨

2) 원고 주장

민사사건의 결과 피고의 정당한 피보전채권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의 가치와 이로 인한 손해액을 과장하여 최초 가압류를 기준으로 51억 2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액수는 873,733,981원에 이르고, 피고가 최초 가압류 집행을 하기 전까지 원고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였는데,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로 거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신용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1,276,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집행을 가압류의 부당성 여부

판단요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반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신청에 의해 원고가 삼성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에 청구금액 51억 200원의 가압류가 집행되었는데, 그 후 본안소송인 민사사건 제2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제1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안사건인 민사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이에 민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4,118,841,283원에 이른 점, 비록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손해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피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① 이 사건 원고 장비의 가치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 ②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삼성전자에 레이저 드릴링 장치를 납품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인과관계) ③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관한 판단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이는 주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초 가압류 신청 당시 그 피보전권리인 약 5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가압류 집행, 고의·과실 추정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판례 62

피고들이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는 전부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나21392
사건명	손해배상(기)
당사자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갑 : 휴대전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갑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피소를 당한 자들
판결결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갑이 보유한 CDMA 방식의 이동전화 기술 관련 소스코드

사건개요

갑은 을, 병, 정, 무, 기, 경, 신(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이 갑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에서 갑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갑과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되게 되었다.

갑은 항소심에서 주장하기를,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병의 회계담당직원이 을에게 보고한 회계 자료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에 의하면 병이 K, L의 판매로 2010. 3.까지 얻은 순 이익액이 합계 5,524,696,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는 전부 갑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하고, 위 손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2010. 4. 이후 부분 및 J의 판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들의 항변

갑의 휴대폰 K의 개발은 2008. 말 완료되어 2009. 1.경 크리켓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개발이 종료되었고 양산에 들어갔다. 을은 그 후인 2009. 3.경에야 K가 M의 소스코드를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휴대폰 L, J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0. 말경이었다. 이처럼 을은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고의는 물론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에게 손해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을과 병으로서 무, 기로부터 받은 개발결과물이 갑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상, 그에 비록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범인 무, 기와는 불법행위의 태양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판이하므로 손해배상액 역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판단요지

1) 피고(병)가 K, L 휴대폰전화의 판매로 얻은 개발비와 런닝 로열티 수입이 합계 5,524,696,762원에 달하는 사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이미 참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액수가 그대로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은 위 액수는 피고(병)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추산한 것으로서 피고(병)가 K, L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지출한 제반 비용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병의 순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법원은, 비록 원고의 I 소스코드의 완성도와 상품성이 높지 아니하고 또한 그 라이선스료 또한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피고들이 K, L, J 휴대폰전화를 개발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이를 조기에 출시하여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올리게 되었다면 갑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반드시 I를 비롯한 소스코드 자체의 가치에 상응한 규모로만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로서는 늦어도 2008. 9.경에는 소스코드 도용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K 휴대폰전화에 관한 소스코드 도용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보았다더라면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무의 약속만을 믿고 그 후 K는 물론 L 및 J까지 계속 개발 및 판매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에 대하여는 갑의 영업비밀침해에 관하여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1) 위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양 측의 주장들에 대하여 상세히 판단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이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병)이 K, L 휴대전화의 판매로 얻은 개발비와 런닝 로열티 수입은 전부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결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액수는 피고(병)이 K, L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지출한 제반 비용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피고(병)의 순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면서 피고(병)가 K, L 휴대전화의 판매로 얻은 개발비와 런닝 로열티 수입이 합계 5,524,696,762원에 달하는 사정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참작하였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2 제5항 본문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들이 다른 추가 비용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는 전부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례 63

특허출원과 구별되는 기술적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고, 침해자의 순이익률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해당 제품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보다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부경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부산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2나5445
사 건 명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 A사 피고: B사, C, D, E, F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변경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이 포함된 유산균 제조공정, 생산설비 등

 사건개요

원고 : 세계 최초로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을 상용화 하는데 성공한 회사

피고C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여 B사를 설립한 B사의 대표이사

피고D 내지 F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B사에 입사한 직원들

* 피고들의 퇴사 시기는 2007.말 ~ 2010.초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유산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작업공정을 모방하여 유산균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자료를 폐기하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판단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원고의 규모나 종업원 수, 피고들의 원고회사 이직 전후의 담당업무, 원고가 실험연구를 통해 얻은 유산균별 코팅물질이나 배지의 배합비 등 기술적 요소와 설비의 최적화 등 설비적 요소 및 거래처별 이종코팅 유산균의 완제품 제제방법 등 영업적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과 같은 이종코팅의 최적화 조건에 관한 정보는 특허출원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원고가 보안교육과 문서의 관리체계를 구축했던 점, 원고의 독특한 유산균 제조기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임직원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순이익률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해당 제품 판매에 있어서의 순이익률보다는 작지 않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의 판매액에 영업비밀 보유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산출된 이익액은 침해자의 순이익액으로서, 그 중 영업비밀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이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비고 - 선고 당시 피고들의 원고회사 퇴사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침해금지기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금지청구 인용

핵심어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손해배상액 산정

 판례 64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가합556147
사 건 명	손해배상(지)
당 사 자	원고 • A사 피고 • B사, C, D, E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수주일, 고객업체명, 업체담당자 등의 정보가 기재된 수주 대장(데이터베이스)

 사건개요

원고 : 다국어 전문 번역회사

피고C, D, E :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퇴사시기: 2012. 9.~2013. 8.)

피고 B사 : 피고C, D, E가 원고를 퇴사한 이후 함께 설립한 법인

원고의 주장 :

피고C, D, E는 전문 번역회사인 피고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C는 그 후 2013. 10. 초순경 원고의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그 서버에 저장된 수주 대장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수주 대장에는 2012. 10. 4.부터 2013. 10. 4.까지 원고가 수주한 2,155개의 업무(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에 해당)에 관하여 개별 수주일, 고객업체명, 업체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프로젝트명, 번역담당자, 분량, 분야, 언어, 다국어, 기업분류, 업무 시작일, 업무 종료일, 담당 프로젝트매니저 등 15개 항목(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 해당)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회사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수주 대장에 '결과'항목이 추가된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회사가 이메일 등으로 영업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수주 대장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시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 ◎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판단요지

수주 대장에 기재된 각각의 개별정보 몇 개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이는 동종업체에 알려졌거나 담당 영업사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각각의 개별정보를 모두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이 사건 수주 대장 전체는 동종업체나 불특정 다수인이 원고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피고 C도 자신이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였던 정보나 동종업체에 알려진 정보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주 대장에 상당하는 정보까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퇴사하고 경쟁 업체인 피고회사를 설립한 이후 임에도 원고의 전산망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주 대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주 대장의 내용은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수주 대장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주 대장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피고 C가 이를 취득하기 직전 1년의 기간에 한정된 정보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수주 대장에 상당하는 정보를 독자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시간, 노력,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수년 이상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피고 C가 원고를 퇴사한 후 이를 취득한 2013. 10. 초순경부터 2년을 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폐기 등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

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 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한편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원고에게 실제 발생하는 손해도 위 1년의 기간 안에 발생한 손해로 한정되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부경법 제14조의2 제5항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취득시로부터 2년 동안의 손해액으로 4천만원을 인정함)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 약정에 따른 피고들 3명의 각 연봉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각 2천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 비고 -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약금 감액 사유로 고려함.

핵심어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침해금지기간, 경업금지

 판례 65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도 인용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합4681 판결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당 사 자	원고 • A 주식회사 피고 • B, C, 주식회사 D
판결 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인용 (손해배상액 44,467,533원 전부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세라믹 컬러 제품 제조를 위한 유리 프리트, 무기 착색안료, 유기 비히클 성분 및 배합 비율,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 (유리프리트 23종, 유기 비히클 28종 및 이를 조합한 세라믹 컬러 144종)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및 라목, 제10조, 제14조의2 제5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세라믹 컬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세라믹 컬러를 독자 개발하고 상용 세라믹 컬러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피고 B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피고 D사에 입사 (퇴사시기 : 2015. 5. 31.)

피고 C :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피고 D사에 입사 (퇴사시기 : 2014. 9. 21.)

피고 D사 : 전기, 전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업, 나노 신소재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원고 주장

피고 B는 원고 연구소 및 영업팀 과장에 이르기까지 14년 이상, 피고 C는 영업팀 대리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사는 피고 B, 피고 C가 입사 전 세라믹 컬러 관련 영업을 한 적이 없다가 피고 B 등이 입사한 후 불과 2~3개월여 만에 세라믹 컬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는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사용·공개한 것이므로, 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의 폐기, 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및 그 침해행위에 따른 판매 감소로 인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한다

주요쟁점

-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인정여부
- ◎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침해금지기간
- ◎ 손해배상액 산정근거

판단요지

원고는 1974년 창업한 이래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라믹 컬러를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 업체인 점, 피고 D사는 2012년 친환경 페인트를 개발하였고, 무기 항균제품, 기능성 복합세라믹 필터, 기능성 복합수지사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 2015년 이전까지 세라믹 컬러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 C에 이어 피고 B가 입사한 후 불과 2~3개월여 만에 세라믹 컬러 관련 영업을 개시한 점, 피고 D사는 세라믹 컬러 제품을 단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였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선발주자로서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도 계속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때문에 개별 제품들에 대하여 일일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오랜 기간 관련정보를 영업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절대적 의미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다, 원고의 시장지배력이 원고가 가진 수치정보(데이터베이스)를 경쟁업체와도 나누어 써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후 10여 년 후에 원고를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상당한 기간 동

안 계약관계 및 신의칙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원고 직원이라도 연구소 직원이 아니면 위 연구소 내 컴퓨터의 자료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 피고 C도 원고가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자신들의 근무경력과 직책,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등 여러 장치들에 의하여 조성된 원고 회사의 분위기,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위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그 보유자인 원고에 의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라믹 컬러 제품을 제조·판매한 적이 없었던 피고 D사가 피고 B, 피고 C 입사 후 2~3개월여 만에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세라믹 컬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의 기술정보,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 D사가 세라믹 컬러 제품을 단기간 내에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였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D사가 판매한 세라믹 컬러 제품의 성분 구성이 원고 제품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나타내고, 피고 D사가 세라믹 컬러 영업을 함에 있어서 원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기준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의해 보유되던 이 사건 정보를 참조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개발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하였으며, 거래처 정보를 판매활동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를 개발 내지 개량하는 데 2년에서 40년이 걸린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 D사는 종래 세라믹 컬러 관련 영업을 하지 않다가 위 기술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비로소 관련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실상 세라믹 컬러 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기술적 차별성뿐 아니라 매우 앞선 시기에 최초로 세라믹 컬러 제품의 국산화를 시도한 선발주자로서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 등 시장의 특수성이 만든 진입장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보유한 세라믹 컬러 제품 중에는 피고 B가 원고 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연구개발한 것도 있는 점, 피고들은 금지기간 만료 전이라도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를 통하여 세라믹 컬러 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리하여 어떤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기간은 피고 B의 원고 퇴사일로부터 5년 후인 2020. 5. 31.까지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손해액을 엄밀하게 계산할 경우 이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고 청구금액 전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침해금지, 폐기, 세라믹

판례 66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2가합54082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지)
당사자	원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엘에스, 엘지전자 주식회사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일부 인용 (75,866,024원)
영업비밀의 내용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GHP)용 엔진 선정 및 천연가스 연료 공급장치 개발 관련 기술, 엔진 및 GHP용 시스템 제어 관련 기술, 방진 관련 기술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제11조, 제14조의2 제3항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피고 엘에스 : 전력송변전, 배전 및 통신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

피고 엘지전자 : 전자제품 생산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엘에스와 사이에 2002. 10. 14.부터 2007. 10. 14.까지 5년간 원고가 피고 엘에스에게 원고의 영업비밀인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GHP) 제작에 관한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종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GHP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한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GHP 제품을 판매하여 올린 매출액 합계 5,791,299,608원의 2% 상당인 115,825,992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엘에스는 이 사건 GHP 제품 등을 포함하는 기계·부품의 제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물적 분할을 한 후, 엘에스엠트론과 함께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2007. 10. 15.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5,791,299,608원 상당의 이 사건 GHP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엘에스엠트론은 2011. 3. 10. 피고 엘지전자와 사이에 이 사건 GHP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에 관련된 공조사업 부분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 부분에 관한 영업 일체를 피고 엘지전자에 포괄적으로 양도함

주요쟁점

-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판단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무렵 및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GHP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위 기술이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어 온 점,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루어진 감정 결과 비로소 이 사건 GHP 제품에 이 사건 GHP 기술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점, 따라서 원고로서도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기는 빨라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GHP 제품에 이 사건 GHP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가 회신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제3항은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영업비밀에 대한 통상 실시료 등을 가리키는 것인 바,

① 이 사건 GHP 기술에 대한 통상의 실시료 상당액은 '이 사건 GHP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GHP 제품의 매출액의 2%'이고 ② 피고 등이 2007. 10. 15.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GHP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은 5,791,299,608원이며 ③ 이 사건 GHP 기술 중 이 사건 GHP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비중은 65.5%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 등의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866,024원(= 침해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5,791,299,608원 × 2% × 이 사건 GHP 기술 중 이 사건 GHP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비중 65.5%)이 된다.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통상 실시료,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GHP)

4. 국제재판관할권

판례 67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는지
설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6(본소), 2016가합571853(반소)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 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당사자	원고 • A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B(반소원고), C
판결결과 (손해배상인정액)	본소, 반소 모두 기각
영업비밀의 내용	탈모방지 제품의 임상자료 및 셀리움계량적 공식 등 자료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사건개요

1) 기초사실

원고 : 스위스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탈모방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탈모방지의 효능을 가진 'D'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피고 B사 : 신약개발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의 자회사로서, 대리점사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C : 소외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소외 E와 피고 B의 대표이사였음

2) 원고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글로벌데이몬파마의 중개로 피고 B사와 사이에 피고 B사에게 원고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소외 E가 탈모치료제인 J를 개발 중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소외 E에게 공개하여 J의 개발 및 임상시험 승인절차에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 B사에게 J의 개발 중단과 J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 B사의 행위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유지되었다라면 원고가 얻었을 매출순이익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납 받은 제품인도비용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선택적으로 피고 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외 E에게 공개하여 J의 개발 및 임상시험 승인절차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제품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해 반소원고인 피고 B사는 피고 B사의 계약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적법한 근거 없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후 한화제약에게 원고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사로부터 선납받은 제품인도비용을 부당이익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유지되었다라면 피고 B사가 1차 판매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주요쟁점

- 섭외사건에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준거법
- 섭외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요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B사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B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B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이므로,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

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B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준거법을 스위스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준거법 지정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스위스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B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하여 로잔상업재판소에 회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 B사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겨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음

한편,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제 규정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강행 규정으로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스위스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 이 사건 대리점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원고인 피고 B사의 청구는 상사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함

핵심어

영업비밀, 민사본안,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부정경쟁방지법, 준거법, 국제사법

5. 구법 부정경쟁행위 (차)목과의 관계

판례 68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경법 (차)목(현행 (카)목)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사 건 명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당 사 자	원고 • A, B사 피고 • C사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프로필렌 생산공정 중 올레플렉스(Oleflex) 공정에 관한 기술정보

사건개요

원고

A : 올레플렉스(Oleflex) 공정 개발에 성공한 미국 회사

B : 원고 A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일본 회사

피고

C : 원고 B와 올레플렉스 공정 도입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한국 회사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특정 공장의 건설, 개조, 유지, 보수, 가동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후 이를 가동하고 있다.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행위, 부경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공개와 사용을 금지하고 설계도면을 폐기하며,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주요쟁점

- ◎ 기술정보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기적 일체인 경우 그 사용이나 개시금지 의무의 부담여부도 각 기술정보 전체를 일체로 취급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구 부경법의 시행 전에 취득하여 시행 후에 사용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여부(소극)
- ◎ 구 부경법의 시행 전에 취득하여 시행 후에 공개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여부(적극)
- ◎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경법 (차)목의 관계

판단요지

이 사건 기술정보는 올레플렉스 공정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갖가지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이므로, 그 공지어부나 경제적 가치도 이러한 설계도를 기초로 한 올레플렉스 공정의 공장 건설의 관점에서 파악해보아야 하고, 또한 어느 한 부분이나 분리된 각각의 설계 값을 따로 떼어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들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기적인 일체로서 그 실체나 가치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해 피고가 그 사용 또는 개시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인지 여부도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전체를 일체로 취급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1992. 12. 15.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이 사건 각 기술정보는 피고가 구 부경법 시행 전인 1989. 2. 8.경 원고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구 부경법 시행 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같은 법 시행 후에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후단에 의하여 허용되나,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피고가 2013. 4.경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EPC 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은 영업비밀 공개행위로서 원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호 (가) 내지 (자)목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경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이 사건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EPC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은 영업비밀 공개행위로서 원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나, 이러한 공개행위를 두고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공개행위 중 피고의 사용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바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 비고 - 구 부경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경법 (차)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핵심어

영업비밀, 구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차)목

IV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공소사실의 특징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3. 부정한 목적
4.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5. 양벌규정
6. 외국사용



CHAPTER IV.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1. 공소사실의 특정

 판례 6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동 조항으로 의율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 7. 21. 선고 2013고단6222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당사자	<p>피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 병 회사에 근무하며 반도체 패턴사이즈를 계측하는 측정설비 운영,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 자 을 : 해외 기업들의 다양한 반도체 제작, 검사 장비 등을 병 회사 등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일종의 중개 영업을 하는 H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p>피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 : 반도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
판결결과	피고인들 유죄
영업비밀의 내용	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웨이퍼 프로세스(WP) 라인 현황 및 개선방향, 인력구성, 설비 보유대수, 재배선과 Bump 공정흐름도, 제품별 생산계획 등 WP 라인에 대한 종합적 자료가 담긴 ppt 파일



사건개요

갑은 2009. 12. 16.경 병 회사의 영업비밀인 웨이퍼 프로세스[WP : 반도체 집적회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원판형의 얇고 둥근 판인 웨이퍼(Wafer)에 반도체 패턴을 입히는 전공정과 후공정 사이에 반도체칩을 상하층으로 더 고도로 집적하기 위하여 하는 재배선 작업 등의 공정] 라인 현황 및 개선방향, 인력구성, 설비 보유대수, 재배선과 Bump 공정흐름도, 제품별 생산계획 등 WP 라인에 대한 종합적 자료가 담긴 ppt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USB 장치에 몰래 저장한 후 이를 담뱃갑에 숨긴 채, 병 회사 사업장 정문 면회실에서 반도체 관련 두께측정 장비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의 영업팀장인 을을 만나 위 USB를 을의 노트북에 연결하여 이 사건 파일을 열람 및 복사하여 주었다.

을은 위와 같이 병 회사 사업장 정문 면회실에 찾아가, 갑이 위와 같이 담뱃갑에 숨겨 온 USB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열람하고, 을의 노트북에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 사건 파일은 컬러로 된 파워포인트 파일로 매 화면 우측 상단에 붉은 글씨로 ‘SAMSUNG SECRET’이라는 활자가 표기되어 있다.

한편, H사는 2010. 4.경 병 회사의 WP 라인에 위 장비를 납품하는데 성공하였고, 을은 2010. 7. 31.경 퇴사하여 2010. 8. 1.부터 미국 반도체 검사 장비를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병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판단요지

1) 법원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인 인식으로라도 병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2) 피고인 갑

①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두고, 보안관리규정이나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모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

며, USB를 사내에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보안검색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USB 등이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바, 피고인(갑)은 피해 회사에 약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러한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② 피고인(갑)은 자신의 PC에 있던 이 사건 파일을 굳이 WP 라인 PC를 이용하면서까지 USB에 저장하고, 이를 담뱃갑에 숨겨 반출한 뒤 병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납품 중개업체 직원 을에게 열람, 복사시켜 주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회사의 보안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을)은 피해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는 업체의 직원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 회사는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을)이나 피고인(갑)이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고 하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3) 피고인 을

① 피고인(을)은 이 사건 파일을 복사하기 전 그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파일 내 각 화면 상단 우측에는 'SAMSUNG SECRET'이라는 빨간 문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비밀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인(을)이 당시 맡았던 일은 피해 회사 반도체 공정 중 WP 라인에 I 회사의 계측 장비를 납품하는 일이었는데, 피해 회사와 협력관계라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을)은 외국회사가 제작한 반도체 관련 장비를 국내업체에 납품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해 회사에 납품을 원하는 외국 장비 제조업체 등에 병 회사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납품업체 선정 등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동 조항으로 의율한 사례

판례 70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목적에 이용하였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8. 20. 선고 2013고단116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당사자	<p>피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갑 회사의 부설연구소 전자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추적시스템 및 태양광집광기술시스템 신규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자 · 을 : 갑 회사의 부설연구소 전자팀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추적시스템 현장시공 및 AS, 현장관리, 태양광제품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자 · 병 : 갑이 대표이사, 을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회사로서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p>피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 태양광추적시스템 및 태양광집광기술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판결결과	피고인들 모두 유죄
영업비밀의 내용	태양광 추적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문서, 도면, 회로도

사건개요

정 회사는 태양광 추적시스템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한다. 정 회사에서 태양광 추적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술문서, 도면, 회로도 등은 대외비로 취급·관리되고 있고, 전자결재 진행시 기술문서나 대외비 문서는 결재라인 및 참조인을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어 그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문서보관안전관리규정 등이 존재한다.

갑은 2004. 7. 30.경 정에 입사하여 2008. 11. 30.까지 근무하면서 회사 내 부설연구소에서 태양광 추적·집광장치 제조기술 개발, 협력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을은 2007. 5. 3.경 정에 입사하여 2009. 1.경까지 현장 관리 및 연구보조 직원으로서 태양광 추적장치 개발 관련 테스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갑은 정 회사 재직 중인 2005.경 ○○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여, 2007. 8. 25.경 'PV cell의 효율증대를 위한 태양광 추적장치의 설계 및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위 논문에는 추적식 태양광 발전설비 구성을 위한 PV 센서(Photovoltaic Sensor)와 구동 장치의 회로도, 동작 프로그램 및 관련 데이터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을도 정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2008.경 ○○대학교 일반대학원 전자제어공학과에 입학하여, 퇴사 이후인 2009. 12.경 '집광형 태양광 발전을 위한 고정밀 태양위치 추적센서 개발'이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위 논문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집광장치를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방식과, 그에 사용되는 CPV 센서(Concentrating Photovoltaic Sensor)의 회로도 및 이를 동작시켜 얻은 데이터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갑은 2006. 1.경부터 부친의 명의로 '병'이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하였다. 갑은 정 회사에서 퇴사하고 한 달 가량 지난 2009. 1. 6. 병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을도 정 회사를 퇴사한 후 두 달 여만인 2009. 3.경 병 회사에 입사하였다. 이후 병 회사는 2009. 11.말경부터 발명자를 갑으로 하여 '태양위치 추적센서 및 추적방법', '태양광 추적센서 및 이를 이용한 태양광 집광장치' 등의 제목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정 회사와 동종의 제품인 태양광 추적장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에 검사는 갑이 정 회사 소유의 태양광추적시스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자료를 취득하여 갑이 작성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게재함으로써 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태양광 단축/양축 발전시스템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을이 정 회사 소유의 태양광추적시스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자료를 취득하여 을이 작성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게재함으로써 정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병 회사는 병의 대표자(갑)가 정 회사의 태양광추적시스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각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학위논문을 작성·제출한 것일 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다. 또한 학위논문의 기재 내용을 영리행위에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정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요지

- 1)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회사 영업과는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학위취득에 이용하였다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가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정보를 이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반면, 정 회사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향후 이를 이용한 경쟁기업이 출현하여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손해발생의 위험성도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2) 또한 법원은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은 정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 후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 회사의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정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① 피고인(갑)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태양광 발전 기술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었는데,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피해 회사를 설립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고 피해 회사와 성능 및 기능이 유사한 태양광 추적장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 ② 광센서를 이용한 태양광 추적·집광장치는 정 회사가 수년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외부 용역까지 동원한 결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 인증(NEP)을 받은 기술로서, 그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들의 설계와 배열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 장기간의 테스트를 거쳐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개인 또는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신생 기업이 단시간 내에 완료하기는 매우 어렵다.
 - ③ 피고인(갑)은 피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이사인 동생 무를 통하여 자신이 태양광 추적장치를 납품한 거래처에 정 회사의 로고와 피해 회사 제품의 사진 및 재원이 기재된 사용자 매

뉴얼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피해 회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얻은 실험 데이터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도1739 판결 참조)이다.
- 2)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 3) 위 대법원 판결들의 태도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정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논문 게재를 통해 외부에 누설하였고, 이는 동시에 직원으로서의 비밀유지임무를 위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4) 나아가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목적에 이용하였어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판례 71

영업비밀 침해 공소 사실의 특정 및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



기초사항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4고단6253
사 건 명	가. 업무상 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 사 자	피고인 • 가.나.A • 가.B
판결 결과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영업비밀의 내용	제품 도면



사건개요

피고인 A : 피해자 회사 연구원/연구소장으로 제품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

피고인 B :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소사실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도면 등을 가지고 퇴사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쟁사에 입사하여 생산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로 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정렬지그 도면 등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생산공장 내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93개 파일을 회사 밖으로 반출



주요쟁점

- ◎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 ◎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
- ◎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판단요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는 비밀관리의 기술 및 장비의 시기적인 발전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방화벽 구축, 연구소내 컴퓨터 USB 포트에 사용금지 봉인 태그를 붙인 점, 제작도면 등에 대외비 등을 표시한 점, 보안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점, 서약서를 징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 도면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어 비공지성 또는 경제적 유용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핵심어

영업비밀 침해, 공소사실 특정, 압수·수색, 영업비밀 보호 요건

2. 실행의 착수와 기수

판례 72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중 1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두고 나머지 공동정범들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3156 판결
사 건 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당 사 자	피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그 중 일부를 누설한 자 • 을, 병, 정 : 갑의 영업비밀 무단반출행위에 공모한 자들로서 그 후 갑으로부터 영업 비밀을 전달받은 자들
판 결 결 과	유죄
영업비밀의 내용	피해회사가 개발한 제품관련 설계도면 등



사건개요

갑은 2013. 7. 20.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을, 병, 정들과 함께 부정사용하여 대체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갑은 2013. 7. 23.경 을, 병, 정이 있는 자리에서 위 설계도면 19장을 병의 USB에 사본해서 주었고, 2013. 7. 26.경 을, 병에게 위 설계도면 13장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그 후 갑은 2013. 8. 8. 을, 병, 정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설계도면을 보여주었고, '갑, 을, 병, 정'은 이를 이용하여 A, B, C로 하여금 대체품을 제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갑은 위 설계도면 44장을 A, B, C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업무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직원이 당해 영업비밀을 기업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배임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가담한 공범은 당해 영업비밀이 기업 외부로 반출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영업비밀 무단 반출로 인한 배임행위의 공범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전달받는 것은 이미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실상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전달행위 자체를 영업비밀 누설죄나 취득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갑, 을, 병, 정’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범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설계도면 제공 및 취득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죄와 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검사의 항소이유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① 피고인 을, 병, 정이 피고인 갑의 영업비밀 반환거부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갑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설계도면을 전달한 당시 업무상배임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그 전달행위는 업무상배임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다른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아닌 제3자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②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때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설계도면 제공 및 취득행위는 업무상배임죄와 별개로 영업비밀 누설죄와 취득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판단요지

1) 법원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며, 영업비밀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퇴사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하면서, 회사 직원이 업무상 정당하게 지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고 또한 그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행위와 누설 행위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9169 판결 참조) 또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것인데,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 또는 반환거부로 인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 그 영업비밀이 다시 제3자에게 누설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2) 또한 영업비밀의 반출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그와 같은 자료를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성립하는 반면,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행위자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므로, 업무상배임 행위의 공동정범들 중 1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그 공동정범들 전원이 그 영업비밀의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로써 그 공동정범들 전원이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3) 위와 같은 전제하에,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 갑이 2013. 7. 20.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시점에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갑)은 피해 회사를 퇴직한 이후인 2013. 7. 23.부터 피고인(을, 병, 정)에게 위 설계도면을 전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을, 병, 정)이 피해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은 빨라도 2013. 7. 23. 경이라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중 1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나머지 공동정범들이 그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갑의 영업비밀 누설행위와 피고인(을, 병, 정)의 영업비밀 취득행위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와는 별도로 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회사 직원이 퇴사시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범들과 부당히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퇴사 직원 및 해당 공범들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게 된다.
- 2) 그런데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중 퇴사한 정범1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나머지 공동정범들이 그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정범들은 그 퇴사한 정범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때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3) 이 사건은 영업비밀 무단 반출로 인한 배임행위의 공범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전달받는 것은 이미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실상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 행위와 누설 행위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관계 실제적 경합관계 여부가 문제된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판례 73

영업비밀누설행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서 1인이 퇴사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 내지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누설행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 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766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당사자	피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을 :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그 중 일부를 누설한 자 · 병, 정 : 갑, 을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전달받아 사용한 자들
판결결과	일부 무죄
영업비밀 내용	피해 회사가 개발한 신발발창용 고무제조 자재 정보 등

사건개요

피고인 갑은 2007. 2. 경 사업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자 퇴사 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회사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보유한 발포고무 자재 개발 관련 자료를 외장용 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하였다.

피고인 병, 정은 2005. 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발포고무를 공급받아 신발 겔창을 생산해 오던 중, 피해회사에서 가격 상승을 요구하자 무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던 발포고무를 자체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경부터 무를 통하여 피고인 갑에게 피해회사의 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자재를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11. 10. 1. 경 발포고무 생산을 위해 경서케미칼을 설립하였다.

이에 피고인 갑은 2011. 6. 경 피해회사의 발포고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재를 개발할 때 피해회사 퇴사 시 몰래 가지고 나온 자료 중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고무제조 자재 정보 등을 사용해 왔는데, 그러던 중 특정 자재의 경우 2007년도와 2011년도의 원료 배합비가 달라서 대체 자재를 생산할 수 없자 피고인 을에게 향후 피해회사의 생산데이터 유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피해회사의 해당 자재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을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해 대체 자재 개발에 이용하여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병, 정에 대해 피고인 갑, 을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고무창용 발포고무 제조관련 배합표 등을 누설, 취득 및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병, 정을 피고인 갑, 을의 영업비밀누설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피고인 병, 정은 피고인 갑, 을의 영업비밀 누설, 사용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 병, 정이 위 범행에 대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지가 문제되었다).

판단요지

1) 법원은, ① 피고인(병)이 2011. 3. 경 피고인(갑)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회사 제품의 대체자재 개발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점, ② 피고인(병)이 2011. 6.경 피고인(정)의 주선으로 피고인(을)을 만나 대체자재 개발을 위해 설립할 회사에서 관련 사업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회사의 제품 생산데이터 등을 넘겨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을)에게 도움을 청해 보라는 얘기를 듣고 역시 거절당한 점, ③ 피고인(병)은 2011. 6. 경 피고인(갑)에게 요청하여 관련 자재 및 그와 관련된 배합표를 전달 받았고, 피고인(병, 정)은 이를 이용해 대체자재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갑)과 서로 피드백하였는데, 해당 배합표가 피해회사의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④ 피고인(병, 정)은 피고인(갑)에게 관련 자재의 공급을 요청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자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⑤ 피고인(갑, 병, 정)이 서로 그 점을 상의하거나 피고인(갑)이 이를 승낙한 바도 없는 점(피고인 갑은 피고인 병 등으로부터 관련 자재를 만들 때 피해회사의 자료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함), ⑥ 피고인(을)은 피고인(병)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거절한 점, ⑦ 피고인(을)은 피고인(갑)의 거듭된 요청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갑)에게 전송하였으나, 이 사실은 피고인(갑, 을) 외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점, ⑧ 피고인(갑)이 피고인(병)의 이메일로 보내준 배합표에는 자재

의 배합원료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 피고인(병, 정)은 피고인(갑)에게 배합원료 및 배합비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병, 정)은 피고인(갑)으로부터 관련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그가 피해회사 퇴사 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자재를 생산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 내지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갑)이 피고인(을)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관련 자재를 생산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위와 같은 반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병, 정)과 피고인(갑, 을) 사이에 본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병, 정)에게 본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본 판결은 단순히 다른 공범들의 영업비밀 사용행위를 알 수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어려워 영업비밀 사용 등의 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판례 7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판시하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부정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사 건 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당 사 자	피고인 • 가. A • 가. B • 가.나. C • 가. 주식회사 JTBC
상고인	피고인 C 및 검사
피해업체	KBS, MBC, SBS
판결 결과 (형량)	상고기각 (피고인 A와 피고인 B : 각 무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JTBC : 무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052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당선예측 및 예상득표율이 담긴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 : JTBC 보도국 소속 프로듀서(PD)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
태스크포스팀(이하 'T/F팀')의 팀장이자 이 사건 지방선거 방송 책임 PD

피고인 B : JTBC 보도국 정치부 소속 기자로서 T/F팀 팀원

피고인 C :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부사장

피고인 JTBC :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2) 공소사실

①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는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이하 '미디어리서치'), 주식회사 리서치앤리서치, 주식회사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 등 3개의 여론조사기관과 '이 사건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미디어리서치 등 위 3개의 여론조사기관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일인 2014. 6. 4. 17:25경부터 17:27경까지 각 방송사 담당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투표종료 전에 지상파 3사의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게 되면 미리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해 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더 나아가 지상파의 개표방송을 통해 위와 같이 사전 입수한 자료와 일부라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지상파에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준비한 그래픽 화면과 함께 지상파 3사와 같은 시간대에 신속히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선거방송에서 사실상 지상파 3사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방송 시청률을 높이며 향후 그에 따른 피고인 JTBC의 위상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17개 시·도지사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입수한 즉시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위 '출구조사 입력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18:00 직후 지상파 3사에서 개표방송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일부가 방송되자 위와 같이 사전 입수한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의 일부와 일치함을 확인 후 그 즉시 함께 있던 T스튜디오 진행 PD U에게 지상파 출구조사를 방송에 내보내라고 하였고, T스튜디오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보도를 위해 미리 대기 중이던 Y 아나운서는 18:00:41경 "지상파 출구조사를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마친 후 바로 뒤 이어 지상파 3사에서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도 전인 같은 날

18:00:49경 위와 같이 미리 입력해 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지역 별로 순차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 JTBC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사용하였다.

③ 미디어리서치 부사장이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책임자인 피고인 C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주위적 공소사실) 혹은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여 미디어리서치로 하여금 지상파 3사에 손해배상 위험을 부담하게 하거나 향후 미디어리서치가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더 이상 수주 받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예비적 공소사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 CR로부터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삼성과 미디어리서치와의 관계 및 CR과의 개인적 친분 개선을 위한 의도로 2014. 6. 4. 17:46경 지상파 3사의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인 17개 지역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예상순위 및 각 예상득표율이 기재된 ‘CS’ 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CR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R로 하여금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의 각 조사,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지상파 3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조사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주위적 공소사실) 혹은 미디어리서치에 지상파 3사로부터 청구 당할 손해배상책임액 및 지상파 3사로부터 더 이상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하였다.

3)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고합235 판결)

①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전체를 하나의 영업비밀로 보아 그 영업비밀의 ‘비공지상’이 상실되는 시점을 개별 후보자나 선거구마다 해당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된 시각을 기준으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총 17개 지역 선거구 전체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전부 방송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18:00 이전까지’는 물론 ‘18:00 이후 피고인 JTBC 방송 당시까지’도 ‘비공지상’을 유지하고 있었

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미리 입력하여 둔 선거구별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18:00:49경부터 방송에 일부라도 사용함으로써, 그 때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고 그 무렵 기수에 이르게 되었으며,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나 공모,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800만원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JTBC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지상파 3사의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면서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벗어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JTBC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③ 피고인 C는 지상파 3사에 대한 사무처리자가 아니고, 지상파 3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미디어리서치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평소의 친분 때문에 대학 동문인 CR에게 ‘이 사건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함

4) 원심판결

- ① 2014. 6. 4. 18:00 이전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진 경우에는 비공지성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져야 비공지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 바, 이미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18:00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더라도 그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비공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최소한 지상파 3사를 통하여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되는 순간 즉시 그 비공지성을 상실하며, 정보가 공지되었다는 것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를 말하므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된 순간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거나 지상파 3사 모두가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여야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17개 시·도지사별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등으로 그 정보가 단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7개 선거구 전체에 대한 방송이 모두 종료될 때 예측조사 결과 전체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방송을 통하여 입력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한 후 미리 입력하여 둔 선거구별 예측조사 결과를 18:00:49부터 순차로 방송함으로써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데, 피고인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한 것은 최소한 지상파 3사에 의하여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한 이후인 바, 피고인 A

와 피고인 B가 비공지성을 상실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상파 3사는 이행각서에서 투표 종료 시점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을 뿐 투표 종료 이후인 18:00부터는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고,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투표 종료와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이행각서에서는 18:00 이후에는 지상파 3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지상파 3사에서 18:00 이후에도 출구조사 결과를 비밀로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투표 종료 시점인 18:00 이후까지 비밀관리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각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 ②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C는 출구조사가 방송을 통하여 공표되기 전에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하였고, 미디어리서치는 이러한 채무불행으로 인하여 지상파 3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 C의 행위는 미디어리서치의 신뢰성을 훼손시켜 향후 미디어리서치가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 미디어리서치는 지상파 3사가 발주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예측조사업체 선정에 참가하였으나, 지상파 3사는 피고인 C의 예측조사 결과 누설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미디어리서치를 선정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 판결(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5) 상고이유

피고인 C :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음

검사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주요쟁점

-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판단요지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9433 판결 등 참조).

지상파 3사가 공동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조사의 결과의 본래 사용 목적은 지방선거 투표가 종료된 후 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인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지상파 3사의 방송을 통해 이 사건 정보와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 미리 입력해 둔 위 정보를 18:00:49경부터 순차로 방송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별 1, 2위 후보자와 그 예상득표율 등으로 그 정보가 단일하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14. 6. 4. 17:30경 이후 투표종료 시점인 18:00 이전에 이미 지상파 3사 외에 다른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투표종료 후 지상파 3사 중 어느 한 방송사를 통해 개별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방송되어 공개될 때마다 해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상태로 되었는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2014. 6. 4. 18:00:49경부터 위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를 순차로 방송한 것을 두고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

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투표종료 시점인 2014. 6. 4. 18:00 이후에는 지상파 3사 사이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지상파 3사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18:00 이후에는 이 사건 정보가 더 이상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부정사용, 실행의 착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3. 부정한 목적

판례 75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729
사 건 명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 사 자	피고인 • A
피해업체	F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등)
판결 결과 (형량)	무죄
영업비밀의 내용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제품 'H'의 2차 BMT(Bench Marking Test) 보고서 V2.0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자료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건개요

1) 피고인의 지위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피해 회사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

2) 공소사실

- ①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H'의 2차 BMT 보고서 V2.0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High Speed Data Backup Business Proposal'이란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후 일본에 있는 J사로 부터 10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 위하여 K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 밀 보유자인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였다.
- ②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자산 인 'H'의 2차 BMT 보고서 V2.0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무단 반 출하고, 피해 회사와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한 후 일본에 있는 J사로부터 투자를 받 기 위해 위 자료를 이용하여 위 'High Speed Data Backup Business Proposal'를 작성하여 K에게 교 부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요쟁점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인정 여부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의 상대성
- 영업비밀침해죄에서의 부정한 목적 인정 여부



판단요지

비공지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널리 일반에 공개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여 져야 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상대방에게만 제공되고 그 상대방이 더 공개할 가능성이 없 다면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M&A 추진 과정에 I나 L 담당 직원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이는 그러한 목적에 한정하여 담당 직원이 판단 할 수 있는 자료 용도로만 제공된 것이지, 상대방이 이후 다른 경쟁제품을 개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공개하도록 허락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직원 또한 이러한 점에 유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N이 이러 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O는 상대방에게 자료로서 제공해도 되는 것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 문제되는 자료를 피해 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비공지성에 대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밀관리성으로서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 가능성(표시) 등은 침해 행위자와 목적물에 따라 상대적으 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비밀 관리의 상대성). 즉,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경제성과 비공지성에 대해(특

정한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아직 공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일 공지될 경우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혹은 독점성을 잃게 되어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 충분히 인식하는 자에게는 비밀로서 표시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행위자의 주관적인(내심의) 인식 정도는 쉽게 판정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의 유지 정도는 행위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공동창업자로서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 직책으로 평소 피해 회사의 핵심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기밀자료를 직접 생성할 뿐 아니라, 대표자 O가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일임한 상태이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비밀표시, 등재, 교육 등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서 비밀관리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다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 회사의 'H'의 2차 BMT 보고서 V2.0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인정

피고인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High Speed Data Backup Business Proposal' 문서에는 현재의 특허권자가 피해 회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체불임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특허권양류와 매각명령을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매각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확보할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별도로 개발하여야 할 경우를 구분하여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 특허권 매각 절차에서 취득하여 추가 개발하는 방법의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체불임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무산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 취득할 이익이 부정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특허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법률이 보호하려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특허권 취득에 실패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의 경우, 피해 회사가 사용한 'Delta'기술의 우수성을 타사제품과의 비교자료로써 이용하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의 기술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을 뿐이고, 타사제품과의 비교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 결과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만한 경쟁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므로(다만 제대로 개발될 경우에 그 정도 기술적 우위가 있다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여기에 전형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행위를 하려는 경우 인정되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투자를 유지한 행위를 가리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의 상대성, 부정한 목적, 배임행위

4.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판례 76

보안서약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 시 문서의 반환 내지는 폐기할 의무 여부가 업무상배임의 고의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2591 판결
사 건 명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 사 자	피고인(항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총괄사장으로 근무했던 자 • 을 : 무 회사의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했던 자 • 병 : 무 회사의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했던 자 • 정 :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갑과 을이 설립한 회사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 : 보일러 제품 제작회사
판 결 결 과	원심판결 파기
영업비밀의 내용	펠릿, 하이브리드, 화목 보일러 등 3개의 보일러 제품과 관련된 '14 모델별 제조원가 분석보고', '14-1 전모델 제조원가', '하이브리드 화목', '축열 제조원가 비교', '2010형 목재 펠릿 보일러' 등 119개 파일 등 설계도면

사건개요

무 회사는 보일러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갑'은 무 회사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무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원가 수익구조', '제품개발과정' 등 동종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보고 받고 결재하는 등 무 회사 및 전 계열사를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을'은 무 회사의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무 회사를 퇴사하여 '갑'과 함께 독자적으로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정 보일러 회사를 설립하였다. '병'은 무 회사의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갑'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정 보일러 회사에 입사하였다. '갑, 을, 병'은 공모하여 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보일러를 제작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쌍방항소

1)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 갑, 을, 병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갑, 을, 병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갑, 을, 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요지

원심은, 이 사건 문서에 대하여 ① 피해 회사가 비밀을 유지함에 별다른 보안장치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 한 적이 없고, ② 직원들로부터 받았던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추상적일 뿐이고, 자료에 접근하는 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③ 직원들에게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④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외부저장장치나 개인 컴퓨터에 필요한 자료를 저장하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의 퇴사 시 이와 관련한 소지 확인 및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a)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문서가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비록 이 사건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 ⑥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여 얻은 독자적인 기술상, 영업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동종 제품의 제작, 판매과정에 활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 이 사건 문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재직 시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㉗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퇴사 시 이 사건 문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㉘ 이 사건 문서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를 가지고 나온 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가 저장된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c) 미필적이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갑, 을, 병)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이 허가하였다. 따라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당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갑, 을, 병)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피고인 등에 대해 무죄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갑, 을, 병)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비록 일부 문서에 비밀표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문구가 기재된 문서와 기재되지 않은 문서가 별도 보관되지 아니하고 혼재되어 함께 보관, 관리 되어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퇴사자가 문서를 반출할 당시 소지품을 확인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가 문서가 유출 된 후에야 비로소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면, 회사 입장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
- 2) 그 외 본 판결은 개인용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개발보조원들의 자리가 없어 연구소 직원의 빈자리가 있는 경우 그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문서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을 설시하였다.

판례 77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노2442 판결
사건 명	가. 업무상배임,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사자	피고인(항소인 겸 피항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 : 을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 을 : 갑이 병 회사를 퇴사하면서 설립한 회사로서 로드포트/핌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 : 로드포트/핌스 관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판결 결과	일부 유죄부분 파기
영업비밀의 내용	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자동화장비 관련 로드포트/핌스 장비제작에 관한 기술자료

사건개요

M은 주식회사 병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이전에 근무하던 W를 퇴사하고 L을 설립하였고, 갑은 L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M은 다시 L을 폐업하였으며, P라는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다음, 2009. 12.경 그 처를 대표이사로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였다. L, P, 병 회사는 반도체자동화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는데, L 및 병 회사는 장비제작을 하였다. 갑은 M이 L을 폐업하기 전 L의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가지고 나와 정 회사를 설립하였다.

검사는 갑이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상의 영업비밀누설 행위이거나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과 을 회사를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기술자료들은 병 회사의 중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유도 아니므로 갑이 이 사건 기술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병 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병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판단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병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취득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 기술자료는 병 회사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얻게 된 성과물로 병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① M은 피해 회사(대표이사 : M의 처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W에서 반도체 관련 자동화장비개발업무를 하다가 퇴사하고, 'L'을 설립하였다가 이를 폐업하였으며, P라는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다음, 2009. 12.경 그 처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L, P,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자동화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는데, L 및 피해자 회사는 장비제작을 하였고, P는 장비 제작이 아닌 메모리칩 다이캐스팅 업무를 하였다.
- ② 이 사건 기술자료는 관련된 특허와 함께 로드포트/펌스 기계 제작에 사용되므로 L 및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고(P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음), M이 설립하였던 L 이래 축적되어 온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갑)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술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외 회사 Z를 설립한 지 7개월 만에 장비 개발부터 생산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③ M은 갑에게 외장하드 2개를 주면서 이 사건 기술자료를 포함한 자료들을 저장한 후 1개는 회사에 보관하고 1개는 회사에 두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갑)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술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갑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기술자료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④ 피고인(갑)이 퇴사할 때 이 사건 기술자료가 포함된 자료들을 개인 외장하드 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갑)은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 Z를 설립하여 그 업무에 참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 ⑤ 이 사건 기술자료에 기존 L, P의 기술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록 갑이 피해자 회사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기술자료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자료는 피고인(갑) 개인의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자산임이 분명하다(특허권과 이 사건 기술자료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특허권 귀속주체와 이 사건 기술자료가 누구의 소유인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해설 및 참고사항

-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2)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례 78

비밀관리성과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OLED 관련 기술 정보 유출 사건)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수원지방법원 2015.2.6. 선고 2012고단1870, 3136(병합)
사 건 명	가. 업무상 배임 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당 사 자	피고인 • 가. 나. 다. A • 나. E • 나. F • 다. H • 다. I • 나. 다. B • 가. 나. C • 가. 다. J • 가. 나. G • 나. 다. D • 다. K • 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 나. 주식회사 야스
판결 결과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 벌금 7백만원 피고인 C : 벌금 3백만원 피고인 E, F, H, I, J, G, K, 엘지디스플레이(주), (주)야스는 무죄
영업비밀의 내용	OLED 관련 기술 정보

 사건개요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아몰레드 패널 대형화 설비 개발 총괄 후 퇴사

피고인 B : OLED 장비개발업체인 (주)야스에 근무

피고인 C : 피해 회사에서 X 공법 증착기 개발 업무 담당

피고인 D : 엘지디스플레이(주) OLED 사업 투자 전략 수립 업무

공소사실 :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제조공정, 실험결과, 투자일정 등이 기재된 업무수첩을 가지고 나오고, 도면 및 생산설비 분석 내용이 담긴 파일을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보관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설비 상세구성, 제어방식, 세정기술개발이력 등의 기술정보를 피고인 B, D에게 이메일로 전송 /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개발기술이 정리된 파일을 피고인 A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음 /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발송



주요쟁점

- ◎ 영업비밀 보호 요건 (비밀관리성)
- ◎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 ◎ 영업비밀 침해 예비죄의 성립



판단요지

(비밀관리성) 피해회사는 전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게 업무내용이 기재된 모든 수첩 및 메모용 지류 외부 반출금지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점, 사내 모든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중요 문서는 중앙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며, 관련 정보는 극비/대외비/일반으로 분류 관리된 점, 피고인이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설비개발 관련 문서나 파일 등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배임의 고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영업비밀 침해 예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소정의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영업비밀 해외 유출행위의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행위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파일에 있는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정보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AJ파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술정보가 없고, 피해회사 직원들의 증언은 사후적으로 도면을 보고 본인들의 견해 내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하향증착방식은 대면적 OLED 패널 증착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법이어서 기술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핵심어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침해 예비

판례 79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제3자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사건명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당사자	피고인 ·가.나. A ·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업체	주식회사 F
판결결과 (형량)	피고인 A(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대한 부분 파기 및 환송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고기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영업비밀의 내용	의료용 3D 스캐너 소스코드, 설계, 데이터, 구조 등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사건개요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 피해 회사에서 근무 당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특히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동종제품을 개발

피고인 B :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개발

2) 원심판결

피고인 B가 2011. 8.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A가 설립한 경쟁회사에 입사하여 경쟁회사를 위한 소스코드를 만드는데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2012. 8. 24.경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모·가담하였는 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14번 파일 사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고인 B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이미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후 14번 파일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그와 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가담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14번 파일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3) 상고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14번 파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피고인 B :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 사용,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음

검사 :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음

주요쟁점

-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 이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범죄 성립 여부

판단요지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14번 파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여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14번 파일 이용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따로 배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함

핵심어

영업비밀, 형사, 업무상 배임, 배임죄의 주체, 불가벌적 사후행위, 의료용 3D 스캐너

5. 양벌규정

판례 80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 제18조 제2항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

기초사항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2고단6391 판결
사 건 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당 사 자	<p>피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게임개발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인 병을 설립한 자 • 을 : 피해회사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피고인 병에서 근무하던 자 • 병 : 피고인 갑이 설립한 온라인게임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판 결 결 과	일부무죄
영업비밀의 내용	피해회사가 개발한 3D 커뮤니티 게임 관련 기획문서

사건개요

피고인 갑은 피해자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게임개발 총괄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6. 24.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08. 7. 16. 온라인게임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병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을은 2008. 3. 12.부터 피해 회사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6. 25. 퇴사한 후 피고인 병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갑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전인 2008. 6. 중순경 피고인 을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2008. 6. 1. 이전의 모든 자료는 피해 회사 컴퓨터에 남겨두고 2008. 6. 1. 이후의 모든 자료를 하드에 백업할 것을 지시한 다음, 그 무렵 3D 커뮤니티 게임 관련 기획문서로서 약 2년간 개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PROJECT W 기획서' 등이 포함된 백업하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고인 갑이 설립한 피고인 병에서 '프로젝트 A'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다음, 2009. 3. 6.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프로젝트 A 플레이영상'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게임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피고인 병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PROJECT W 기획서'가 피해 회사소유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을에게 위 기획서의 활용 및 사용을 동의하였다고 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위 기획을 특허 신청하여 공개되었으므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단요지

1) 법원은, ① W 기획내용 중 다른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독창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분을 게임 내에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점, ② 피해 회사의 규모, 연혁, 게임개발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비밀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가 개발하던 W의 내용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의 정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추고 있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부정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인(갑)과 피고인(을)은 피해 회사가 개발 중이던 W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병)의 '프로젝트 A'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한편, 법원은 피고인(병)은 2008. 7. 16. 설립되었으므로 피고인(갑)이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는 피고인(병)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병)의 대표이사의 행위라 할 수 없어 피고인(병)에게 양벌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피고인(병)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갑)이 이미 취득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한하여 피고인(병)은 양벌규정에 의

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부경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의 형량범위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형량범위를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병)이 얻은 이득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병)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에 관한 증거가 없어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이 판결은 부경법 제19조에 의하여 법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게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또한 형량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한편, 부경법 제19조에 의해 위 판결에 적용되었던 부경법 제18조 제2항은 2013. 7. 30.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2014. 1. 31. 시행)

[기존조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조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외국사용

판례 8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의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기초사항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단2774 판결
사건명	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당사자	피고인 • 갑 : 을 회사의 주재원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였던 자 피해자 회사 • 을 : 콤프레사 및 자동차 주물 부품을 생산하는 해외법인
판결결과	유죄
영업비밀의 내용	주물 관련 핵심 기술자료를 비롯한 가격정보 및 견적자료



사건개요

갑은 A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위 회사 산하의 중국에 있는 피해 회사인 을 회사의 주재원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면서 을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품 및 금형의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갑이 을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 할 수 없게 되자 을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마침 중국내 동종업체인 C회사로부터 이직제의를 받아 이직을 제의 받은 C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을 회사의 공작기계 부품을 근접 촬영한 다음 이를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누설하였다.

그 외에도 갑은 을 회사가 개발 진행 중이던 신재질 자동차 부품 금형을 C회사로 임의 반출하는 등 을 회사의 주물 관련 핵심 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 저장하는 등 을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반출하고 C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판단요지

- 1) 법원은, 피해회사가 ① 주물관련 핵심 자료들을 비롯한 가격정보 및 견적자료 등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담당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② 개인 PC에 외부 저장장치의 디바이스 장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③ 이메일 다운로드 내역 및 USB 메모리 사용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④ 재직 중 직원을 비롯하여 퇴사하는 전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⑤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출입통제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⑥ 시스템 보안 장치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⑦ 피해회사가 자동차부품 개발에 관한 기술 및 경영상 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고, ⑧ 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영업비밀의 외부유출을 금지하는 교육을 수시로 받았으며, ⑨ 근무기간과 퇴직 후 회사의 비밀정보 또는 회사의 고객 및 거래처 소유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전달, 누설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것이고 비밀정보를 회사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및 신의칙상을 회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하고, ⑩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3)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외국사용의 점)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을 적용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해설 및 참고사항

피해회사는 연간 79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큰 규모의 회사로서, 이와 같은 매출 규모에 맞게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로 2015. 1. 28., 일부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그 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비밀관리성에 대해 획일적인 판단을 내린 기존 판결과 달리 유연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영업비밀과 같

은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매출 규모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리적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를 기대해 본다.

I.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

II.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II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IV.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부 록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2. 비밀관리성 관련 개정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29호, 2020. 10. 20., 일부개정]

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425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 (3) 「상표법 조약」의 체결국(締約國)
-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 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중전 제2조의2는 제2조의5로 이동 <2020. 10. 20.>]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2조의4(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본조신설 2009. 3. 25.]

[제2조의2에서 이동 <2020. 10. 20.>]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 12. 21.>

제3조(국가·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가·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 6. 30.]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16. 1. 27.,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30.>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진행 중에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④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⑤ 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20. 10. 20.>

⑥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17. 1. 17., 2018. 4. 17., 2020. 10. 20.>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0. 10. 20.]

제9조(의견청취)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공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 12. 21.>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 [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5. 1. 28.>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전자지문의 추출·등록 및 보관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 등
-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5(과징금) ①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원본증명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6(청문) 특허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7(비밀유지 등)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 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장 보칙 <개정 2007. 12. 21.>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1. 6. 30.>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6. 30.>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2020. 10. 20.>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w

-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30., 2013. 7. 30.>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가·국장예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 및 카목,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 7. 30., 2018. 4. 1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0.]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 6. 30.>

② 특허청장은 제2조의5에 따른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전문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2020. 10. 20.>

③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 3. 25., 2011. 6. 3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3. 25., 2011. 6. 30., 2020. 10. 20.>

⑤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5.>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30.]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16. 1. 27.]

[중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6. 1. 27.>]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6. 1. 27.>]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결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 나. 국제기구의 표지
 -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결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09. 12. 30.>

④ 삭제 <2009. 12. 30.>

⑤ 삭제 <2009. 12. 30.>

[전문개정 2007. 12. 21.]

2. 비밀관리성 관련 개정사항

가.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법률 제13081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등록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원본등록된 정보의 보유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 입증곤란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08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상당한”을 “합리적인”으로 한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본증명서 발급 시 정보 보유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제2조제2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제18조제1항 및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라.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제18조의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204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 3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업비밀 핵심판례 2014 ~ 2019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문의 1666-052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홈페이지 www.tradeseecret.or.kr

ISBN : 979-11-91116-08-3 13500
 DOI : 10.8080/P9791191116083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